

#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48호 2022. 11. 4.(금)

## 조 례

고성군 조례 제2754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고성군 조례 제2755호 고성군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고성군 조례 제2756호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7

고성군 조례 제2757호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9

고성군 조례 제2758호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11

고성군 조례 제2759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고성군 조례 제2760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고성군 조례 제2761호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고성군 조례 제2762호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고성군 조례 제2763호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32

고성군 조례 제2764호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35

##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2-1715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9

회 람									
--------	--	--	--	--	--	--	--	--	--

##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2-190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	52
고성군 고시 제2022-195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	70

## 공 고

고성군 공고 제2022-1733호 제5회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의견 수렴 공고 .....	73
---	----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1월 4일

고성군 조례 제2754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변경)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나 검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의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조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3제3호 중 “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으로, “산하기관”을 “산하기관·단체”로, “떠넘기거”를 “전가하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군 또는 군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목의 산하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8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 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로, “미리” 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로, “신고” 를 “서면 신고” 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3년” 을 “2년”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부터 제9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별표 3] <신설 2022. 11. 4.>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4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나. 제1호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으로 한다.

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제1호에 따른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1월 4일

고성군 조례 제2755호

고성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위원의 정수)” 를 “(위원의 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수는 4인으” 를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 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인정 할” 을 “인정할”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1월 4일

고성군 조례 제2756호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정원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산업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국제교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원전문가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에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문화 주민 교육 및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2.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
3.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4. 정원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원전문가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에 정원전문가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정원전문가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 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때 정원전문가 또는 정원전문가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박람회의 개최)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1월 4일

고성군 조례 제2757호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④ 예찰반은 병해충 정밀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방제반은 병해충 적기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2.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③ 단장은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실시
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 확충
2. 병해충 예찰·방제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3. 그 밖의 군수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군수는 예찰·방제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1월 4일

고성군 조례 제2758호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조의1(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4조(기금운용관)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2장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당연직
  - 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 나. 예산업무 또는 향우업무 담당 부서장
- 2. 위촉직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부금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 나.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제1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 제3장 답례품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제16조(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고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의 상품 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그 밖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제공업체를 선정 할 때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을 고려하여 공개 경쟁에 의한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공개 경쟁을 통한 공모 제안서 평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기준에 따른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상품성 유지를 위한 선별장·저온저장·보관시설 등
3. 최근 3년간 생산내역, 매출내역 및 매출액
4.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측정된 국가 및 전문기관이 발급한 증빙자료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사항

6. 고성군 공동브랜드

7. 농수산물가공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8. 답례품의 상품화·배송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상품 마케팅 여부(포장, 배송, 온라인 쇼핑몰 운영)

9. 고성군 및 민간업체 운영 쇼핑몰 입점·판매 사항

10. 품질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한 관련 자격취득 및 교육이수 현황

11. 그 밖에 공급업체 선정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1(답례품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7. 고성군에서 인증한 품목 및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8. 고성군 및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등록 품목
9. 농수산물가공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10. 지역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고성군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의 특산품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3. 제1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4. 제18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1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별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평가 항목 및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농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평가항목	평가기준
1. 사업목적 부합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를 평가한다.</li> <li>- 관할구역 안에 답례품 생산기반(농지, 축사 등)을 갖추고 있는 있는지를 확인(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등)</li> <li>- 답례품 공급업체의 생산자(경영주)가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 여부 확인</li> <li>- 답례품 공급업체의 사업 및 사업계획이 답례품 공급사업에 부합되는지 확인</li> <li>- 생산자가 관할구역 안에서 답례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2. 공급업체의 운영 역량(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업체의 농산물 생산 및 공급 실적을 평가한다.</li> <li>- 최근 3년간 답례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생산량 및 공급량 등으로 평가</li> <li>○ 생산자(경영주)의 최근 3년간 자격취득 및 교육 이수실적을 평가한다.</li> <li>- 사업자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생산, 유통, 상품개발 및 마케팅 등</li> </ul>
3. 지역의 대표상품 연계성(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의 지명도, 인지도, 전통성 등의 요소를 토대로 지역대표 지역특산품인지를 평가한다.</li> <li>* 예) 보성녹차, 하동녹차, 창녕단감, 공주밤, 벌교꼬막, 강원감자 등</li> </ul>
4. 마케팅 및 유통 관리(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제품의 판매처 등을 토대로 생산자의 마케팅 역량 및 제품의 신뢰도를 평가한다.</li> <li>- 대형유통업체, 지자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입점·판매 등</li> <li>○ 해당 제품의 품질이 최종 소비 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통장비와 유통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li> <li>○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 또는 소비자로부터 제품교환 및 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li> </ul>

	<p>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li> </ul>
<p>5. 시설운영 및 품질의 전문성(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제품 생산 시설 장비 설치 및 운영의 적정성 - 저온저장고, 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측정자료(전문기관 발행자료) - 당도, 성분, 기능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류농약검사, HACCP 등 제품의 안전 확보의 적절성</li> </ul>
<p>가점(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 등록, GAP농산물, 저탄소인증 등)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인증, 지자체 공동브랜드 사용</li> <li>○ 상품개발 및 특허출원</li> </ul>

(2) 농수산 가공식품(제조업)

평가항목	평가기준
<p>1. 사업목적 부합성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례품 공급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를 평가한다.</li> <li>- 현재 답례품 공급업체의 사업 및 사업계획이 답례품 공급사업에 부합되는지 여부</li> <li>- 관할구역 안에 답례품 생산·제조 시설기반을 갖추고 있는 있는지 여부(사업자등록증 등)</li> <li>- 답례품 공급업체의 생산자·대표자가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족관계등록부)</li> <li>- 답례품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한 생산품에 해당되는지 여부</li> </ul>
<p>2. 사업체의 운영역량(1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경영주)의 최근 3년간 교육 참가실적을 평가한다.</li> <li>- 사업자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회계, 경영, 유통, 상품개발 및 마케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례품의 연중 및 안정적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다.</li> <li>- 최근 3년간 생산량 및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체일 경우 최근 3년간의 경영 및 재무관리 실태를 평가한다.</li> <li>-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등)</li> </ul>
<p>3. 지역자원과의 연계성(3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례품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의 사용(규모, 비율과 조달방법에 대해 평가한다.</li> <li>- 제조업체가 답례품 생산을 위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된 원재료(원물) 사용에 대해 평가</li> </ul>

평가항목	평가기준		
	구분	배점	평가 사항
	a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100퍼센트 이상을 자체생산 또는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b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80퍼센트 이상이 자체생산 또는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c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5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가 자체생산 또는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d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50퍼센트 이상이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4. 가공공장 설비·장비(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입지에 축산폐수·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 발생시설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li> <li>- 공장입지에 오염원 유·무 및 관리 정도를 평가</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레품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관리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li> <li>- 작업장이 용도별(원료처리, 제조가공, 포장 등) 분리 유·무 및 교차오염 방지 관리 정도를 평가</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레품 제조·가공을 위한 적정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li> <li>- 저온저장고, 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가공품 생산 기계설비, 식품소재 반가공 시설·장비 등</li> </ul>		
5. 제조 공정 및 품질·위생관리(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레품의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 등이 수립 및 운영에 대해 평가한다.</li> <li>- 제조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하고, 공정별 관리항목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레품은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검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li> <li>- 전문인력과 시험장비를 갖추고 있고 주기적으로 품질검사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li> </ul>		

평가항목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의 건강관리 및 위생장구(위생복·위생모·마스크 등) 착용 및 오·폐수의 처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li> <li>- 종업원의 건강검진 및 위생장구류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평가</li> <li>- 적정규모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처리 및 배출하고 있는지를 평가</li> </ul>
<p>6. 마케팅 및 유통 관리(1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제품의 판매처 등을 토대로 생산자의 마케팅 역량 및 제품의 신뢰도를 평가한다.</li> <li>- 대형유통업체, 지자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입점·판매 등</li> <li>○ 해당 제품의 품질이 최종 소비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통 장비와 유통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li> <li>○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 또는 소비자로부터 제품교환 및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li> <li>-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지 여부를 평가</li> <li>○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li> </ul>
<p>가점(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기가공식품인증, 전통식품인증, 전통주인증, 지리적표시, GAP, HACCP 등) 및 지방자치단체 인증(3)</li> <li>○ 생산농가-소재업체-제품업체간 공동협력(2점)</li> <li>- 상생협력 MOU 등 협력체계 구축, 품질 향상 및 기술 혁신을 위한 전문교육 참여도 등</li> </ul>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2년 11월 4일

고성군 조례 제2759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746명이며” 를 “749명이며” 로 하고 제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 729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개정 2022. 11. 4.>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49	353	20	141	41	19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17	348	20	115	40	194
4급	5	4		1		
5급	44	18	3	6	3	14
6급 이하	662	326	17	102	37	180
전문경력관	6			6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5	3		1	1	
연구관	0					
연구사	5	3		1	1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2년 11월 4일

고성군 조례 제2760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의 국장·담당관·추진단장·과장의 직급과 담당관·추진단·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으로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사무를 관장한다”로 개정한다.

제4호제3항을 “인구청년추진단은 인구정책, 청년정책, 소통홍보, 고향대외협력사무를 관장한다”로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의 “민원봉사과”를 “열린민원과”로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조직·인사운영, 대외협력, 전산정보, 통신”을 “지방분권, 조직·인사운영, 대외협력, 전산정보, 통신”으로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 “교육지원, 보육, 아동, 청소년”을 “평생학습, 교육지원, 보육, 아동, 청소년”으로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의 “체육진흥과”를 “스포츠산업과”로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의 “안전정책, 자연재난, 사회재난, 관제센터”를 “안전정책, 자연재난, 사회재난, 중대재해예방, 관제센터”로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의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교통행정, 교통지도”를 “도시계

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교통행정, 교통지도, 고속철도지원” 로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을 “제4항” 으로 한다.

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1조제2항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을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 으로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인구청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행정복지국(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열린민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을 산업건설국(경제기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건축개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③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군정혁신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을 “인구청년추진단장, 경제기업과장” 으로 한다.

④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장” 으로 한다.

⑤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을 “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장” 으로 한다.

⑥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⑦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⑧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을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으로 한다.

⑨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을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으로 한다.

⑩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⑪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을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으로 한다.

⑫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⑬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⑭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민원봉사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을 “열린민원과장, 경제기업과장” 으로 한다.

⑮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⑯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을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으로 한다.

⑰ 고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⑱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⑲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⑳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㉑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체육진흥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한다.

㉒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체육진흥과장”을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한다.

㉓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㉔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㉕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㉖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열린민원과장”으로 한다.

㉗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민원봉사과”를 “열린민원과”로 한다.

㉘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체육진흥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스포츠산업과장,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㉙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별표 1] <개정 2022. 11. 4.>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제7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고성군보건소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3	고성군 일원
고성읍보건지소	고성읍 중앙로 35	고성읍 일원
삼산면보건지소	삼산면 공룡로 2143	삼산면 일원
하일면보건지소	하일면 학림2길 15	하일면 일원
하이면보건지소	하이면 하이로 269	하이면 일원
상리면보건지소	상리면 척번정7길 27	상리면 일원
대가면보건지소	대가면 유흥3길 16-10	대가면 일원
영현면보건지소	영현면 대가로 1675-13	영현면 일원
영천통합보건지소	영오면 옥천로 1472	영오·개천면 일원
구만면보건지소	구만면 영희로 1786	구만면 일원
회화면보건지소	회화면 배둔로 80	회화면 일원
마암면보건지소	마암면 옥천로 239-1	마암면 일원
동해면보건지소	동해면 장기4길 77	동해면 일원
거류면보건지소	거류면 당동1길 154	거류면 일원
삼산면삼봉보건진료소	삼산면 공룡로 1754-34	삼산면 포교, 와도, 두모, 덕산, 중촌, 장백, 상촌, 해명
하일면수태보건진료소	하일면 수양1길 30	하일면 수양, 용태, 가룡, 도동, 학동
하이면덕명보건진료소	하이면 자란만로 551	하일면 춘암, 맥전포, 동화, 하이면 덕명, 제전, 입암, 정곡
하이면봉현보건진료소	하이면 하이로 543-34	하이면 봉현, 와룡, 남산, 내원, 외원
대가면송계보건진료소	대가면 대가로 1104-7	대가면 신전, 외갈, 내갈, 종생, 장전, 송계
대가면연지보건진료소	대가면 무량로 211	대가면 평동, 지동, 양화, 고성읍 무량
영현면봉발보건진료소	영현면 망봉로 605	영현면 추계, 봉발1, 봉발2, 금능, 대촌, 영부, 영동, 법촌
개천면청광보건진료소	개천면 오봉산로 3	개천면 청동, 청남, 나동, 가천, 차치, 영오면 양월, 양기
회화면어신보건진료소	회화면 어신2길 313	회화면 석전, 산북, 어선, 자소, 금봉촌, 동촌
마암면신리보건진료소	마암면 신리1길 155	마암면 신리, 성전, 석마, 장산
동해면장좌보건진료소	동해면 장좌1길 50-1	동해면 상장, 하장, 우두포, 구학포, 장항
동해면매정보건진료소	동해면 조선특구로 1509	동해면 내신, 전도, 대천, 좌부천, 매정, 가룡, 법동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2년 11월 4일

고성군 조례 제2761호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5항”으로, “제36조제5항”을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4항 및”을 “제35조제5항에 따라”로,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2항 및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36조제4항”을 “영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지원청의”를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부녀회장”을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2년 11월 4일

고성군 조례 제2762호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를 “고성군 국가무  
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요무형문화재의”를 “국가무형문화재의”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  
육관”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3조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2571와”를 “2571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5조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6조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을 “목적”으로, “운영에 관  
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기타서류”를 “기타 서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1월 4일

고성군 조례 제2763호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7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
2. 생애 최초 창업자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상생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 기간	20일
신청인	명칭	대표자 성명 (남/여)		
	주소	전화(팩스)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자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 리 절 차



210 mm × 297 mm(백상지 80 g/m²)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1월 4일

고성군 조례 제2764호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2. 지원 대상사업
- 3. 지원 한도 및 조건
- 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3. 창업(사업장 증·개축, 신규창업을 포함한다)자금
4.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5.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등 지원
8. 업종전환 또는 폐업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지원 조건, 절차, 대상 등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에 피해 등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8조(임대료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장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2. 소상공인의 세대원 전부가 다른 사업장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을 것

② 지원 금액, 대상 업체 수, 지원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회관계망서비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정보제공·

소통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하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 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에게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 촉진 행사, 공모전, 홍보 이벤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을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고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재 금융기관의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사후 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고성군 공고 제2022-1715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4.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위원회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변경 (안 제6조)

나.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의견 제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2) 전화: (055)670-2614, 팩스: (055) 670-46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담당(☎055-670-26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를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조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그 밖에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교육업무 부서장

나. 예산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나.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이하 “고성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이 추천하는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다. 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높은 교육 전문가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야” 를 “비치해야” 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 를 “첨부해야” 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2조에 따라” 로, “결정하여야” 를 “결정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통지하여야” 를 “통지해야” 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그렇지 않다”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각급 학교장” 을 “각급학교장” 으로, “제출하여야” 를 “제출해야” 로 한다.

제17조 중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과” 를 “않은 사항은” 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9. (생략)</p>	<p>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위원회의 설치)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p> <p>-.</p>
<p>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p>1. · 2. (생략)</p> <p>3.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p>	<p>제5조(기능) -----</p> <p>심의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교육경비 보조사업-----</p>

4.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군의 교육청소년과장, 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2.고성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교육담당 과장 1인

3.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4.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인사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4.그 밖에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당연직 위원

가. 교육업무 부서장

나. 예산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나.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이하 “고성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이 추천하는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다. 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높은 교육 전문가

<삭제>

<삭제>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 5. (생 략)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결정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록) -----  
----- 비치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첨부해야 -----.

-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 제12조에 따라 -----  
-----  
----- 결정해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에 따라 -----  
-----  
-----  
- 통지해야 -----  
-----.

제14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결정

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 변경·취소) ① -----  
----- 각 호의 어느 하  
나-----  
-----  
----- 그렇지 않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  
- 각급학교장-----  
-----  
----- 제출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용) ----- 아니한 사  
항은 -----  
-----  
-----.

<삭 제>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조항을 보완하는 선언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생략함.

**작성자: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붙임**

**관련법령(발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

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⑥ 시·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⑨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8.>
-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 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2. 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시 제2022-190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22-544호(2022. 11. 3.)로 고시된, 고성군 행정구역 일원의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는 고성군청(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1. 3.

고 성 군 수

1.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아래 참조
2. 관계도면: 실음 생략(고성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

[붙임]

##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총괄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667,231,155.1	-	667,231,155.1			
계	23,350,496.6	-	23,350,496.6			
도시 지역	소 계	2,788,347.0	-	2,788,347.0		
	주거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763,763.0	-	1,763,763.0	
		제2종일반주거지역	878,371.0	-	878,371.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준주거지역	146,213.0	-	146,213.0	
	소 계	184,289.0	-	184,289.0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	-	-	
		일반상업지역	184,289.0	-	184,289.0	
		근린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	-	-	
	소 계	6,297,846.3	-	6,297,846.3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	-	-	
		일반공업지역	6,266,493.3	-	6,266,493.3	해면 1,547,743㎡
		준공업지역	31,353.0	-	31,353.0	
		소 계	13,111,554.3	-	13,111,554.3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455,000.0	-	455,000.0	
		생산녹지지역	4,611,079.0	-	4,611,079.0	
		자연녹지지역	8,045,475.3	-	8,045,475.3	해면 1,135,705㎡
		미지정	968,460.0	-	968,460.0	해면
	계	643,880,658.5		643,880,658.5		
	도시 지역 외	소 계	144,702,651.9	증) 1,183,222.7	145,885,874.6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42,276,753.4	증) 396,075.3	42,672,828.7
생산관리지역			27,457,677.5	증) 598,524.4	28,056,201.9	
계획관리지역			74,967,057.0	증) 188,623.0	75,155,680.0	해면 936,470㎡
관리 지역			1,164.0	-	1,164.0	
농림 지역		304,028,220.2	감) 770,017.7	303,258,202.5		
자연환경보전지역		49,732,364.0	감) 413,205.0	49,319,159.0		
미지정(해면부)		145,417,422.4	-	145,417,422.4	해면	

※ 기정 : 고성 교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역(변경) 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589호, 2021. 11. 18)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합 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면적(㎡)	개 소 수	비율 (%)	면적(㎡)	개 소 수	비율 (%)	면적(㎡)	개 소 수	비율 (%)	면적(㎡)	개 소 수	비율 (%)	면적(㎡)	개 소 수	비율 (%)
합 계	1,264,567.7	221	100.0	396,075.3	45	31.3	598,524.4	93	47.4	188,623.0	38	14.9	81,345.0	45	6.4
고성읍	16,015.0	12	1.3	1,412.0	1	0.1	6,296.0	9	0.5	8,307.0	2	0.7	-	-	-
삼산면	91,414.0	20	7.2	56,601.0	5	4.5	22,925.0	8	1.8	11,888.0	7	0.9	-	-	-
하일면	28,671.0	29	2.2	16,871.0	12	1.3	10,021.0	13	0.8	1,779.0	4	0.1	-	-	-
하이면	118,491.0	11	9.4	32,906.0	3	2.6	73,435.0	4	5.8	12,150.0	4	1.0	-	-	-
상리면	14,083.0	12	1.1	10,694.0	7	0.8	3,389.0	5	0.3	-	-	-	-	-	-
대가면	357,674.3	18	28.3	219,495.3	8	17.3	137,536.0	9	10.9	643.0	1	0.1	-	-	-
영현면	185,391.0	26	14.5	-	-	-	106,706.0	8	8.4	64,256.0	4	5.0	14,429.0	14	1.1
영오면	24,289.0	6	1.9	19,804.0	1	1.6	2,755.0	3	0.2	1,730.0	2	0.1	-	-	-
개천면	306,807.0	55	24.3	36,792.0	6	2.9	124,624.0	13	9.9	78,475.0	5	6.2	66,916.0	31	5.3
구만면	6,545.4	3	0.6	450.0	1	0.1	6,095.4	2	0.5	-	-	-	-	-	-
회화면	65,565.0	4	5.2	-	-	-	65,565.0	4	5.2	-	-	-	-	-	-
마암면	12,982.0	5	1.0	1,050.0	1	0.1	10,500.0	2	0.8	1,432.0	2	0.1	-	-	-
동해면	13,279.0	5	1.1	-	-	-	10,004.0	4	0.8	3,275.0	1	0.3	-	-	-
거류면	23,361.0	15	1.9	-	-	-	18,673.0	9	1.5	4,688.0	6	0.4	-	-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읍·면별)

■ 고성읍 - 12개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고성읍 죽계리 113-1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35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5	고성읍 우산리 251-19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66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6	고성읍 죽계리 366-99 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44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9	고성읍 죽계리 435-109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3.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5	고성읍 덕선리 474-3 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5,396.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9	고성읍 대독리 295-3 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39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3	고성읍 월평리 196-2 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33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4	고성읍 월평리 553-4 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01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6	고성읍 월평리 497-5 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911.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8	고성읍 월평리 381-2 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31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9	고성읍 월평리 1050-10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75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1	고성읍 월평리 313-1번 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41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삼산면 - 20개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삼산면 판곡리 421-1번 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0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	삼산면 판곡리 276-7 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9,90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	삼산면 판곡리 262-3번 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81.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	삼산면 병산리 636-3 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54,53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	삼산면 삼봉리 산26-1 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25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8	삼산면 삼봉리 317-1번 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27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1	삼산면 장치리 1105번 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631.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3	삼산면 장치리 산209-1 번지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2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4	삼산면 장치리 산 197-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71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6	삼산면 장치리 666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7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7	삼산면 미룡리 산91-1 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3,275.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8	삼산면 미룡리 산91-1번지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267.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9	삼산면 미룡리 402-3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245.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0	삼산면 미룡리 452-1 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87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1	삼산면 병산리 130-1번지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46.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2	삼산면 병산리 130-1 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3,347.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3	삼산면 병산리 72-9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711.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4	삼산면 병산리 252-5 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173.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7	삼산면 두포리 산49-3번지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69.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8	삼산면 두포리 산53-4번지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595.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하일면 - 29개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하일면 수양리 371-1번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63.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	하일면 수양리 565-7번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0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	하일면 학림리 산 115-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301.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7	하일면 학림리 산122-2번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4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8	하일면 학림리 산124-3번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9	하일면 용태리 산75-2번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98.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0	하일면 학림리 산74번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9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1	하일면 학림리 산75번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9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2	하일면 학림리 917-12번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1.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3	하일면 학림리 1392-1번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4	하일면 학림리 산58-3번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9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5	하일면 학림리 90-3번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6	하일면 학림리 90-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063.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7	하일면 학림리산 55-6번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8	하일면 학림리 658-10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82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9	하일면 학림리 산210-3번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0	하일면 오방리 374번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8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1	하일면 학림리 산 215-6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65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2	하일면 학림리 514-2번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3.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3	하일면 학림리 산203-1번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0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표 계속 >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24	하일면 오방리 산38-5 번지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08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5	하일면 오방리 273-1번 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8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6	하일면 송천리 산42-3 번지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30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7	하일면 오방리 산 110-12번지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99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8	하일면 오방리 85번지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5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9	하일면 오방리 산7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388.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0	하일면 오방리 산90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3,741.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1	하일면 오방리 892-4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87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2	하일면 춘암리 526번지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52.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하이면 - 11개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7	하이면 봉현리 387-2번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95.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0	하이면 와룡리 260번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2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6	하이면 석지리 412-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61.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4	하이면 사곡리 26번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10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5	하이면 사곡리 25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2,751.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8	하이면 덕호리 651-2번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6.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9	하이면 덕호리 724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003.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2	하이면 덕호리 414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7,793.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5	하이면 덕명리 산2번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4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9	하이면 덕명리 산233번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98.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82	하이면 사곡리 6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0,65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상리면 - 12개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상리면 고봉리 산277-1번지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15.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	상리면 고봉리 383-2 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36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	상리면 고봉리 산283-1 번지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65.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	상리면 고봉리 432-1번 지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48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	상리면 고봉리 438-7 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89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2	상리면 망림리 1079-1 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22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5	상리면 자은리 74-5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1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6	상리면 자은리 75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7	상리면 자은리 81-2번지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735.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1	상리면 무선리 171-7 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4,83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4	상리면 동산리 176-3 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2,88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7	상리면 동산리 638-7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3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대가면 - 18개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대가면 신전리 산51-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3,55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2	대가면 갈천리 1710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39,95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3	대가면 갈천리 1341-3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40,98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4	대가면 갈천리 1417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30,91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5	대가면 갈천리 1692-7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49,02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6	대가면 갈천리 77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43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8	대가면 갈천리 108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49,43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0	대가면 갈천리 1760-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5,326.3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1	대가면 금산리 195-6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24,88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2	대가면 금산리 290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49,725.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7	대가면 척정리 1802-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29,44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2	대가면 양화리 419-2번지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643.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3	대가면 양화리 156-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77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8	대가면 양화리 479-7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75.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9	대가면 양화리 46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42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0	대가면 양화리 479-10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80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3	대가면 양화리 75-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81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9	대가면 연지리 731-4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5,35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영현면 - 26개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영현면 연화리 206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46,353.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	영현면 영부리 246-2 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4,836.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7	영현면 연화리 113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37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8	영현면 연화리 107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8,33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9	영현면 연화리 202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97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0	영현면 연화리 235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221.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1	영현면 연화리 산18-2 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3,01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2	영현면 연화리 산11-9 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2,95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3	영현면 연화리 산1-1 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371.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4	영현면 연화리 166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42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5	영현면 연화리 산11-8 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6	영현면 연화리 산16-3 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21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7	영현면 연화리 산16-2 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6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8	영현면 연화리 108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5,33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9	영현면 연화리 산11-5 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44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0	영현면 연화리 산11-3 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4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1	영현면 연화리 105-2 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4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2	영현면 연화리 77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9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3	영현면 영부리 74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906.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표 계속 >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57	영현면 연화리 176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25,481.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8	영현면 연화리 1047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43,001.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9	영현면 연화리 13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6,93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0	영현면 연화리 37-8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11,161.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1	영현면 연화리 208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1,55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2	영현면 연화리 163-3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8,723.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3	영현면 연화리 27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12,29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영오면 - 6개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영오면 양산리 224-18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9,80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	영오면 양산리 571-6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513.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	영오면 영산리 658-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068.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9	영오면 성곡리 855-29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2,09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1	영오면 연당리 87-1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5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8	영오면 영대리 82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662.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개천면 - 55개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9	개천면 청광리 산133-2번지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8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0	개천면 용안리 1-3번지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4,65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4	개천면 용안리 854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0,30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6	개천면 북평리 산57-2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28,318.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7	개천면 북평리 11-1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8,01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8	개천면 좌연리 51-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24,76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9	개천면 좌연리 64번지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33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1	개천면 좌연리 390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13.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2	개천면 좌연리 977-4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395.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5	개천면 좌연리 606-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3,49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7	개천면 좌연리 1147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5,110.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8	개천면 좌연리 산 352-1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3,12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9	개천면 좌연리 1260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641.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0	개천면 북평리 산 50-15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4,77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1	개천면 북평리 산56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64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2	개천면 북평리 산57-9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68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3	개천면 북평리 414-40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03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4	개천면 좌연리 지 1150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53.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5	개천면 좌연리 1140-2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31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표 계속 >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46	개천면 좌연리 산299 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6,281.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7	개천면 좌연리 산294 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2,38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8	개천면 좌연리 1246-4 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4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9	개천면 좌연리 1245번 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1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0	개천면 좌연리 1246-3 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111.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1	개천면 좌연리 산 270-5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501.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2	개천면 좌연리 산 292-2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8,48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3	개천면 좌연리 산 289-9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13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4	개천면 좌연리 1273번 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44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5	개천면 좌연리 1260-2 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22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6	개천면 좌연리 산278 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2,25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7	개천면 좌연리 1271번 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3,071.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8	개천면 좌연리 1262-2 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62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9	개천면 좌연리 산280 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485.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0	개천면 좌연리 산282 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6,22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1	개천면 좌연리 산281 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2,26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2	개천면 좌연리 산283 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73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3	개천면 좌연리 산286 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58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4	개천면 좌연리 1307-3 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7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표 계속 >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65	개천면 좌연리 1307-5 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38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6	개천면 좌연리 1101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2,26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7	개천면 좌연리 1100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47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8	개천면 좌연리 산359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58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9	개천면 좌연리 1117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765.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70	개천면 좌연리 319-3 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0,86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92	개천면 좌연리 1215번 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31,470.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93	개천면 좌연리 1211-2 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12,936.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94	개천면 좌연리 1243번 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42,293.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95	개천면 좌연리 1147번 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17,033.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96	개천면 좌연리 산 352-1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19,152.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97	개천면 좌연리 산 292-1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3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98	개천면 좌연리 1256-2 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1,78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99	개천면 좌연리 1213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15.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00	개천면 좌연리 1213번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2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01	개천면 좌연리 1211-1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5,631.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02	개천면 좌연리 1212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7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구만면 - 3개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2	구만면 주평리 488-3번 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5,413.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7	구만면 용와리 284-2번 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682.4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1	구만면 광덕리 269-1번 지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45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회화면 - 4개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5	회화면 삼덕리 1224-1 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016.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7	회화면 봉동리 105-42 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225.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8	회화면 봉동리 128-5 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32,64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1	회화면 배둔리 37-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31,68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마암면 - 5개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6	마암면 보전리 218-1번 지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05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9	마암면 보전리 450-2번 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62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7	마암면 삼락리 100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151.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8	마암면 삼락리 1010-1 번지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81.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2	마암면 삼락리 1166-1 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9,873.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동해면 - 5개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8	동해면 장좌리 116-4번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57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9	동해면 외곡리 285-5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83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2	동해면 장좌리 431-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275.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6	동해면 봉암리 1043-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03.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8	동해면 봉암리 49-10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897.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거류면 - 15개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7	거류면 감서리 257-3번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68.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2	거류면 당동리 55-1번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89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2	거류면 송산리 701-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96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6	거류면 신용리 751-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17.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2	거류면 신용리 646번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257.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8	거류면 신용리 1634번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6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9	거류면 신용리 1764-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7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70	거류면 신용리 1878-9번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74.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71	거류면 신용리 1879번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90.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73	거류면 은월리 379-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18.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77	거류면 은월리 1153-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2.0	10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표 계속 >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81	거류면 용산리 302-1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555.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83	거류면 용산리 304번지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19.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93	거류면 은월리 412-2 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4,250.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97	거류면 은월리 148-1 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674.0	80이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고성군 고시 제2022-195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4.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17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삼산면 두포리 839	삼산면 두포2길 39	2022.11.04.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삼산면 두포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2	마암면 두호리 41-1	마암면 두호2길 83-54	2022.11.04.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마암면 두호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3	동해면 내산리 19-18	동해면 내산4길 60	2022.11.04.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내산리)을 이용하는 네번째 도로	
4	동해면 외산리 846	동해면 외산로 271	2022.11.04.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외산리)을 이용하여 외산로로 명명	
5	고성읍 송학리 245-11	고성읍 동외로 178번길 37	2022.11.04.	건물번호부여신청	동외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 1,780m지점에서 분기되는 도로	
6	회화면 봉동리 139-39	회화면 회진로 537-18	2022.11.04.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회화면 진전면) 활용	
7	마암면 장산리 99-4	마암면 옥천로 338	2022.11.04.	건물번호부여신청	연화산도립공원의 옥천사로 연결되는 길임을 반영	
8	대가면 금산리 155-3	대가면 금호로 268	2022.11.04.	건물번호부여신청	도로의 시종점인 대가면 금산과 마암면 두호리를 연결하는 길임을 반영	
9	거류면 거산리 306-1	거류면 당항만로 12-3	2022.11.04.	건물번호부여신청	회화면 당항만(해안이름)의 이름을 활용하여 부여	

고성군 공고 제2022-1733호

**제5회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의견 수렴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5기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2.

고 성 군 수

제5기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의견서를 고성군수(주민생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내용

가. 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 의견서 제출방법: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

3. 의견서 제출하는 곳

가. 주소: 우 50317/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나. FAX: 055-670-235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주민생활과(055-670-2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고성군

2022. 10.

##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

- 가. 목표 및 추진전략
- 나. 목표,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
- 다.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 가. 목표 및 추진전략

###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태아에서 100세까지 행복한 복지 고성							
I. 고성군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II.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요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자립할 수 있는 힘차고 활기찬 고성	군민 모두가 든든한 환경 조성	즐거움 삶, 행복한 고성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b>(중점추진)</b> 세부사업 I-1-1 권역별 영유아 보육(탁아) 시설 운영 <b>(중점추진)</b> 세부사업 I-1-2 보훈가족 예우 지원 확대	<b>(중점추진)</b> 세부사업 I-2-1 저소득 자활 근로 참여자 탈수급 지원 강화 <b>(중점추진)</b> 세부사업 I-2-2 초고령 사회 일자리 창출	<b>(중점추진)</b> 세부사업 I-3-1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운영 <b>(중점추진)</b> 세부사업 I-3-2 치매안심 전문 진료 확대 운영 (치매안심 쉼터 확대운영)	<b>(중점추진)</b> 세부사업 I-4-1 노인 및 장애인 교통 불편 해소 서비스 확대 <b>(중점추진)</b> 세부사업 I-4-2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 추진	<b>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b>  세부과업 (사업) II-1-1-1 고성형 결식아동 급식안전망 구축	<b>대표과업 1.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b>  세부과업 (사업) II-2-1-1 고성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	<b>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b>  세부과업 (사업) II-3-1-1 고성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b>대표과업 1. 의료 인프라 확충</b>  세부과업 (사업) II-4-1-1 출산 후 산모 초음파 검사비 지원
세부사업 I-1-3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기능 활성화	세부사업 I-2-3 청소년 참여 체험 프로그램 확대	세부사업 I-3-3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세부사업 I-4-3 파크 골프장 조성	세부과업 (사업) II-1-1-2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세부과업 (사업) II-2-1-2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세부과업 (사업) II-3-1-2 고성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세부과업 (사업) II-4-1-2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
세부사업 I-1-4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세부사업 I-2-4 여성 재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세부사업 I-3-4 아동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	세부사업 I-4-4 고성군 장애인 체육 활성화	<b>대표과업 2. 부정정 수급방지</b>	<b>대표과업 2. 자원봉사 활동 지원</b>	<b>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b>	<b>대표과업 2. 미래세대 인프라 구축</b>
세부사업 I-1-5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세부사업 I-2-5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 확대	세부사업 I-3-5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세부사업 I-4-5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세부과업 (사업) II-1-2-1 수급자 자격 확인조사 실시	세부과업 (사업) II-2-2-1 읍면자원 봉사활성화 사업 지원	세부과업 (사업) II-3-2-1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세부과업 (사업) II-4-2-1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 I-1-6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세부사업 I-2-6 요양 보호사 처우개선 확대	세부사업 I-3-6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운영		세부과업 (사업) II-1-2-2 부정수급 포상금제도 홍보	세부과업 (사업) II-2-2-2 전문자원 봉사자 양성 추진	세부과업 (사업) II-3-2-2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세부과업 (사업) II-4-2-2 청소년센터 운영

2) 제5기 기본계획 수립 배경

□ 제5기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배경

- 사회보장영역이 사회복지 분야를 넘어서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및 환경을 포괄하여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등 포용성을 확대하고, 제도 간 중복과 누락 요인을 점검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사업을 세부화함
- 저소득 자영업자, 시장 노점상 등 기존의 사회보장정책에 포함되지 못한 새로운 분야의 취약계층이 발견되었고, 민간지원조직의 활동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이는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향후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코로나19 사태는 사회보장정책이 취약계층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부족함을 보여주었고,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민 모두가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향후 지역사회보장정책 대상을 전체 주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향 전환을 시도해야 함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방향

- 제5기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난 제4기(2019~2022) 기본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구성의 논리성과 체계성 그리고 이행력 제고,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고, 면밀한 연 단위 실천계획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이행력 확보와 4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괴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자체 노력과 변화 강조하고자 함
- 또한, 경상남도의 사회보장정책 추진 방향성을 참고하여 고성군의 기본계획 수립에도 적용함
  - 경상남도의 5가지 사회보장정책은 다음과 같음
    - 통합복지: 복지, 보건의료 등 분야 간 연계 협력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균형복지: 지역사회보장 균형 발전을 위한 18개 시군 지원 기능 강화
- 예방복지: 다양한 일자리 제공 등 예방적 복지와 민간/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력 강화
- 스마트복지: ICT 활용 돌봄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회서비스 접근성 향상
- 과학복지: 복지 데이터를 활용한 증거 기반 사회보장정책 추진

○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돌봄, 건강/보호, 일자리/교육, 문화/생활의 방향성 하에 “태아에서 100세까지 행복한 복지 고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함

－ 첫째, 수요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돌봄체계 구축
- 기존의 돌봄체계는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세대와 계층에 집중하여 돌봄부담 경감 및 만족도 제고

－ 둘째, 자립할 수 있는 힘차고 활기찬 고성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원 의존도 및 사회보장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지역복지력 강화 필요성 대두
- 일자리, 교육 분야에 집중한 생활의 자립기반 강화로 예방적 복지 추세 반영

－ 셋째, 군민 모두가 든든한 환경 조성

- 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군민들의 지역 불균형 인식 개선 필요
- 건강, 보호/안전 분야 사회보장정책 강화를 통해 지역 및 분야별 복지 격차 해소도모

－ 넷째, 즐거운 삶, 행복한 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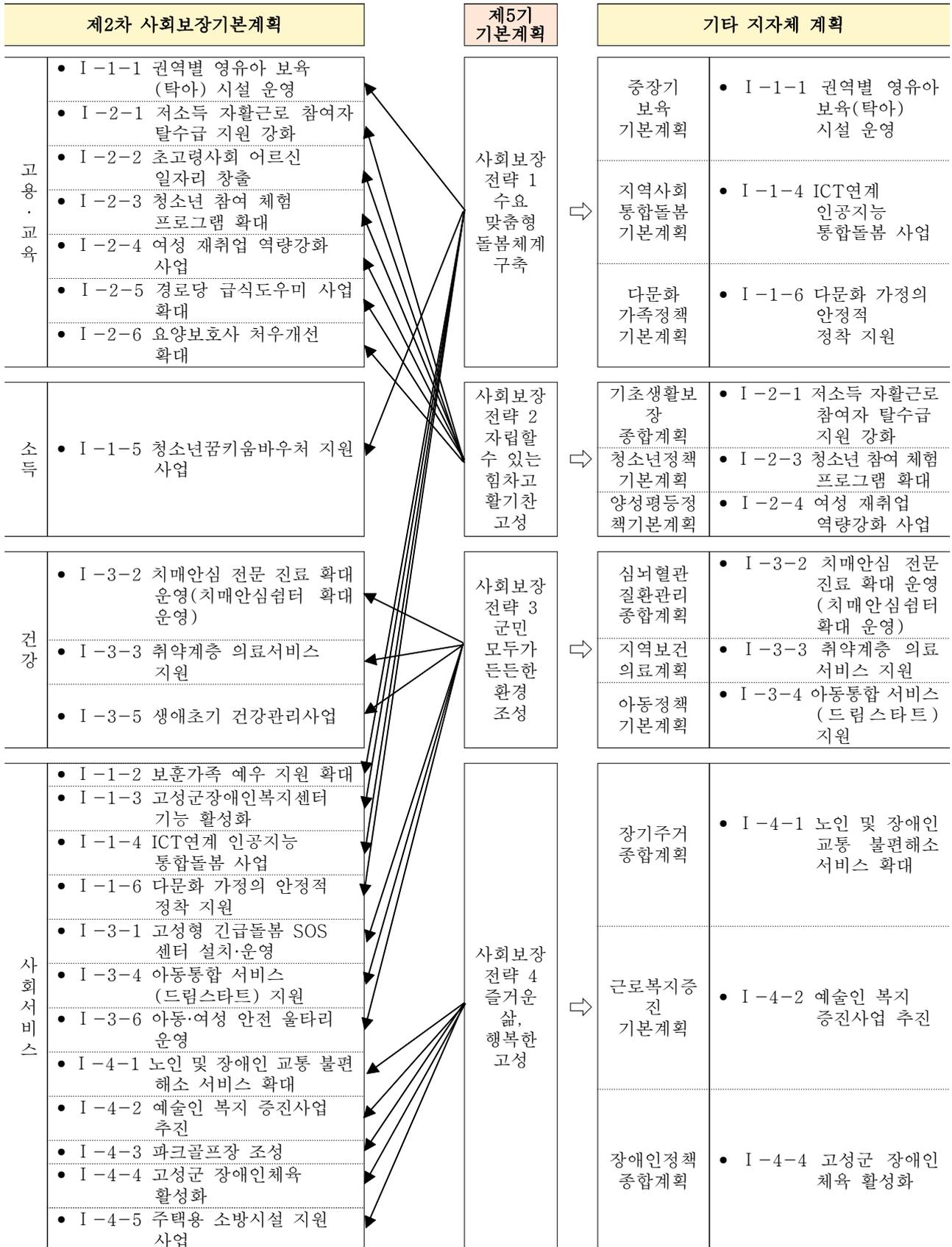
- 일반적인 복지 외 교통, 문화, 여가, 생활 등 포괄적인 사회보장영역으로의 확대
- 빠르게 변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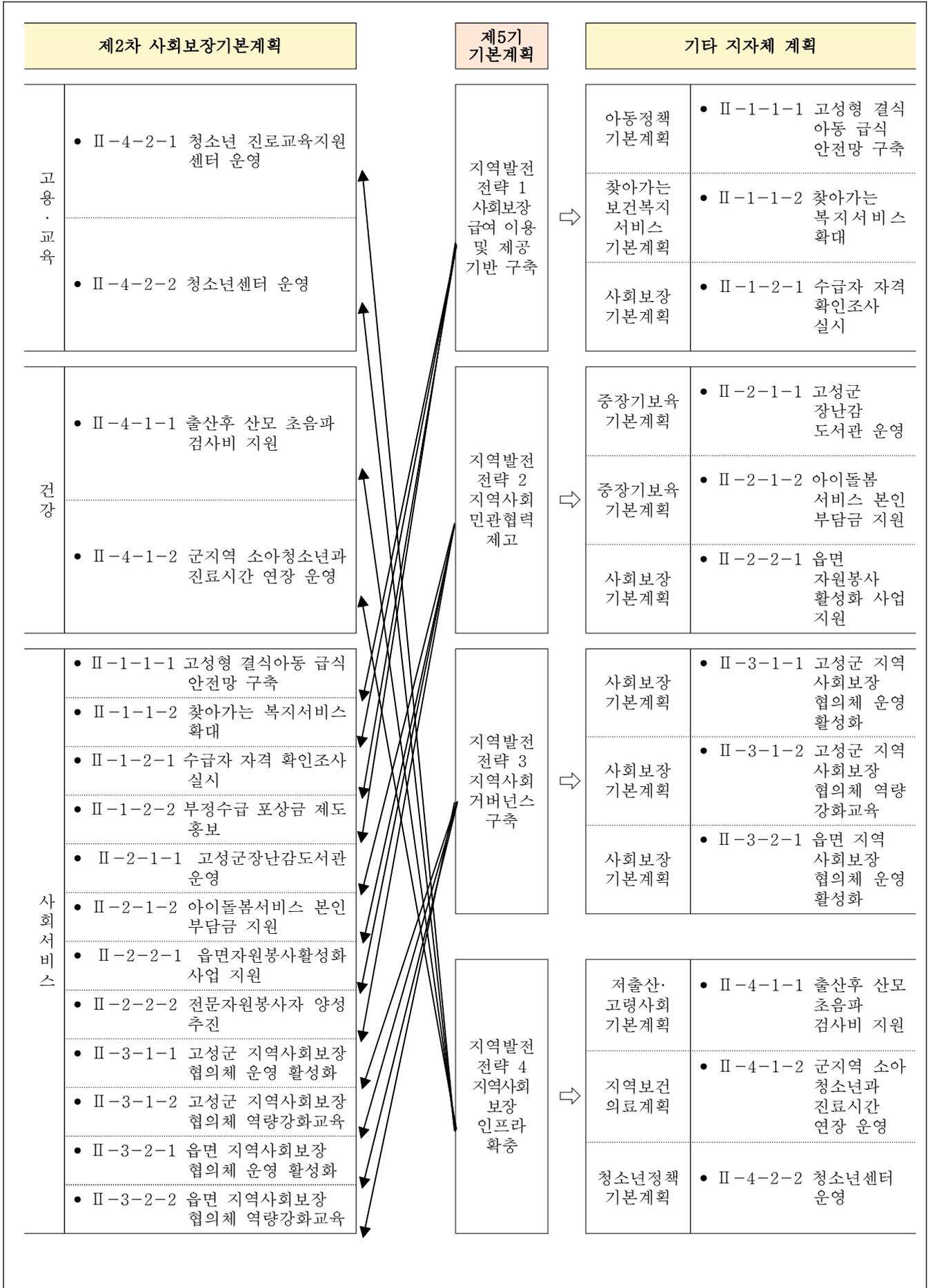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체계

◆ 총괄현황: 3개 국, 7개 과 39개 세부사업(과업)

실	국	과	세부사업(과업) 명	비고
	행정 복지국	교육청소년 과	I-1-1. 권역별 영유아 보육(탁아)시설 운영 I-1-5.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 사업 I-2-3. 청소년 참여 체험 프로그램 확대 I-3-4. 아동통합 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II-1-1-1. 고성형 결식아동 급식안전망 구축 II-2-1-1. 고성군장난감도서관 운영 II-2-1-2.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II-4-2-1. 청소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II-4-2-2. 청소년 센터 운영	
	행정 복지국	주민생활과	I-1-2. 보훈가족 예우 지원 확대 I-1-4.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I-2-1. 저소득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 지원 강화 I-3-1.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운영 II-1-1-2.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II-1-2-1. 수급자 자격 확인조사 실시 II-1-2-2. 부정수급 포상금제도 홍보 II-2-2-1. 읍면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지원 II-2-2-2.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추진 II-3-1-1.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II-3-1-2.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II-3-2-1.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II-3-2-2.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행정 복지국	복지지원과	I-1-3.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기능 활성화 I-1-6.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I-2-2. 초고령사회 어르신 일자리 창출 I-2-4. 여성 재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I-2-5.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확대 I-2-6.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확대 I-3-6. 아동·여성 안전올타리 운영	
보건소			I-3-2. 치매안심 전문 진료 확대 운영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I-3-3.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I-3-5.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II-4-1-1. 출산 후 산모 초음파검사비 지원 II-4-1-2.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	
	산업 건설국	도시교통과	I-4-1. 노인 및 장애인 교통 불편 해소서비스 확대	
	문화 환경국	문화관광과	I-4-2.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 추진	
	문화 환경국	체육진흥과	I-4-3. 파크골프장 조성 I-4-4. 고성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산업 건설국	안전관리과	I-4-5.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4) 상위계획 및 기타계획과의 연계성





나. 목표,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

◆ 총괄현황: 4대 추진전략, 23개 세부사업(8개 중점추진사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	민관협력사업여부 (○,×)	5기신규사업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명 (단위)	'22년 목표	'23년 목표	'24년 목표	'25년 목표	'26년 목표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년 예산	'26년 예산
<b>I. 고성군 사회복지사업 전략체계</b>															
<b>수요맞춤형 돌봄체계 구축</b>					목표달성률(%)	90	90	90	90						
I-1-1	권역별 영유아 보육(탁아)시 설 운영	○	○	○	연간 국공립 이용률(%)	-	24	25	25	25	-	-	220	152	-
I-1-2	보훈가족 예우 지원 확대	○	×	○	수혜자 수(명)	925	925	925	925	925	1,802	1,930	1,930	1,930	1,930
I-1-3	고성군장애인 복지센터 기능 활성화	×	○	×	프로그램 운영 수(개)	18	19	19	19	20	309	309	309	309	309
					상담 건수(건)	240	280	280	300	300					
					종사자 수(명)	6	7	7	7	8					
I-1-4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	×	○	수혜자 수(가구)	620	620	620	620	620	224	224	224	224	224
I-1-5	청소년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	×	×	지원율(%)	90	90	90	90	90	1,918	1,918	1,918	1,918	1,918
I-1-6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	○	○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참여자 수 (명)	-	200	200	200	200	14	14	14	14	14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 참여자 수(명)	-	15	15	15	15					
<b>자립할 수 있는 합차고 활기찬 고성</b>					목표달성률(%)	90	90	90	90						
I-2-1	저소득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 지원 강화	○	○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명)	280	310	335	365	365	1,987	1,987	1,987	1,987	1,987
					일자리지원센터 연계 의뢰자 수(명)	5	5	5	5	5					
I-2-2	초고령사회 어르신 일자리 창출	○	○	○	어르신 적합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명)	1,490	1,500	1,520	1,540	1,540	5,777	6,355	6,400	6,475	6,475
I-2-3	청소년 참여 체험 프로그램 확대	×	○	○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참여율(%)	90	90	90	90	90	247	248	249	250	251
I-2-4	여성 재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	○	○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6	10	10	10	10	30	30	30	30	30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사업여부 (○,×)	민관협력사업여부 (○,×)	5기신규사업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명 (단위)	'22년 목표	'23년 목표	'24년 목표	'25년 목표	'26년 목표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년 예산	'26년 예산
					참가자 수(명)										
I-2-5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확대	×	○	○	경로당 급식도우미 운영 개소 수(개소)	45	47	50	53	55	173	189	221	225	225
I-2-6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확대	×	○	○	수혜자 수(명)	900	900	900	900	900	8.6	37	37	37	37
<b>군민 모두가 든든한 환경 조성</b>					목표달성률(%)		90	90	90	90					
I-3-1	고성형 긴급돌봄 SOS 센터 설치·운영	○	○	○	돌봄 대상자 수(명)	-	50	50	50	50	-	50	50	50	50
I-3-2	치매안심 전문 진료 확대 운영(치매안심 쉼터 확대 운영)	○	○	○	연간 시설 이용자 수(명)	120	120	120	120	120	10	26	26	26	26
I-3-3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	×	지원 대상자 수(명)	215	215	215	215	215	45	45	45	45	45
I-3-4	이동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	×	○	○	지원 이동 수(명)	700	700	700	700	700	238	238	238	238	238
I-3-5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	○	×	등록 방문 가구 수(가구)	50	50	50	50	50	116	116	116	116	116
I-3-6	이동·여성 안전 울타리 운영	×	○	○	사업 대상자 수(명)	20	20	20	20	20	19	18	18	18	18
<b>즐거움 삶, 행복한 고성</b>					목표달성률(%)		90	90	90	90					
I-4-1	노인 및 장애인 교통 불편 해소 서비스 확대	○	×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수(명)	6,000	6,000	6,000	6,000	6,000	434	475	525	575	575
I-4-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	○	○	○	사업 추진 횟수(회)	2	2	2	2	2	62	52	72	52	52
I-4-3	파크골프장 조성	×	×	○	파크골프장 설치율(%)	-	30	60	100	-	200	1,200	2,200	50	50
					이용자 수(명)	-	-	-	700						
I-4-4	고성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	○	○	사업추진율(%)	-	80	80	80	80	89	236	236	236	236
I-4-5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	○	×	지원 세대 수(세대)	800	800	800	800	800	50	50	50	50	50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사업여부 (○,×)	민관협력사업여부 (○,×)	5기신규사업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명 (단위)	'22년 목표	'23년 목표	'24년 목표	'25년 목표	'26년 목표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년 예산	'26년 예산							
<b>II.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b>																						
<b>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b>																						
<b>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b>					연간 위기가구 발굴 건수(건)	2,000	2,000	2,000	2,000													
II-1-1-1	고성형 결식아동 급식안전망 구축	×	○	×	지원 아동 수(명)	500	500	500	500	500	85	85	85	85	85							
II-1-1-2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	○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222	222	222	222	222							
<b>대표과업 2. 부정정 수급 방지</b>					부정정 수급 발굴 건수(건)	18	15	12	9													
II-1-2-1	수급자 자격 확인조사 실시	×	○	○	연간 수급자 자격 확인조사 실시 횟수(회)	8	8	8	8	8	0	0	0	0	0							
II-1-2-2	부정수급 포상금제도 홍보	×	○	○	연간 부정수급 포상금제도 홍보 횟수(회)	2	2	2	2	2	0	0	0	0	0							
<b>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b>																						
<b>대표과업 1.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b>					목표달성률(%)	90	90	90	90													
II-2-1-1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	○	○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수(명)	2,100	2,100	2,100	2,100	2,100	60	62	62	62	62							
II-2-1-2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	×	지원 대상 수(명)	80	80	80	80	80	96	96	96	96	96							
<b>대표과업 2. 자원봉사 활동 지원</b>					목표달성률(%)	90	90	90	90													
II-2-2-1	읍면 자원봉사활동 화 사업 지원	×	○	○	읍면 자원봉사 정기 활동 개최 횟수(회)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II-2-2-2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추진	×	○	○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참여자 수(명)	20	20	20	20	20	0	0	0	0	0							
<b>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b>																						
<b>대표과업 1. 사군구</b>					목표달성률(%)	90	90	90	90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사업여부 (○,×)	민관협력사업여부 (○,×)	5기신규사업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명 (단위)	'22년 목표	'23년 목표	'24년 목표	'25년 목표	'26년 목표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년 예산	'26년 예산		
<b>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b>																	
II-3-1-1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달성을 위한 회의개최 수(회)	27	27	27	27	27	156	156	156	156	156		
II-3-1-2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	○	○	역량강화교육 참여율(%)	-	90	90	90	90	0	0	0	0	0		
<b>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b>					목표달성률(%)		90	90	90	90							
II-3-2-1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	○	특화사업 추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개)	14	14	14	14	14	26	26	26	26	26		
II-3-2-2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	○	○	연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실시 횟수(회)	1	1	1	1	1	1	1	1	1	1		
<b>지역발전 전략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지원</b>																	
<b>대표과업 1. 의료 인프라 확충</b>					목표달성률(%)		90	90	90	90							
II-4-1-1	출산 후 산모 초음파검사비 지원	×	○	○	검사비 지원 산모 수(명)	100	100	100	100	100	-	20	20	20	20		
II-4-1-2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	×	○	○	별빛 소아청소년과 이용자 수(명)	50	100	100	100	100	12	52	52	52	52		
<b>대표과업 2. 미래세대 인프라 구축</b>					목표달성률(%)		90	90	90	90							
II-4-2-1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	×	○	×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9	9	9	9	9	240	240	240	240	240		
					프로그램 참여율(%)	90	90	90	90	90							
II-4-2-2	청소년 센터 운영	×	○	×	전년도 대비 청소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32	32	32	32	32	353	353	353	353	353		
					프로그램 참여율(%)	90	90	90	90	90							

주: 제4기 계획의 '22년 성과지표와 예산을 포함하여 제5기 기본계획의 성과지표와 예산을 작성

다.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1)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 복지수요와 공급 격차

○ 고성군 복지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빈곤층복지에 대한 복지수요지수는 낮은 반면 복지 공급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복지수요-공급 격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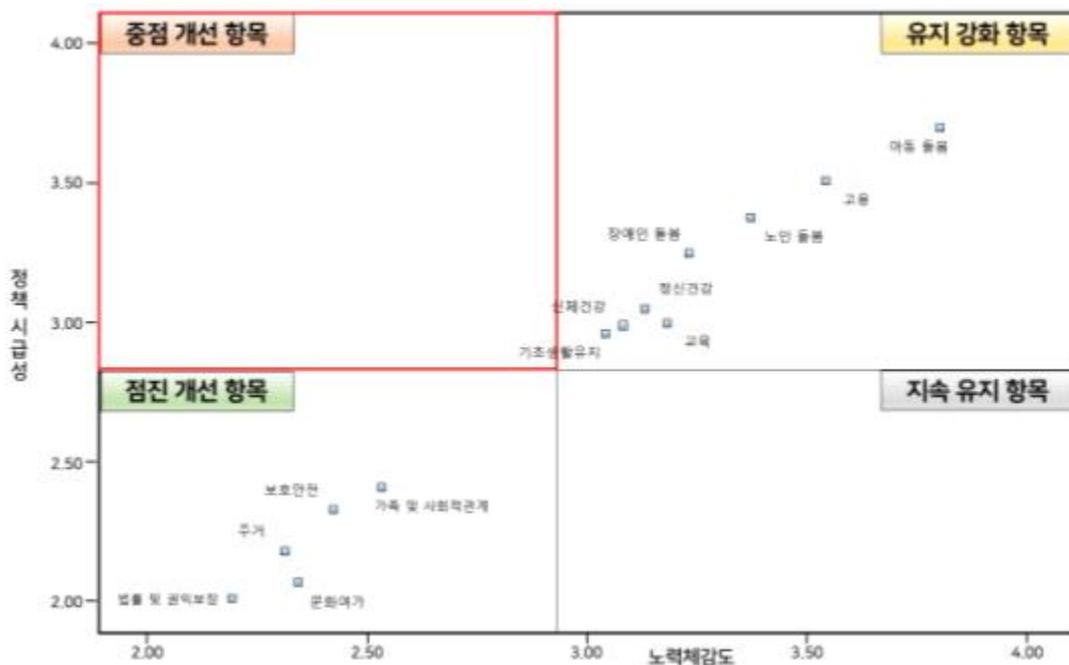
구분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빈곤층복지	
	고-저	저-고	고-저	저-고	고-저	저-고	고-저	저-고	고-저	저-고
고성군										

\*자료: 경남연구원, 지역복지의 수요·자원 조사분석 및 과학복지 모델링  
 \*주1: '고-저'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요지수는 높고, 복지공급지수는 낮음을 뜻함  
 \*주2: '저-고'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요지수는 낮고, 복지공급지수는 높음을 뜻함

○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 정책 시급성을 중요도로 설정하고, 노력 체감도를 만족도로 설정하여 IPA 분석을 시행한 결과 고성군의 경우 기존까지 시행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 정도와 필요성이 충족되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점 개선 항목이 도출되지 않음

[그림] 사회보장 욕구 각 영역별 정책 IPA 분석



2)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 행정조직 현황

○ 고성군 사회복지업무는 행정복지국에서 담당함

- 행정복지국 3개과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는 복지기획, 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관리, 기초생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복지지원과는 여성친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사행정 등의 업무를,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지원, 보육돌봄, 아동친화, 청소년 등의 업무를 담당함

〔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본청)

구분	합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명)					공무직 등 (명)	보조인력 (명)
		소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그 외 직렬	임기제 공무원		
계	100	66	30	15	1	20	31	3
주민생활과	33	25	11	5	-	9	6	2
복지지원과	17	15	10	3	1	1	1	1
교육청소년과	50	26	9	7	-	10	24	-
계	48	41	23	5	12	1	1	6
고성읍	9	8	5	-	2	1	1	-
삼산면	3	2	1	-	1	-	-	1
하일면	4	3	1	1	1	-	-	1
하이면	3	3	1	-	2	-	-	-
상리면	3	3	3	-	-	-	-	-
대가면	2	2	1	1	-	-	-	-
영현면	3	2	1	1	-	-	-	1
영오면	2	2	2	-	-	-	-	-
개천면	3	2	1	1	-	-	-	1
구만면	2	2	1	-	1	-	-	-
회화면	3	3	1	-	2	-	-	-
마암면	3	3	2	-	1	-	-	-
동해면	4	3	1	1	1	-	-	1
거류면	4	3	2	-	1	-	-	1

\*자료: 고성군 주민생활과 제공(2022년 6월 기준)

\*주1: 그 외 직렬 : 보건직, 세무직, 전산직, 기술직 등

\*주2: 임기제공무원 :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주3: 공무직 등 : 공무직, 민간계약직 종류의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 (공무원신분 아닌 자)

\*주4: 보조인력은 사회복지요원,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도우미, 준사례관리사 등

□ 재정현황

○ 2022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1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구성비는 21.72%로 타 기능 대비 높은 편임

〔표〕 세출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비중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574,451	100.00	521,555	100.00	52,896	10.14
일반공공행정	19,346	3.37	18,400	3.53	946	5.14
공공질서 및 안전	8,551	1.49	2,965	0.57	5,586	188.40
교육	8,832	1.54	3,678	0.71	5,154	140.13
문화 및 관광	52,130	9.07	48,657	9.33	3,473	7.14
환경보호	45,372	7.90	42,615	8.17	2,757	6.47
사회복지	124,791	21.72	119,986	23.01	4,805	4.00
보건	12,124	2.11	12,286	2.36	-162	-1.32
농림해양수산	129,762	22.59	128,143	24.57	1,619	1.26
산업·중소기업	16,000	2.79	15,747	3.02	253	1.61
수송 및 교통	22,144	3.85	14,863	2.85	7,281	48.99
국토 및 지역개발	43,054	7.49	38,843	7.45	4,211	10.84
과학기술	-	-	-	-	-	-
예비비	26,279	4.57	10,130	1.94	16,149	159.42
기타	66,066	11.50	65,242	12.51	824	1.26

\*자료: 고성군 홈페이지 재정공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 사회복지관련 시설 현황

○ 고성군 사회복지관련 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장애인, 여성·가족 및 아동·청소년>지역사회>정신건강의 순으로 많음

〔표〕 고성군 사회복지관련 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세부시설		현황
노인	360	노인주거복지시설	소계	0
			양로시설	0
			노인공동생활가정	0
			노인복지주택	0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8
			노인요양시설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계	328		
			노인복지관	0		
			경로당	325		
			노인교실	3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계	14		
			재가노인복지시설	14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소계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0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			1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8			
장애인	16	장애인 거주시설	소계	2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0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0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소계	5		
			장애인복지관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		
			장애인체육시설	0		
			장애인수련시설	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한국수어통역센터	1		
			점자도서관	0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0		
			장애인재활치료시설	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소계	1	
		보호작업장		1		
		근로작업장		0		
		직업적응훈련시설		0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			8	
		지역사회	5	노숙인 복지시설		0
				사회복지관		1
				자활센터		1
				자활기업		0
				푸드뱅크		1
결핵 및 한센병 관련 시설				0		
지역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		
여성·가족 및 아동·청소년	16	가정폭력피해자보호·상담시설		1		
		성폭력피해자보호·상담시설		0		
		성매매피해자보호·상담시설		0		
		청소년복지시설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아동복지시설		11		
정신건강	3	정신건강복지센터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0		
		정신요양시설		1		
		정신재활시설		1		
		정신건강 관련 기관		0		

\*자료: 경남연구원, 「지역복지의 수요·자원 조사분석 및 과학복지 모델링」, 경상남도 복지자원조사

## 3)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 도출

## □ 주요 사회보장 대상 집단에 따른 핵심과제

## ○ 아동

## - 아동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체감도 향상

- 고성군 연령별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년 인구(0~14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유소년 부양비는 13.8명으로 전국과 경상남도 평균보다 더 적음
- 고성군의 양육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2.83점)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고성군의 정책 시급성 중 아동 돌봄 정책 시급성(3.70점)이 가장 높으며, 이는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성군의 코로나19에 따른 아동 추가 돌봄 어려움(3.75점)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2021년 사회보장지표에 따르면, 고성군의 영유아 인구 천 명당 유아학비 지원 수(285.3명)와 영유아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수(215.9명)가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함
- 2018년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성군의 ‘나홀로 아동’ 비율은 43.48%로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2위, 아동 양육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정도 체감수준은 10점 척도 기준 4.96점으로 경상남도 내 15위를 기록함
- 아동 가구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아동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음

## ○ 노인

## -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 환경 조성

- 5세 단위 연령별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성군의 고령화 비율은 33.59%로 이미 초고령사회(20%)를 훌쩍 넘어섬
- 고성군의 노년 부양비는 57.6명으로 전국과 경상남도 평균의 약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이후 고성군의 노인인구 비율과 요보호 노인인구(85세 이상 인구+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노인 돌봄 중 일상생활의 어려움,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과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대한 고성군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노인 돌봄에 대한 정책 시급성(3.38점)에 비해 노력 체감도(3.37점)가 낮음
- 2018년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고성군의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1.01%)과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률(4.04%)이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17위를 기록함
- 노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초고령사회 맞춤형 노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장애인

#### － 장애인 정책 지원 및 활성화

- 고성군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은 9.3%이고, 전체 사회복지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 비율이 34.6%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돌봄 중 일상생활의 어려움, 신체적·정신적 부담, 건강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돌봄 비용 부담, 장애 아동 돌봄 부담에 대한 고성군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장애인 돌봄에 대한 정책 시급성(3.25점)에 비해 노력체감도(3.23점)가 낮음
- 2015년 이후 고성군의 장애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고성군의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6.52%)과 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만족률(7.75%)이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17위를 기록함
- 지자체 자체 문항 조사 결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 이용 경험이 적고, 돌봄 부담 경감 정도와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 이용률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정책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여성 및 다문화

## -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고성군의 전체 혼인 건수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과 경상남도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성군 총인구 대비 다문화 가구원 비율은 2019년에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 다시 감소하였는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수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 욕구 조사 결과, 다문화 가구의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경험 정도(2.09점)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2.55점),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경험 정도(2.18점)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2.64점)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증가하는 다문화 가구의 추세를 반영하여 다문화 가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주요 사회보장 영역에 따른 핵심과제

## ○ 건강 및 의료서비스

## -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 고성군의 걷기 실천율은 2018년 대비 2020년에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 다시 감소하였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0년 대비 2021년에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울감 경험률은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1년까지 유지되고 있음
- 고성군의 정신건강 증진의 어려움 경험 정도(2.33점)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2.42점)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신체건강에 대한 고성군의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고성군의 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불균형 심각성 인식 정도(3.74점)가 가장 높으며, 이는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에 따른 고성군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필요성(3.60점)이 경상남

도 값보다 높음

- 2021년 지역사회보장지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성군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이 64.3%로 경상남도 내 10위를 기록하였고,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2.3%로 13위,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0.1%로 1위,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8.3%로 5위,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10.8%로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보호 및 안전

－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망 강화

- 2020년 기준 남성 1인 가구(3,378명)에 비해 여성 1인 가구(4,492명)가 더 많으며, 65세 이상 1인 가구(4,134명)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성군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보호·안전에 대한 고성군의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1.69점)과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경험 정도(1.66점)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코로나19에 따른 고성군의 가족 내 안전유지 어려움(2.71점)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게 나타남
- 2018년 이후 고성군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법률 및 권익보장에 대한 고성군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고성군 지역 안전 지수등급 중 범죄 지수등급이 5등급으로 가장 낮고, 교통(3등급), 화재(4등급), 생활안전(3등급), 감염병 지수 등급(2등급)은 경상남도 평균보다 낮으며, 자살 지수등급(2등급)은 경상남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 가능한 보호 및 안전사고에 관한 단속 또는 예방을 통해 군민들의 체감 안전수준을 향상하고 보호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소득 및 고용

## -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확충

- 고성군 사회복지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전체 인구의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사회보장지표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비율이 2015년 대비 2020년에 증가하였고, 근로연령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기초생활유지 중 생계비 부족(2.77점), 의료비 부족(2.60점), 냉난방비 부족(2.62점), 가계 재정 관리(2.60점)에 대한 고성군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고성군의 주관적 경제 상태를 보면, 노인 가구(2.64점)만 전체 가구 평균(2.63점)보다 높으며 아동가구(2.37점), 장애인가구(2.47점), 다문화가구(2.27점), 생계의료수급가구(2.17점), 차상위계층(2.44점)은 전체 가구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170.94만원, 월평균 가구 총생활비는 132.86만원이고 소득 대비 생활비는 77.72%로 월평균 가구 총소득과 월평균 가구 총생활비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며,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최저시급 기준의 평균적인 월급(1,914,44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에 따른 고성군의 경제적 어려움(3.36점)과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필요성(3.72점)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함

## - 고용률 제고 및 고용 유지 지원

- 2017년부터 고성군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2/2 반기 기준 30~49세 고용률(83.5%)이 가장 높고, 15~29세 고용률(31.7%)이 가장 낮음
- 고성군의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3.59점), 취업·창업 정보부족(3.04점),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3.27점)과 고용유지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게 나타남
- 2021년 사회보장지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고성군의 고용률과 실업

률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고성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61%로 이는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1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폭넓은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발굴을 통해 고용률 제고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주거

-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 지원

- 2020년 기준 고성군의 상수도(80.5%), 하수도(67.0%), 도시가스 보급률(22.6%)이 전국 평균(상수도 97.5%, 하수도 94.5%, 도시가스 85.0%)보다 낮음
- 고성군의 층간 방음 열악, 상하수도 열악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와 화장실 열악, 주방시설 열악, 위생 상태 열악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주거 취약 계층 또는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 문화·여가

- 문화·여가에 대한 주민 수요 충족

- 아동 가구의 문화·여가(2.70점)와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2.70점)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2021년 경남통계연보에 따르면, 고성군의 공공체육시설 수(19개소)가 경상남도 내 17위를 기록함
- 2020년 기준 고성군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은 1.66%로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10위, 문화예술 예산은 4,423,915,000원으로 14위에 해당함
- 2018년 지역주민욕구조사 결과 고성군의 문화여가활동 어려움은 46.4%로, 이는 경상남도 내 4위에 해당함
- 문화·여가 및 체육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

－ 교육 인프라 확충

- 고성군의 학업의 어려움과 평생교육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코로나19에 따른 학업성적 유지·증진 어려움(3.90점)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고성군 1인당 평생직업 교육예산이 201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고성군의 평생직업 교육예산은 648,411,000원으로 이는 경상남도 내 11위에 해당함
- 2020년 기준 고성군의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1.7%로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5위를 기록함
- 고성군의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교육 서비스 공급을 위해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보장서비스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진단에 따른 사회보장서비스 개선 방안

－ 지역자원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특화사업 발굴

-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자원 발굴,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확충으로 지역복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이를 위한 사회보장계획 수정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 대응 관리체계 지속·강화

- 고성군의 대면 돌봄서비스 확충(3.67점),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3.66점), 개인위생 물품지원(3.57점),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4.18점)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정책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사태는 사회보장정책이 취약계층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부족함을 보여주었고,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민 모두가 취약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향후 지역사회보장정책 대상을 전체 주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향 전환을 시도해야 함

## 2. 고성군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목표와 전략

나. [사회보장 전략 1\_수요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목표와 전략

다. [사회보장 전략 2\_자립할 수 있는 힘차고 활기찬 고성]  
목표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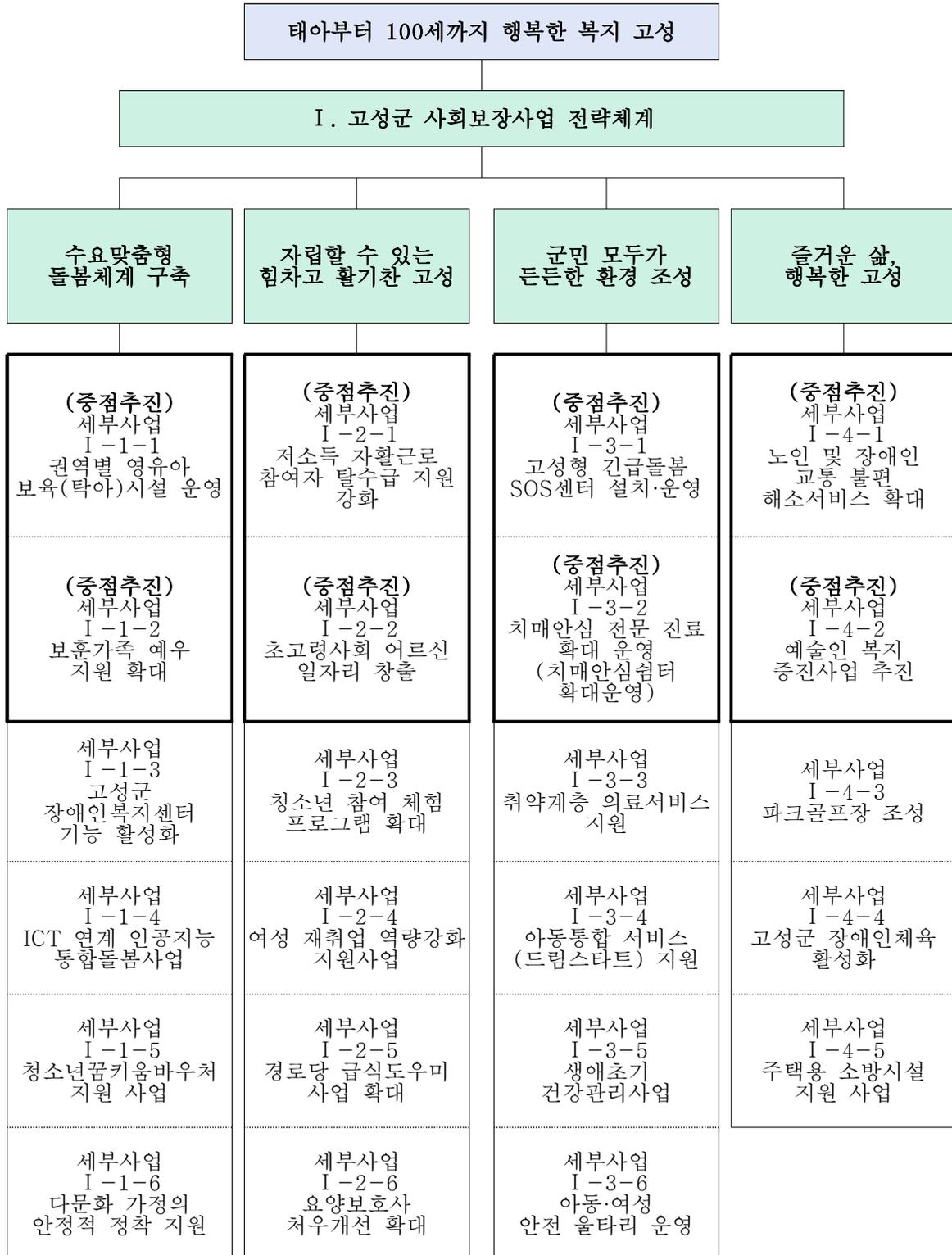
라. [사회보장 전략 3\_군민 모두가 든든한 환경 조성]  
목표와 전략

마. [사회보장 전략 4\_즐거운 삶, 행복한 고성]  
목표와 전략

## 2. 고성군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가. 목표와 전략

#### 1) 고성군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2) 고성군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배경

□ 수립 배경

- 민선 8기 군정 목표로 생동하는 지역경제,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고성, 모두가 행복한 고성,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를 제시함
- 민선 8기 공약사업, 사회보장 욕구조사, 복지자원 기초조사, 지역사회보장지표, 지역 사회보장계획 TF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고성군의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를 돌봄 분야, 건강/보호 분야, 일자리/교육 분야, 문화/생활 분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구성
- 태아부터 100세까지 행복한 복지 고성을 위해 지역 불균형 인식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의료시설 및 서비스 등 주요 사회보장 영역별 군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토대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 여러 분야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주도적 공동체 형성 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부 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전략체계를 수립함

□ 전략체계 구성 특징

- 기존의 돌봄체계는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세대와 계층에 집중하여 돌봄 부담 경감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수요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으로 구성함
  - 권역별 영유아 보육(탁아)시설 운영, 보훈가족 예우 지원 확대,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기능 활성화,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청소년꿈키움마우처 지원 사업,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추진함
- 일자리, 교육 분야에 집중한 생활의 자립기반 강화로 예방적 복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자립할 수 있는 힘차고 활기찬 고성’으로 구성함
  - 저소득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 지원 강화, 초고령사회 어르신 일자리 창출, 청소년 참여 체험 프로그램 확대, 여성 재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확대를 추진함

- 건강, 보호/안전 분야 사회보장정책 강화를 통해 지역 및 분야별 복지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군민 모두가 든든한 환경 조성’으로 구성함
  - 고성형 긴급돌봄 SOS 설치·운영, 치매안심 전문 진료 확대 운영(치매안심쉼터 확대운영),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아동통합 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운영을 추진함
- 빠르게 변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즐거운 삶, 행복한 고성’으로 구성함
  - 노인 및 장애인 교통 불편 해소서비스 확대,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조성, 고성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함

#### □ 목표 및 기대효과

- 제5기 계획은 ‘태아부터 100세까지 행복한 복지 고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사회보장 욕구조사, 복지자원 기초조사, 지역사회보장지표 등 통계 현황 자료에 기초한 계획 수립으로 민선 8기 공약의 비전인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와 향후 4년간 고성군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성을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상의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를 위한 사업 외에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에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세부 사업들을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보장 단체, 기관 등의 대표성 및 참여도를 제고하여 사회보장 정책 현장의 실천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킴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건강 및 보호·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민 욕구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보장 영역을 확대하여 분야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함

나. [사회보장 전략 1\_수요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목표설정 근거

□ 수요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 수요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되, 기존의 돌봄 체계는 유지하면서 핵심과제 도출 과정에서 나타난 상대적으로 부족한 세대와 계층에 집중하여 예방적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아동 가구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아동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 이용률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정책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노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초고령사회 맞춤형 노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증가하는 다문화 가구의 추세를 반영하여 다문화 가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사태는 사회보장정책이 취약계층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부족함을 보여주었고,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민 모두가 취약 계층으로 전략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향후 지역사회보장정책 대상을 전체 주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향 전환을 시도해야 함
- (성과지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요 사회보장대상 집단별 돌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 구성 및 이에 따른 추진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세부사업별 목표 달성률을 평균으로 설정

성과지표 명 (단위)	목표 달성률(%)			
	지표정의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 각 세부사업별 목표 달성률의 평균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	90(%)	90(%)	90(%)
목표설정 근거	세부 사업을 통한 목표 달성			
자료출처	세부사업 관련 실적보고서 등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I-1-1. 권역별 영유아 보육(탁아)시설 운영

○ 영유아 인구감소에 따라 운영난으로 면 지역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폐원, 기존 어린이집 폐원 시 보육사각지대 발생

-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보육취약지역에 권역별(거점형) 보육(탁아)시설(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성’ 기반 확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연간 국공립 이용률(%)				
지표정의	국공립 이용률/매년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24(%)	25(%)	25(%)	25(%)
목표설정 근거	국공립 이용률 23.3%→25%로 상향 계획에 따른 목표 수준 설정				
자료출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및 운영 관련 보고서				

(2) 세부사업 I-1-2. 보훈가족 예우 지원 확대

○ 내실 있는 보훈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호국안보의식 함양

- 보훈가족 예우 확대로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파 자긍심 고취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보훈가족 명예수당 등 수혜자 수(명)				
지표정의	보훈가족 명예수당 등 수혜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25(명)	925(명)	925(명)	925(명)	925(명)
목표설정 근거	보훈가족 명예수당 등 월별 지급인원 합계				
자료출처	보훈명예수당 관련 공문 및 결과보고서				

(3) 세부사업 I-1-3.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기능 활성화

○ 교육, 재활, 사회심리, 직업훈련 등 전인 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복지센터 활성화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프로그램 운영 수(개), 상담 건수(건), 종사자 수(명)					
지표정의	프로그램 운영 수, 상담 건수, 종사자 수					
연도별 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프로그램	18(개)	19(개)	19(개)	19(개)	20(개)
	상담	240(건)	280(건)	280(건)	300(건)	300(건)
	종사자	6(명)	7(명)	7(명)	7(명)	8(명)
목표설정 근거	공문 및 보고서 등					
자료출처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등					

(4) 세부사업 I-1-4.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에게 보건·의료·주거·돌봄서비스 등 통합 서비스 제공 필요

○ ICT(정보통신기술)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조기 구축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ICT 기반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수혜자 수(가구)				
지표정의	ICT 기반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수혜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20(가구)	620(가구)	620(가구)	620(가구)	620(가구)
목표설정 근거	목표 수준 유지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등				

(5) 세부사업 I-1-5.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 사업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및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 도모

-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율(%)				
지표정의	(실 지원 대상자 수/지원 대상자 수)*100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	90(%)	90(%)	90(%)	90(%)
목표설정 근거	지원 대상자(목표) 수의 90% 수준 유지				
자료출처	공문(보고서 등) 및 행복e음				

(6) 세부사업 I-1-6.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의 친밀감을 증가시켜 한국 생활 적응 및 건강한 가족 관계의 형성을 도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기여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사업 참여자 수(명)					
지표정의	연중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참여자 수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 참여자 수					
연도별 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	200(명)	200(명)	200(명)	200(명)
	여성결혼 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	-	15(명)	15(명)	15(명)	15(명)
목표설정 근거	22년 목표수준 유지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등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사업 I-1-2. 보훈가족 예우 지원 확대

○ 재원 내역

- 향후 4년간 총 소요예산: 5,948백만원(균비 100%)
- 2023년 1,487백만원, 2024년 1,487백만원, 2025년 1,487백만원, 2026년 1,487백만원

○ 민선 8기 군정목표인 행복한 삶, 따뜻한 고성, 중단 없는 복지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확정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 (a)	사회복지* 또는 보건**예산 (b)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 또는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574,451	136,915	23.83	12.64	34.36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예산 제시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보건 분야 코드(090)에 해당할 경우, 보건예산 제시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080), 보건(090)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2) 세부사업 I-1-5. 청소년꿈키움마우처 지원 사업

○ 재원 내역

- 향후 4년간 총 소요예산: 7,672백만원(균비 100%)
- 2023년 1,918백만원, 2024년 1,918백만원, 2025년 1,918백만원, 2026년 1,918백만원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부터 지속사업으로 추진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 (a)	사회복지* 또는 보건**예산 (b)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 또는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574,451	136,915	23.83	12.64	44.32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예산 제시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보건 분야 코드(090)에 해당할 경우, 보건예산 제시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080), 보건(090)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다. [사회보장 전략 2\_자립할 수 있는 힘차고 활기찬 고성]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목표설정 근거

□ 자립할 수 있는 힘차고 활기찬 고성

- 사회보장영역이 사회복지분야를 넘어서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및 환경을 포괄하여 사업 추진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교육과 관련된 사회보장대상 집단의 주변 환경에 대한 간접적 개선과 생활 자립기반 강화 등으로 힘차고 활기찬 고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함
-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함
- 폭넓은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발굴을 통해 고용률 제고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고성군의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교육 서비스 공급을 위해 교육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과지표) 자립할 수 있는 힘차고 활기찬 고성을 위해 일자리, 교육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구성하고, 이에 따른 사업 수행 결과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목표 달성률의 평균치를 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명 (단위)	목표 달성률(%)			
지표정의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 각 세부사업별 목표 달성률의 평균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	90(%)	90(%)	90(%)
목표설정 근거	세부 사업을 통한 목표 달성			
자료출처	세부사업 관련 실적보고서 등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I-2-1. 저소득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 지원 강화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기술능력 습득 및 취·창업 지원으로 자립능력 향상과 생산적 복지 구현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능력 배양으로 생활안정 도모
- 자립·자활을 위한 기능 습득 및 취·창업 지원으로 탈수급 추진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명), 일자리지원센터 연계 의뢰자 수(명)					
지표정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자활참여자 중 일자리지원센터 연계 의뢰자 수					
연도별 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80(명)	310(명)	335(명)	365(명)	365(명)
	일자리 지원센터 연계 의뢰자 수	5(명)	5(명)	5(명)	5(명)	5(명)
목표설정 근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연차별 10%, 26년까지 20% 확대 일자리지원센터 연계의뢰 탈수급자 발굴 목표치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등					

(2) 세부사업 I-2-2. 초고령사회 어르신 일자리 창출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어르신 적합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명)				
지표정의	어르신 적합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490(명)	1,500(명)	1,520(명)	1,540(명)	1,540(명)
목표설정 근거	2025년까지 참여자 1,490명에서 1,540명으로 확대 2026년은 2025년 수준 유지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등				

(3) 세부사업 I-2-3. 청소년 참여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유익한 환경 조성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
  -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 청소년의 여가활동·문화체험·자치활동의 중심적 역할 수행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참여율(%)				
지표정의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참여율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	90(%)	90(%)	90(%)	90(%)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참여율 90% 수준 유지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등				

(4) 세부사업 I-2-4. 여성 재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 제공으로 고용유지 및 역량강화 도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를 위한 능력개발과 자질 함양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수(명)				
지표정의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명)	10(명)	10(명)	10(명)	10(명)
목표설정 근거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 수준 설정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5) 세부사업 I-2-5.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확대

- 경로당-급식도우미 간 서로 협력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분위기 조성
  -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급식도우미를 지원
  - 쾌적한 환경과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통한 공동체 형성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경로당 급식도우미 운영 개소 수(개소)				
지표정의	경로당 급식도우미 운영 개소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45(개소)	47(개소)	50(개소)	53(개소)	55(개소)
목표설정 근거	22년 45개소에서 26년까지 55개소로 확대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등				

(6) 세부사업 I-2-6.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확대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 요양보호사 치매교육비 지원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 요양보호사 예방접종 지원을 통한 건강지원 및 대상어르신 감염 예방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연간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수(명)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자 수(명) +노인복지기여 요양보호사 표창인원 수(명) +요양보호사 건강지원 사업 수혜자 수(명)				
지표정의	연간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수: 연간 100(명)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자 수: 연간 80(명) +노인복지기여 요양보호사 표창인원 수: 연간 2(명) +요양보호사 건강지원 사업 수혜자 수: 연간 900(명)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0(명)	900(명)	900(명)	900(명)	900(명)
목표설정 근거	고성군에 주소를 둔 요양보호사 규모 고려 산정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등				

라. [사회보장 전략 3\_군민 모두가 든든한 환경 조성]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목표설정 근거

□ 군민 모두가 든든한 환경 조성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을 위해 건강, 보호·안전 분야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군민 맞춤형 건강·보호 서비스를 강화하여 제공하기 위해 군민 모두가 든든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 가능한 보호 및 안전사고에 관한 단속 또는 예방을 통해 군민들의 체감 안전수준을 향상하고 보호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성과지표) 군민 모두가 든든한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 및 보호·안전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구성하여, 각 세부사업별 결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목표 달성률의 평균치를 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명 (단위)	목표 달성률(%)			
지표정의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 각 세부사업별 목표 달성률의 평균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	90(%)	90(%)	90(%)
목표설정 근거	세부 사업을 통한 목표 달성			
자료출처	세부사업 관련 실적보고서 등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I-3-1.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운영

○ 긴급한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 해소하고 군민의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는 지역복지 체계 구축

- 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확대한 ‘긴급돌봄 SOS센터’를 설치·운영
- 고령화, 고독사 등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복지 체계 구축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돌봄 대상자 수(명)				
지표정의	돌봄 대상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50(명)	50(명)	50(명)	50(명)
목표설정 근거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긴급한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등				

(2) 세부사업 I-3-2. 치매안심 전문 진료 확대 운영(치매안심센터 확대운영)

○ 민선 8기 군수공약사업 및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치매안심 전문 진료(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하고자 함

- 원거리 지역 주민의 치매관리사업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
- 치매환자·인지저하자 진료·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증화 감소 및 치매인식 개선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연간 시설 이용자 수(명)				
지표정의	시설 이용자 수/매년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20(명)	120(명)	120(명)	120(명)	120(명)
목표설정 근거	시설 이용자 수(120명) 유지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등				

(3) 세부사업 I-3-3.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관내 보건의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 저소득층 등 보건의료·복지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원 대상자 수(명)				
지표정의	목표 대비 지원 대상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15(명)	215(명)	215(명)	215(명)	215(명)
목표설정 근거	22년 기준(215명) 목표 수준 유지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등				

(4) 세부사업 I-3-4. 아동통합 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원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원 아동 수(명)				
지표정의	지원 아동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700(명)	700(명)	700(명)	700(명)	700(명)
목표설정 근거	22년 목표 수준(700명) 유지				
자료출처	공문 및 사업 결과보고서 등				

(5) 세부사업 I-3-5.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 전문인력의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 발달 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부터 양육까지 체계적인 관리 실시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기 맞춤형 건강관리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등록 방문 가구 수(가구)				
지표정의	등록 방문 가구 수(기존 지속방문 중인 누적 가구를 제외한 해당 연도 신규 가구)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0(가구)	50(가구)	50(가구)	50(가구)	50(가구)
목표설정 근거	해당 연도 신규 가구 수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등				

(6) 세부사업 I-3-6.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운영

-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사업으로 취약 아동·여성 폭력 예방
  - 요보호 아동·여성 안전 구축망 형성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사업 대상자 수(명)				
지표정의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사업 대상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목표설정 근거	22년 목표 수준 유지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등				

마. [사회보장 전략 4\_즐거운 삶, 행복한 고성]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목표설정 근거

□ 즐거운 삶, 행복한 고성

- 모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인프라 부족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군민들의 욕구 충족 및 거주환경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즐거운 삶, 행복한 고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함
- 주거 취약 계층 또는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문화·여가 및 체육 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과지표) 문화, 생활 분야 위주의 사업 구성을 통해 나타난 이용자 수, 사업 추진 횟수, 지원 세대 수 등의 결과를 포괄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각 세부사업별 목표 달성률의 평균치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성과지표 명 (단위)	목표 달성률(%)			
지표정의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 각 세부사업별 목표 달성률의 평균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	90(%)	90(%)	90(%)
목표설정 근거	세부 사업을 통한 목표 달성			
자료출처	세부사업 관련 실적보고서 등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I-4-1. 노인 및 장애인 교통 불편 해소서비스 확대

○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 불편 해소 및 이동 편의 증진 도모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수(명)				
지표정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000(명)	6,000(명)	6,000(명)	6,000(명)	6,000(명)
목표설정 근거	22년 목표수준(6,000명) 유지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운영일지 등				

(2) 세부사업 I-4-2.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 추진

○ 지역예술인 처우개선을 통한 지역문화 예술 발전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 횟수(회)				
지표정의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 횟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회)	2(회)	2(회)	2(회)	2(회)
목표설정 근거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의 유형 및 성격은 당해연도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유지를 위해 연간 사업 추진 횟수(2회)로 설정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지출서류 등				

(3) 세부사업 I-4-3. 파크골프장 조성

○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한 군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노령기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인프라 조성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파크골프장 설치율(%), 이용자 수(명)					
지표정의	파크골프장 설치율, 이용자 수					
연도별 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파크골프장 설치율	-	50(%)	100(%)	-	-
	이용자 수	-	-	-	700(명)	700(명)
목표설정 근거	2024년까지는 파크골프장 설치, 공정률을 통해 시설 조성에 중점 2025년부터는 이용자 수를 통해 시설 운영에 중점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등					

(4) 세부사업 I-4-4. 고성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 코로나19로 장애인 체육행사 취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

○ 생활체육 및 체력향상에 관심이 있는 관내 등록 장애인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고성군장애인 체육 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사업추진율(%)				
지표정의	(추진사업 수/목표사업 수)*100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80(%)	80(%)	80(%)	80(%)
목표설정 근거	22년 목표(7개 사업)의 80% 수준 유지				
자료출처	개별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사업수입				

(5) 세부사업 I-4-5.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 화재 사각지대 위험요소 사전대비로 화재로부터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도모

- 취약계층으로 한정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군민으로 확대
-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원세대 수(세대)				
지표정의	지원세대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00(세대)	800(세대)	800(세대)	800(세대)	800(세대)
목표설정 근거	22년 목표수준 유지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등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사업 I-4-3. 파크 골프장 조성

○ 재원 내역

- 향후 4년간 총 소요예산: 2,600백만원(균비 100%)
- 2023년 1,200백만원, 2024년 1,300백만원, 2025년 50백만원, 2026년 50백만원

○ 민선 8기 군정목표인 종합 스포츠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확정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 (a)	사회복지* 또는 보건**예산 (b)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 또는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574,451	136,915	23.83	12.64	15.02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예산 제시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보건 분야 코드(090)에 해당할 경우, 보건예산 제시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080), 보건(090)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 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 나.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 다.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 라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마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총 16개 사업(세부과업 총 16개) ]



나.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현황 및 대표과업 추진배경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현황 <3년('19~'21년) 평균>

□ 인적안전망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지사협 위원	통·이장	자생 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	기타
합계	936	66	237	362	69	66	136
고성읍	123	12	42	6	26	15	22
삼산면	71	6	7	23	3	10	22
하일면	51	2	15	22	1	3	8
하이면	72	3	19	42	2	4	2
상리면	64	2	16	32	2	3	9
대가면	88	14	23	43	-	-	8
영현면	52	9	12	15	5	0	11
영오면	41	8	11	20	1	1	0
개천면	56	1	17	17	1	2	18
구만면	50	-	14	22	3	3	8
회화면	49	4	16	8	2	15	4
마암면	81	2	15	55	6	3	-
동해면	71	1	22	34	8	-	6
거류면	67	2	8	23	9	7	18

\* 법정단체 이외에 시·군·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결성된 모든 단체(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동호회 등)  
 \*\* 공동주택·오피스텔·고시원·모텔 관리자, 집배원, 검침원, 배달업종 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농협 등 금융기관 종사자, 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 종 종사자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방문형서비스 제공자,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경찰, 교사, 강사 등(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명시)

□ 위기가구 발굴 현황 및 인적안전망 운영 실적

(단위: 건수)

구분	위기가구 발굴	인적안전망 운영 실적			
		MOU 추진실적	홍보	교육 실적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활동 실적 (고위험 위기가구 1촌 맺기)
평균 (‘19~’21년)	2,380	1	3	8	2

□ 부적정 수급 현황: 생계급여

(단위: 가구수, 백만원, %)

구분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정수급자		징수완료		환수율(%)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계	1,771	20	14.7	16	10.9	80	74.1
고성읍	691	10	8.4	6	4.6	60	54.7
삼산면	64						
하일면	70	1	0.7	1	0.7	100	100
하이면	90						
상리면	60						
대가면	67						
영현면	42						
영오면	66						
개천면	58	1	0.6	1	0.6	100	100
구만면	47						
회화면	140	2	2.2	2	2.2	100	100
마암면	118	1	0.4	1	0.4	100	100
동해면	93	3	1.8	3	1.8	100	100
거류면	165	2	0.6	2	0.6	100	100

□ 부적정 수급 현황: 의료급여

(단위: 가구수, 백만원, %)

구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정수급자		징수완료		환수율(%)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계	1,606	해	당	없	음		
고성읍	716						
삼산면	59						
하일면	58						
하이면	81						
상리면	50						
대가면	61						
영현면	35						
영오면	50						
개천면	50						
구만면	43						
회화면	133						
마암면	44						
동해면	81						
거류면	145						

(2) 지역발전 전략 1 추진배경

□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추진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보장 분야 및 취약계층 대상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범위 또한 확장되어 공적 영역만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점점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와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 및 자원 발굴을 통한 복지자원의 총량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함

□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추진배경

○ 지역사회보장지표에 따르면 고성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이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근로연령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역시 증가세를 보임

(단위: 가구, 명)

사업명	자격명	시설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가구 수	수급권자 수	조사 대상자 수	가구수	수급권자 수	조사 대상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	6,011	7,455	7,942	5,309	6,753	7,240
	기초생계급여	2,077	2,412	2,422	1,752	2,087	2,097
	기초의료급여	1,820	2,170	2,181	1,501	1,851	1,862
	기초주거급여	1,803	2,413	2,425	1,796	2,406	2,418
	기초교육급여	311	460	914	260	409	863
의료급여	소계	2,262	2,660	2,463	1,953	2,351	2,154
	의료급여	1,960	2,297	1,960	1,653	1,990	1,653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229	269	406	228	268	405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73	94	97	72	93	96

\*자료: 행복e음 복지대상자 보장별(자격별) 총괄현황(2022년 5월 기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종 민간자원 활용 및 부정수급 관련 홍보를 통하여 각종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 사회보장 욕구조사 결과, 코로나19에 따라 영역별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 (3.36점)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정책의 필요성(3.72점)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게 나타남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의 사회보장정책이 포괄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발견되었고, 향후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됨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제도의 집중 안내가 필요한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 가구 등으로 대상 확대를 통해 예방적 복지 실현
- (성과지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 건수

성과지표 명(단위)	연간 위기가구 발굴 건수(건)			
지표정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조사 건 제외 위기가구 발굴 건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00(건)	2,000(건)	2,000(건)	2,000(건)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실적에 따른 목표 수준 설정(2020년 위기가구 발굴 건수: 2,384건)			
자료출처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서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사업) II-1-1-1. 고성형 결식아동 급식안전망 구축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에  
방 및 영양개선

- 결식 아동에게 보다 양질의 급식(끼니)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

○ (성과지표) 평균 지원 인원수에 따른 연간 지원 아동 수

성과지표 명(단위)	지원 아동 수(명)				
지표정의	연간 지원 아동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00(명)	500(명)	500(명)	500(명)	500(명)
목표설정 근거	연간 평균 지원 인원				
자료출처	공문(보고서 등)				

□ 세부과업(사업) II-1-1-2.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 전 읍면 찾아가는 복지팀 설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

-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  
달체계를 개편하여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성과지표) 읍면 수 대비 전담팀 설치 수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율

성과지표 명(단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율(%)				
지표정의	(전담팀 설치 수/읍면 수)*100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00(%)	100(%)	100(%)	100(%)	100(%)
목표설정 근거	전 읍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				
자료출처	공문, 조례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 고성군 부적정 수급 현황

(단위: 가구수, 백만원, %)

구분	수급자 가구	부정수급자		정수완료		환수율(%)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생계급여	1,771	20	14.7	16	10.9	80	74.1
의료급여	1,606	해	당	없	음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철저

-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 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 본인신고의무, 부정수급처벌 적극 안내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안내

○ (성과지표) 연간 생계·의료 급여 부적정 수급 발굴 건수

성과지표 명(단위)	부적정 수급 발굴 건수(건)			
지표정의	연간 부적정 수급자 발굴 건수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8(건)	15(건)	12(건)
목표설정 근거	2022년 기준 부적정 수급 가구 현황(생계·의료 급여)			
자료출처	부적정 수급 가구 발굴 및 환수 결과 보고서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사업) II-1-2-1. 수급자 자격 확인조사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의거, 군수는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 정기확인조사 및 월별확인조사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관리
- 수급 변동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및 부정수급 방지

○ (성과지표) 연간 수급자 자격 확인조사 실시 횟수

성과지표 명(단위)	연간 수급자 자격 확인조사 실시 횟수(회)				
지표정의	연간 수급자 자격 확인조사 실시 횟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회)	8(회)	8(회)	8(회)	8(회)
목표설정 근거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자료출처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서				

□ 세부과업(사업) II-1-2-2. 부정수급 포상금제도 홍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종 민간자원 활용 및 부정수급관련 홍보를 통하여 각종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

○ (성과지표) 연간 부정수급 포상금제도 홍보 횟수

성과지표 명(단위)	연간 부정수급 포상금제도 홍보 횟수(회)				
지표정의	연간 부정수급 포상금제도 홍보 횟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회)	2(회)	2(회)	2(회)	2(회)
목표설정 근거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자료출처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서				

다.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1) 지역사회 민관협력 현황 및 추진배경

(1) 지역사회 민관협력 현황

□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 현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노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능력함양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 워크숍 추진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 지원(정기회의 및 자체사업 추진)
- 복지기관·시설종사자, 사회단체 대표,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례적 회의를 통해 상호 소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문제해결 체계 마련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지역의 실질적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 및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과 사업 진행
- 지역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정책 수립·시행·평가지 주민들의 생각을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 민간기업, 관련 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사업 진행
-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전적으로 담당했던 공적 서비스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니터링 기능 강화 노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위해 교육의 장 개설

##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지원

-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화사업 지원으로 군 및 읍면 지사협 소통, 협업

## □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 기반

## ○ 민관협력 개선 방안

- 민관 협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수행함
- 사회보장서비스 공급조직(직능별로 장애인, 노인, 아동 등)과 협력하여 공급 장애 요인 제거 및 신규 서비스 도입
-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요양보호사 단체 등 사회보장서비스 관련 민간조직과 협업을 통한 사회보장정책 개선 및 발전 방안 마련

## ○ 지역주민 참여방법 다각화 및 의견수렴 확대

- 사회보장서비스 이용자 단체(노인단체, 장애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회보장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지방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률 제고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복지이장, 고성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 ‘희망지기’ 등 조직화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 조직, 지역사회보장계획 의견수렴 및 홍보
- 종합사회복지관의 군민모니터링단과 적극 협조하여 의견수렴 및 홍보

##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역 복지 사업의 중심역할 담당

-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적극적 지원
- 위기상황에서 민·관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 실시

(2) 지역발전 전략 2 추진배경

□ 대표과업 1.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 사회보장 욕구조사 결과, 고성군의 양육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구분	아동양육 부담				아동의 발달문제 지원 서비스
	양육비 부담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양육관련 정보와 기술 양육 부족	
어려움 경험 정도 (5점 척도 평균, 점)	2.83	1.90	2.17	1.97	1.83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5점 척도 평균, 점)	2.86	2.03	2.38	2.17	2.14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아동 가구의 문화·여가와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구분	어려움 경험 정도 (5점 척도 평균, 점)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5점 척도 평균, 점)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전체	2.01	2.03	2.36	2.39
아동가구	2.13	2.13	2.70	2.70
노인가구	1.98	2.00	2.22	2.27
장애인가구	1.84	1.85	2.03	2.11
다문화가구	2.09	2.09	2.27	2.27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1.56	1.59	1.93	1.93
차상위계층	2.11	2.11	2.22	2.33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대표과업 2. 자원봉사 활동 지원

○ 고성군 자원봉사 단체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자원봉사단체수(개)	합계(명)								
생활편의	123	8,515	124	8,545	127	8,646	128	8676	129	8,725
주거환경	2	238	2	238	2	238	2	238	2	238
상담	1	65	1	65	1	65	1	65	1	65
보건의료	1	12	-	-	-	-	-	-	-	-
환경보호	1	164	2	222	2	222	2	222	2	222
안전·방법	1	347	1	347	1	347	1	347	1	347
멘토링	1	20	1	20	1	20	1	20	1	20

\*자료: 고성군 주민생활과 제공

○ 고성군 자원봉사자 연령별 등록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명)		13,395	14,796	15,583	15,893	16,116
19세 이하	수(명)	3,453	3,578	3,581	3,156	2,670
	비율(%)	25.8	26.7	26.7	23.6	19.9
20~29세	수(명)	2,610	3,051	3,455	3,935	4,397
	비율(%)	19.5	22.8	25.8	29.4	32.8
30~39세	수(명)	726	859	898	886	912
	비율(%)	5.4	6.4	6.7	6.6	6.8
40~49세	수(명)	1,875	1,912	1,902	1,795	1,687
	비율(%)	14.0	14.3	14.2	13.4	12.6
50~59세	수(명)	2,322	2,527	2,563	2,578	2,601
	비율(%)	17.3	18.9	19.1	19.2	19.4
60~69세	수(명)	1,634	1,901	2,062	2,249	2,373
	비율(%)	12.2	14.2	15.4	16.8	17.7
70세 이상	수(명)	775	968	1,122	1,294	1,476
	비율(%)	5.8	7.2	8.4	9.7	11.0

\*자료: 고성군 주민생활과 제공

2) 대표과업 1.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1.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 아동 돌봄 지원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및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돌봄 부담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아동 돌봄 체계 구축

○ (성과지표)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

성과지표 명(단위)	목표달성률(%)			
지표정의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세부사업 실적/목표×100)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	90(%)	90(%)	90(%)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목표달성 기준			
자료출처	세부사업 관련 실적보고서 등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사업) II-2-1-1. 고성군장난감도서관 운영

- 부모의 장난감 및 육아용품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
-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및 부모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기능 향상
  - 영유아 부모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연령별 다양한 놀이감 제공으로 창의력 및 지능 발달
  - 부모교육 등을 통한 육아소통공간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기능 향상
- (성과지표) 장난감대여 및 프로그램, 행사 참여인원에 따른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수

성과지표 명(단위)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수(명)				
지표정의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100(명)	2,100(명)	2,100(명)	2,100(명)	2,100(명)
목표설정 근거	장난감대여 및 프로그램, 행사 참여인원 수				
자료출처	장난감대여 및 프로그램, 행사 참여인원 명부				

□ 세부과업(사업) II-2-1-2.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경감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증가
  - 저출산 고령화 및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 (성과지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수

성과지표 명(단위)	지원 대상 수(명)				
지표정의	지원 대상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0(명)	80(명)	80(명)	80(명)	80(명)
목표설정 근거	주 지원 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둘째아 이상 아동				
자료출처	공문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대표과업 2. 자원봉사 활동 지원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2. 자원봉사 활동 지원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속에서 자원봉사 참여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운영 필요

- 코로나19 방역 및 취약계층 지원 관련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통한 자원봉사 단체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주민 참여도 증가에 기여

• 자원봉사 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자원봉사자 육성

-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 및 사회활동 기회 부여

-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자원봉사센터, 공·사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모

○ (성과지표)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

성과지표 명(단위)	목표달성률(%)			
지표정의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세부사업 실적/목표×100)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	90(%)	90(%)	90(%)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목표달성 기준			
자료출처	세부사업 관련 실적보고서 등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사업) II-2-2-1. 읍면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지원

○ 다양한 자원봉사사업 추진으로 지역화합 도모 및 참여의식 강화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추진

○ (성과지표)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읍면 순회 정기 활동 계획에 따른 활동 개최 횟수

성과지표 명(단위)	읍면 자원봉사 정기 활동 개최 횟수(회)				
지표정의	읍면 자원봉사 정기 활동 개최 횟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4(회)	14(회)	14(회)	14(회)	14(회)
목표설정 근거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14개 읍면 순회 정기 활동 계획				
자료출처	활동 결과보고서				

□ 세부과업(사업) II-2-2-2.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추진

○ 여가문화의 확산으로 높아진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재능 분야에 부족한 인프라를 대신해 재능봉사 부분의 전문성을 확대

-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필요한 소양 및 전문교육 실시

○ (성과지표) 전년도 참여실적에 근거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참여자 수

성과지표 명(단위)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참여자 수(명)				
지표정의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참여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참여실적에 근거한 목표 수준 설정				
자료출처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결과보고서				

라.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추진배경

(1)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현황

□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현황 및 사업실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

합계(명)	대표협의체(명)	실무협의체(명)	실무분과(명)
441	34	41(2명 중복)	105(10명 중복)

- 38개 민간 사회단체, 32개 민간 기관, 7개 공공기관 등에서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해 노력
- 대상별 분과 구성을 기능별 구성으로 변경하여 실무분과 활성화 제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 내용
지역 공동체 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협력 방역사업	사회복지시설 27개소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실시
	‘코로나19 예방’ 슬기로운 명절보내기 캠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방법 안내 및 추석 명절 고향방문 자제 홍보, 마스크 배부
보건안전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협력 방역사업	사회복지시설 27개소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실시
영유아 아동 청소년분과	스쿨존 안전캠페인	관내 19개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및 옐로카드 부착 교통안전 실천 서약서 작성(학생)
총괄기획분과	고성군 청소년센터 개관 먹거리부스 운영	먹거리 부스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화합 계기 마련

□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현황 및 사업실태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개소 261명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구분	사업명
고성읍(10)	고성읍 나눔뱅크(Bank) 홈클린(Home Clean) 사업 희망동지(집수리) 사업 밥한그릇 똑딱밀반찬배달사업 저소득층목욕지원사업 장살아(특화사업) 독거노인1:1자매결연사업 행복을찾는소식통!움직이는복지관!(고성읍이동복지관) 소원나무(소원들어주기) 고성읍 김장나눔 운영
삼산면(2)	장수취약계층 어르신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행복한 삼산 건강반찬 나누기
하일면(3)	함께걸어요! 저소득 어르신 실버카지원사업 취약계층 주택청소 참여 맞춤형 영양식품 선물꾸러미 전달
하이면(2)	구석구석 찾아가는 마을복지관 관심으로 나누는 안녕한 한 끼
상리면(2)	토닥토닥 내마음 행복찾기 연꽃공원 소소한 행복나눔
대가면(1)	멋내고!뽀내고!짹게!
영현면(1)	부모님! 사랑합니다.
영오면(4)	맞춤형 안경 제작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사업 영오시장 복지상담 및 캠페인 추진 사랑의 간식꾸러미 전달
개천면(1)	개천 경로당! 안전 ok
구만면(1)	밝혀봐요, 구만면 호롱불
회화면(1)	취약계층 방문목욕 지원사업
마암면(2)	우리동네 “짹짹이” 실버카 지원사업 사랑의 간식 꾸러미
동해면(1)	독거노인어르신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거류면(1)	우리함께 가보자! 행복한 문화나들이

(2) 지역발전 전략 3 추진배경

□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업 추진 배경

- 공적 제도권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공공 복지의 한계를 극복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을 참여시켜 민주적 의사 소통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민관협력의 기틀을 마련함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역복지 사업의 중심역할 담당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임
    - 위기상황에서 민·관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 실시
    -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
    -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위한 노력
  -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 강화

□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업 추진 배경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운영 효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읍면 단위 도움의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
-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자원 발굴, 연계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속에서 자원봉사 참여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운영 필요
  -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회의 실적이 저조함. 이에 비대면 회의 등 방법을 다양화하여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특화사업 진행 필요
  - 지역사회에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여 지역복지 활성화의 기틀 마련

2)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 2020년 초 코로나19의 전국적 발생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사회가 더욱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향후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과제임을 발견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확인함
- 군민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초기 관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문제 해결 및 노력
-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정기 회의 운영 및 업무 협의
  - 지역 내 욕구 조사
  - 분과 활동을 통한 기관정보 교류
  -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참여
  - 주민참여 사업을 민관이 공동으로 기획·진행
  - 사업 설명회, 평가회 실시를 통해 사업 모니터링 및 주민 의견 반영
  - 신문, 방송, 밴드 등 다양한 홍보활동
  - 언론 보도, SNS 등 다양한 홍보방법 활용 및 공모전 추진으로 주민참여도 노력

○ (성과지표)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

성과지표 명(단위)	목표달성률(%)			
지표정의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세부사업 실적/목표×100)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	90(%)	90(%)	90(%)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목표달성 기준			
자료출처	세부사업 관련 실적보고서 등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사업) II-3-1-1.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공공, 민간, 주민 참여(participation)를 통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발굴 기능 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비 보조를 통한 복지사업 활성화

- 복지기관·시설종사자, 사회단체 대표,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례적 회의를 통해 상호 소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문제해결 체계 마련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 및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과 사업 진행

○ (성과지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개최 횟수 합계

성과지표 명(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 달성을 위한 회의개최 수(회)				
지표정의	대표협의체 회의 횟수+실무협의체 회의 횟수+실무분과 회의 횟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7(회)	27(회)	27(회)	27(회)	27(회)
목표설정 근거	대표협의체 3회+실무협의체 3회+실무분과 21회				
자료출처	공문(보고서 등)				

□ 세부과업(사업) II-3-1-2.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향후 지역사회보장정책의 과제임을 발견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확인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지역의 실질적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

○ (성과지표) 위촉위원 수 대비 참여위원 수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참여율

성과지표 명(단위)	역량강화교육 참여율(%)				
지표정의	(참여위원 수/위촉위원 수)*100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90(%)	90(%)	90(%)	90(%)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교육 참여실적에 따른 목표 수준 설정				
자료출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보고서 등				

3)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 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을 통한 지역간 소통 및 공동체 의식 조성

- 1개 읍, 13개 면에 261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
-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및 지역문제에 적극적 대응 가능

-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화사업 지원으로 군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 및 협업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 워크숍 추진 등

○ (성과지표)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

성과지표 명(단위)	목표달성률(%)			
지표정의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세부사업 실적/목표×100)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	90(%)	90(%)	90(%)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목표달성 기준			
자료출처	세부사업 관련 실적보고서 등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사업) II-3-2-1.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지역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도의식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
  -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및 지역문제에 적극적 대응 가능
- (성과지표) 특화사업 추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합계

성과지표 명(단위)	특화사업 추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개)				
지표정의	특화사업 추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합계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4(개)	14(개)	14(개)	14(개)	14(개)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서				
자료출처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서				

□ 세부과업(사업) II-3-2-2.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 지역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도의식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
  -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 및 주민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성과지표) 연간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실시 횟수

성과지표 명(단위)	연간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실시 횟수(회)				
지표정의	연간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실시 횟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회)	1(회)	1(회)	1(회)	1(회)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연차별 시행결과보고서				
자료출처	연차별 시행결과보고서				

마.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1)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현황 및 추진배경

(1)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현황

□ 사회보장 시설 현황

○ 고성군 사회복지관련 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장애인, 여성·가족 및 아동·청소년>지역사회>정신건강의 순으로 많음

〔표〕 고성군 사회복지관련 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세부시설		현황
노인	360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계	0
			양로시설	0
			노인공동생활가정	0
			노인복지주택	0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계	8
			노인요양시설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계	328
			노인복지관	0
			경로당	325
			노인교실	3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계	14
			재가노인복지시설	14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소계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0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	1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8	
장애인	16	장애인 거주시설	소계	2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0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0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소계	5
			장애인복지관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

			장애인체육시설	0	
			장애인수련시설	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한국수어통역센터	1	
			점자도서관	0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0	
			장애인재활치료시설	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소개	1	
			보호작업장	1	
			근로작업장	0	
			직업적응훈련시설	0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			8
		지역사회	5	노숙인 복지시설	0
사회복지관	1				
자활센터	1				
자활기업	0				
푸드뱅크	1				
결핵 및 한센병 관련 시설	0				
지역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	2				
여성·가족 및 아동·청소년	1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상담시설	1		
		성폭력피해자보호·상담시설	0		
		성매매피해자보호·상담시설	0		
		청소년복지시설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아동복지시설	11		
정신건강	3	정신건강복지센터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0		
		정신요양시설	1		
		정신재활시설	1		
		정신건강 관련 기관	0		

\*자료: 경남연구원, 「지역복지의 수요·자원 조사분석 및 과학복지 모델링」, 경상남도 복지자원조사

□ 사회보장 시설 외 인프라 현황

○ 고성군 문화시설은 6개소, 공공체육시설은 19개소임

[표] 문화공간 및 공공체육시설 현황

구분		현황(개소)	
문화공간	합계	6	
	공연시설	공공 공연장	1
		민간 공연장	-
		영화상영관(스크린수)	1(2)
	전시시설	미술관	-
		화랑	-
	지역문화복지시설	군민회관	-
		종합복지회관	1
		청소년회관	-
	기타시설	문화원	1
		국악원	-
		전수회관	2
공공체육시설	합계	19	
	육상경기장	2	
	축구장	3	
	하키장	-	
	야구장	-	
	테니스장	2	
	씨름장	1	
	간이운동장(동네체육시설)	-	
	체육관	구기체육관	3
		투기체육관	2
		생활체육관	2
	수영장	1	
	국궁장	1	
	양궁장	-	
	승마장	-	
	골프연습장	-	
	조정카누장	1	
요트장	1		
빙상장	-		

\*자료: 2021년 고성군 통계연보(2020년 기준 문화공간, 체육시설)

(2) 지역발전 전략 4 추진배경

□ 대표과업 1. 의료 인프라 확충

○ 2020년 기준 고성군 의료기관: 총 47개소

구분	병원 수(개)	병상 수(개)
계	47	1,011
종합병원	-	-
병원	3	642
의원	20	-
특수병원	-	-
요양병원	2	369
치과의(병)원	11	-
한방의원	-	-
한의원	11	-
조산소	-	-
부속의원	-	-
보건의료원	-	-
보건소	1	-
보건지소	13	-
보건진료소	12	-

\*자료: 2021년 고성군 통계연보(의료기관)

○ 기초생활유지 어려움 중 의료비 부족에 대한 고성군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게 나타남

구분	어려움 경험 정도(5점 척도 평균, 점)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5점 척도 평균, 점)						
	기초생활해결의 어려움					가계재정관리 의 어려움	기초생활해결의 어려움					가계재정관리 의 어려움	
	생계비 부족	주거비 부족	의료비 부족	교육비 부족	냉난방비 부족		생계비 부족	주거비 부족	의료비 부족	교육비 부족	냉난방비 부족		
고성군	2.77	1.56	2.60	1.30	2.62	2.60	2.95	1.74	2.80	1.43	2.81	2.77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고성군의 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불균형 심각성 인식 정도(3.74점)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소득 및 자산	주거	일자리	교육 시설 및 서비스	사회 복지 서비스	의료 시설 및 서비스	생활 편의 시설	문화·여가 시설	전반적인 삶의 질
5점도평균(점)	2.71	2.74	3.17	2.58	2.87	3.74	2.82	2.72	2.80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대표과업 2. 미래세대 인프라 구축

○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펼치는 복합 공간 조성하여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청소년 센터 운영

- 청소년 센터 ‘온’의 운영으로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촉진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진로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방과후아카데미, 드림스타트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청소년 관련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예술 증진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지원함

-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활동, 역량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청소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 권한을 부여한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운영하여 청소년의 정책 주도성을 보장함
- 청소년의 자율적인 동아리활동 운영으로 청소년자치활동의 기회 보장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중·장기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2) 대표과업 1. 의료 인프라 확충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1. 의료 인프라 확충

○ 2020년 기준 고성군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10.8%로 경상남도 내 5위를 기록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간 미충족 의료율	4.7	16.9	10.0	13.4	13.3	10.8

\*자료: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주: 연간 미충족 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수/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의료 취약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연간 미충족 의료율을 감소시킴

○ (성과지표)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

성과지표 명(단위)	목표달성률(%)			
지표정의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세부사업 실적/목표×100)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	90(%)	90(%)	90(%)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목표달성 기준			
자료출처	세부사업 관련 실적보고서 등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사업)Ⅱ-4-1-1. 출산 후 산모 초음파검사비 지원

○ 산모 대상 유방·자궁 초음파 검사비 지원으로 산모 산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장려

-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유방·자궁 초음파 검사비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관리

○ (성과지표) 출산 후 1년 이내의 검사비 지원 산모 수

성과지표 명(단위)	검사비 지원 산모 수(명)				
지표정의	출산 후 1년 이내의 검사비 지원 산모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목표설정 근거	2021년 고성군 출생 통계				
자료출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세부과업(사업)Ⅱ-4-1-2.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

○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으로 일하는 부모와 자녀들의 진료편의 제공

- 야간 소아청소년 환자 관외 진료에 따른 불편 해소

-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병원 방문 편의 도모

○ (성과지표) 주 2회 별빛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따른 월평균 이용자 수

성과지표 명(단위)	별빛 소아청소년과 이용자 수(명)				
지표정의	주 2회 별빛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따른 월평균 이용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목표설정 근거	고성군 영유아·아동 및 청소년 인구 현황(2022년 8월 기준 5,684명)				
자료출처	운영 일지 및 결과보고서 등				

3) 대표과업 2. 미래세대 인프라 구축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2. 미래세대 인프라 구축

- 2022년 9월 기준 고성군 유년 인구(0~14세)는 3,963명으로 고성군 전체 (49,895명)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농,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이 조례에서는 1가구 3자녀 이상을 뜻했던 다자녀세대의 정의를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로 정의하고 있음
- 지속적인 인구 유출 또는 인구 유입의 어려움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 전반에 인구증가 시책으로 미래세대 및 생산가능 인구의 정착 및 유입을 위한 미래세대 인프라를 구축함
- (성과지표)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

성과지표 명(단위)	목표달성률(%)			
지표정의	세부사업의 계획 목표달성률(세부사업 실적/목표×100)			
연도별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	90(%)	90(%)	90(%)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목표달성 기준			
자료출처	세부사업 관련 실적보고서 등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사업) II-4-2-1. 청소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진로체험지원 전산망 ‘꿈길’을 활용한 체험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성과지표)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운영 횟수 및 프로그램 참여율

성과지표 명(단위)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프로그램 참여율(%)					
지표정의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운영 횟수(정량평가) 프로그램 참여율: (실제 참여 인원수/목표 인원수)*100					
연도별 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프로그램 운영 횟수	9(회)	9(회)	9(회)	9(회)	9(회)
	프로그램 참여율	90(%)	90(%)	90(%)	90(%)	90(%)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자료출처	공문(보고서 등)					

□ 세부과업(사업) II-4-2-2. 청소년 센터 운영

○ 고성군 청소년센터 ‘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예술 증진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지원함

- 청소년 참여확대 및 청소년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운영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회화면 이전으로 인한 청소년 참여 및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 (성과지표)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운영 횟수 및 프로그램 참여율

성과지표 명(단위)	전년도 대비 청소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프로그램 참여율(%)					
지표정의	전년도 대비 청소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 프로그램 참여율: (실제 참여 인원수/목표 인원수)*100					
연도별 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프로그램 운영 횟수	32(회)	32(회)	32(회)	32(회)	32(회)
	프로그램 참여율	90(%)	90(%)	90(%)	90(%)	90(%)
목표설정 근거	연간 평균 프로그램 운영 횟수					
자료출처	내용분석 및 고성군청소년센터 ‘온’ 2차 자료(계획 및 결과보고)					

##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

- 가. 지역사회보장 관련 입법 지원
- 나.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 다.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 가. 지역사회보장 관련 입법 지원

##### 1) 세부사업(과업) 관련 법·조례 현황

사업번호	세부사업(과업) 명	항목		법 및 조례명
		법	조례	
I-1-1	권역별 영유아 보육(탁아)시설 운영	○		「영유아보육법」
I-1-2	보훈가족 예우 지원 확대	○		「국가보훈기본법」
I-1-2	보훈가족 예우 지원 확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I-1-2	보훈가족 예우 지원 확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I-1-2	보훈가족 예우 지원 확대		○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I-1-3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기능 활성화	○		「장애인복지법」
I-1-3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기능 활성화		○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I-1-4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I-1-5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 사업		○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I-1-6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I-2-1	저소득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 지원 강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I-2-2	초고령사회 어르신 일자리 창출	○		「노인복지법」
I-2-3	청소년 참여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진로교육법」
I-2-4	여성 재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		「양성평등기본법」
I-2-5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확대		○	「고성군 노인복지 조례」
I-2-6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I-2-6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확대		○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I-3-1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운영		○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I-3-2	치매안심 전문 진료 확대 운영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		「치매관리법」
I-3-3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국민건강증진법」
I-3-3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지역보건법」
I-3-3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국민영양관리법」
I-3-4	아동통합 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		「아동복지법」
I-3-5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		「국민건강증진법」
I-3-5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		「모자보건법」
I-3-6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운영		○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I-4-1	노인 및 장애인 교통 불편 해소서비스 확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I-4-1	노인 및 장애인 교통 불편 해소서비스 확대		○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I-4-2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 추진		○	「고성군 예술인복지증진조례」
I-4-3	파크골프장 조성		○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I-4-4	고성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		「국민체육진흥법」

I-4-5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I-4-5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II-1-1-1	고성형 결식아동 급식안전망 구축	○	`	「아동복지법」
II-1-2-1	수급자 자격 확인조사 실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II-1-2-2	부정수급 포상금제도 홍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II-2-1-1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II-2-1-2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아동돌봄지원법」
II-2-2-1	읍면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지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II-2-2-1	읍면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지원		○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II-2-2-2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추진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II-2-2-2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추진		○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II-3-1-1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II-3-1-1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II-3-1-2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II-3-1-2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II-3-2-1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II-3-2-1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II-3-2-2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II-3-2-2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II-4-1-1	출산 후 산모 초음파검사비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II-4-1-1	출산 후 산모 초음파검사비 지원	○		「모자보건법」
II-4-1-2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	○		「보건의료기본법」
II-4-1-2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II-4-1-2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	○		「지역보건법」
II-4-2-1	청소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		「진로교육법」
II-4-2-2	청소년 센터 운영	○		「청소년기본법」
II-4-2-2	청소년 센터 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2) 세부사업(과업) 관련 조례·지침 지원계획

사업번호	세부사업 명	지원 계획 항목		조례·지침 명
		조례	지침	
II-4-1-1	출산 후 산모 초음파검사비 지원	○		「출산 후 산모 초음파 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보완 관리체계

구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관리주체	책임자	주민생활과장					
	공공 실무책임자	주민생활과장					
	민간 참여자	학계	현장	위원회	민간단체 등		
		2명	3명	10명	4명		
수립절차	절차	수정·보완 계획수립	기본계획 수정·보완	지사협 심의	의회 보고	복지부 제출	
	시기	'23	' 22. 09. 20	'22. 10. 28	'22. 10. 중	'22. 11. 중	'22. 11. 중
		'24	' 23. 05. 01	'23. 07. 01	'23. 10. 중	'23. 10. 중	'23. 11. 중
		'25	' 24. 05. 01	'24. 07. 01	'24. 10. 중	'24. 10. 중	'24. 11. 중
		'26	' 25. 05. 01	'25. 07. 01	'25. 10. 중	'25. 10. 중	'25. 11. 중
수정·보완 범위 및 방법	- 고성군만의 특색을 반영한 사회보장사업 발굴 - 도 계획(안)에 따른 추진전략체계 보완 - 향후 4년간 고성군의 정책 방향성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위주의 구성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체계

구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체계						
수립주체	책임자	주민생활과장						
	공공	수요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자립할 수 있는 힘차고 활기찬 고성	군민 모두가 튼튼한 환경 조성	즐거운 삶, 행복한 고성			
		4명	4명	4명	4명			
	민간	학계	현장	위원회	민간단체 등			
2명		3명	10명	4명				
수립절차	절차	연차별 계획 TFT구성	환경 분석	분과별 논의	연차별 계획수립	심의 보고	제출	
	시기	'23	'22. 05. 01	'22. 07. 01	'22. 09. 30	'22. 10. 중	'22. 10. 30	'22. 11. 30.
		'24	'23. 05. 01	'23. 07. 01	'23. 09. 30	'23. 10. 중	'23. 10. 30	'23. 11. 30.
		'25	'24. 05. 01	'24. 07. 01	'24. 09. 30	'24. 10. 중	'24. 10. 30	'24. 11. 30.
		'26	'25. 05. 01	'25. 07. 01	'25. 09. 30	'25. 10. 중	'25. 10. 30	'25. 11. 30.
환류	시·군·구 지사협 심의 / 의회 보고 / 5기계획 수정·보완 / 공개							

3) 연차별 시행계획 관리체계

구분		시행계획 모니터링				시행계획 자체평가			
관리 주체	책임자	공공(주민생활과장)				공공(주민생활과장)			
	공공	관계부서(고성군)				관계부서(고성군)			
	민간	TFT				TFT			
관리 대상	범위	세부사업(과업) 전체				대표과업 및 세부사업(과업)			
관리 절차	절차	절차별 수행 시기 및 횟수				절차별 수행 시기 및 횟수			
		모니터링 계획수립	자료수집 및 분석	모니터링 수행	환류 등	평가계획	자료수집 및 분석	평가수행	환류 등
	시기 (주기)	1년	1년	6월	월/분기/ 반기 등	1년	1년	1월	분기 /반기 등
	횟수	1회	1회	분과별 1회	분과별 1회	2회	1회	분과별 1회	1회
관리 방법	관리 사항	사업/과업별 목표달성수준, 정책효과성, 정책 적절성, 정책효율성 등				사업/과업별 목표달성수준, 정책효과성, 정책 적절성, 정책효율성 등			
	관리 지표	세부사업 모니터링 지표(관리항목)				시·군·구 평가 지표(항목) *예) 시·도의 시·군·구 평가지표와 자체 평가지표 등			
	방법	교육, 컨설팅, 서면자문 등				서면/대면 평가 등			
결과환류		보고서 공개, 사업부서 공유, 실적보고서 반영 등				평가결과 환류 (연차별 실적 보고서 반영, 정보공개, 정책이슈 제기, 정책 환류)			

4)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 관리체계

구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 관리체계						
수립 주체	책임자	주민생활과장						
	공공	수요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자립할 수 있는 힘차고 활기찬 고성		군민 모두가 든든한 환경 조성		즐거운 삶, 행복한 고성
		4명	4명		4명		4명	
	민간	학계		현장		위원회		민간단체 등
2명		3명		10명		4명		
수립 절차	절차	TFT 구성	실적 자료 취합	논의	실적 보고서 작성	심의 보고	제출	
	시기	'23	'23. 11. 중	'24. 01. 중	'24. 01. 중	'24. 02. 중	'24. 02. 중	'24. 2, 28
		'24	'24. 11. 중	'25. 01. 중	'25. 01. 중	'25. 02. 중	'25. 02. 중	'25. 2, 28
		'25	'25. 11. 중	'26. 01. 중	'26. 01. 중	'26. 02. 중	'26. 02. 중	'26. 2, 28
		'26	'26. 11. 중	'27. 01. 중	'27. 01. 중	'27. 02. 중	'27. 02. 중	'27. 2, 28
환류		시·군·구 지사협 심의 / 의회 보고 / 5기계획 수정·보완 / 공개						

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매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수립일정 설정

다.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자료명(기관)	활용 현황 및 계획	관리 주체 및 방안
지역사회보장지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 지표 활용</li> <li>- 지역사회보장 영역 읍면별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보장지표 공표자료의 활용 및 미공표 자료에 대한 지자체 Data를 활용하여 최신화 유지 관리</li> </ul>
제5기 지역주민 욕구조사 (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진단 활용</li> <li>- 신설·변경·폐지 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li> <li>- 지역주민 욕구 진단에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보장조사 DATA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예정</li> </ul>
수급자 자격 정기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진단 활용</li> <li>- 신설·변경·폐지 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li> <li>- 지역주민 욕구 진단에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보장조사 DATA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예정</li> </ul>

## 5. 별첨자료

---

- 첨부1. 제5기 기본계획 수립 체계
- 첨부2. 지역사회보장의 성과, 진단 및 전망
- 첨부3. 세부사업 목록
- 첨부4. 고성군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 첨부5.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분석 결과

### 5. 별첨자료

#### [첨부 1] 제5기 기본계획 수립 체계

#####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 □ 총괄 현황

구분	전체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담당자	유관부서 담당자	위원	전담인력	민간기관 /시설	기타
인원(명)	28	2	14	3	1	8	-
비율(%)	100	7	50	11	4	29	-

###### □ 세부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비고
팀장(공공)	박원철	주민생활과장	계획수립 총괄	
팀장(민간)	이종수	실무협의체 위원장		
위원1	정미향	고성시니어클럽 관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 및 전략목표 설정 분야별 중점추진사업 선정 영역별 세부사업 의견제시	
위원2	김도현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장		
위원3	김명주	주순애원장		
위원4	문동환	영유아아동청소년분과장		
위원5	윤성아	노인분과장		
위원6	김강민	장애인분과장		
위원7	최민서	교육문화체육분과장		
위원8	황순옥	고성가족지원센터장		
위원9	백순임	고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위원10	김향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위원11	김민정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		
위원12	천미옥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		
위원13	허수은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위원14	최정옥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		
위원15	김난아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위원16	최다원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담당		
위원17	박혜화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		
위원18	황희은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		
위원19	윤지성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		
위원20	곽은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위원21	조영숙	체육진흥과 체육행정담당		
위원22	김성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위원23	이지연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위원24	이상희	보건소 치매관리담당		
위원25	김건중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모니터링 계획 수립 부서간 협의 및 조정, 자료취합 및 의견수렴 사회보장 행재정계획
위원26	전명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전문가		학술연구용역 수행연구원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분석, 계획수립 등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반드시 필요)

구분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명)				안전	회의 결과
			전체	공무원	지사협	민관협력		
1	2022년 10월 26일 (수)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TF 회의						
2	2022년 11월 4일 (금)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						
3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대표협의체 회의						
⋮								

[첨부 2] 지역사회보장의 성과, 진단 및 전망

1) 제4기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

구분	전체 사업 수 (3년 평균, 개)			신설·변경·폐지 사업 수 (3년 합계, 개)			사업달성률 (3년 평균, %)	
	총계	중점사업	세부사업	신설	변경	폐지	성과목표 달성률	예산 집행률
전체	44.9	13.6	31.3	29	31	11	70.18	59.28
추진전략 1	11.3	2.3	9	11	11	0	82.40	68.10
추진전략 2	11.3	4	7.3	4	8	6	71.70	70.80
추진전략 3	9	3	6	12	5	2	80.10	55.30
추진전략 4	6.3	2	4.3	2	5	1	46.50	42.90
추진전략 5	7	2.3	4.7	0	2	2	43.40	43.60

주: 전체 사업 수, 신설·변경·폐지 사업 수, 사업달성률은 '19~'21년(3년) 기간의 합계 및 평균값을 제시

□ 전체 사업

○ 제4기 기본계획의 전체 사업 수는 2019~2021년 평균 44.9개로, 중점사업이 13.6개, 세부 사업이 31.3개임

– 추진전략별로는 추진전략 1(체감가능 복지서비스 구축)과 추진전략 2(취약계층이 살기 좋은 고성)의 전체 사업 수가 11.3개로 가장 많았고, 추진전략 4(미래 자원 강화 추진)의 전체 사업 수가 6.3개로 가장 적었음

□ 신설·변경·폐지 사업

○ 신설사업은 2019~2021년 합계 29개로, 추진전략 5(커뮤니티케어 추진)를 제외한 나머지 추진전략에 각각 신설된 것으로 나타남

- 추진전략 1(체감가능 복지서비스 구축)에 ‘맞춤형 돌봄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작은영화관 운영’, ‘전입축하금 지원’,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 ‘맞춤형청년주택 건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지원’, ‘고성형·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신설됨
- 추진전략 2(취약계층이 살기 좋은 고성)에 ‘반다비생활 문화센터설립’, ‘고성형 결식아동급식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지원사업’, ‘고성군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신설함
- 추진전략 3(맘 편한 환경 강화)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 ‘산부인과 운영’,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생애 초기건강관리사업’이 신설됨
- 추진전략 4(미래 자원 강화 추진)에 ‘어린이놀이문화공간설립’, ‘아동친화도시조성’ 사업이 신설됨

○ 변경사업은 2019~2021년 합계 31개로, 추진전략 1(체감가능 복지서비스 구축)의 변경된 사업 수가 11개로 가장 많았고, 추진전략 5(커뮤니티케어 추진)의 변경된 사업 수가 2개로 가장 적었으며, 추진전략별 평균 6.2개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에 대한 수요 또는 자원 및 예산의 변화 등으로 추진전략별 일부 사업의 내용, 사업명, 예산 등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

○ 폐지사업은 2019~2021년 합계 11개로, 추진전략 1(체감가능 복지서비스 구축)을 제외한 나머지 추진전략에서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남

- 자원 및 예산의 변화 등으로 ‘고성군노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 증진센터 이용 활성화’, ‘맘 편한 출산 및 산후조리 환경 조성’, ‘청소년꿈키움바우처지원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폐지됨

구분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		추진전략 3		추진전략 4		추진전략 5	
	성과목표달성률 (%)	예산집행률 (%)								
2019년	44.40	75.39	68.50	76.70	39.48	37.27	77.06	56.08	42.86	44.59
2020년	106.30	75.71	89.87	81.81	141.55	82.00	61.85	72.22	73.06	71.77
2021년	96.36	53.07	56.58	53.79	59.27	46.59	0.50	0.50	14.29	14.29
전체(평균)	82.40	68.10	71.70	70.80	80.10	55.30	46.50	42.90	43.40	43.60

□ 사업달성률

○ 제4기 기본계획의 2019~2021년 평균 사업달성률은 성과목표 달성률이 70.18%, 예산 집행률이 59.28%로 예산 집행률 대비 성과목표 달성률이 높은 편임

- 다른 추진전략에 비해 추진전략 4(미래 자원 강화 추진)와 추진전략 5(커뮤니티케어 추진)의 2019년 대비 2021년 성과목표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큰 감소세를 보이지만, 나머지 추진전략별 성과목표 달성률과 예산 집행률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3년 평균 성과목표 달성률은 추진전략 1(체감가능 복지서비스 구축)이 82.40%로 가장 높고, 추진전략 5(커뮤니티케어 추진)이 43.40%로 가장 낮음
- 3년 평균 예산 집행률은 추진전략 2(취약계층이 살기 좋은 고성)가 70.80%로 가장 높고, 추진전략 4(미래 자원 강화 추진)가 42.90%로 가장 낮음

## 2) 제4기 기본계획의 대표성과

## □ 성과분석 결과 및 대표성과

## ○ 성과분석 결과

- 2019년 도내 최우수 자원봉사센터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최초로 지역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사를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치매 예방과 건강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으며, 주민 권한 부여를 통한 지역 주도형 돌봄 체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음
- 민관협력 관련
  - 모니터링 과정에 사회보장정책 수요자로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니터링 방식을 채택하여 수요자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업 효과성 증대를 위해 모니터링단 운영을 사업과제로 채택하거나 중점사업 시행 기관의 적극적인 자료 제공 등으로 지역사회보장정책 모니터링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맞춤형 복지 관련
  - 국가 정책 변화와 주민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사업폐지, 내용 변경 및 신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달성에 접근하도록 하고, 욕구 등 전수조사 결과 반영에 따른 세부사업 조정, 사업 수행 과정에 따른 주기적 자문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등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홍보방안을 개발하여 참여폭을 확대하고, 사업평가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발전을 도모하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다양화 또는 활성화하거나,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운영 효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다양한 욕구와 수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보편적 복지 관련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계속해서 고성군에 머무를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역자원(마을교사 등)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자원 발굴 확산 또는 기존 자원(마을교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연수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특화사업 진행이 필요함
-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자원 발굴,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확충으로 지역복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이를 위한 사회보장계획 수정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

－ 기타

-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으로 언택트 시대에 맞춘 감염병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및 사회보장서비스 활성화 부진에 대한 비대면 프로그램 활용방안 강구, 코로나19 상황으로 저조한 대면 회의 실적과 대면 프로그램의 진행 변수 발생에 대비하여 ZOOM을 활용한 언택트 프로그램 또는 비대면 회의 방법 개발,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속에서 자원봉사 참여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운영 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 사태는 사회보장정책이 취약계층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부족함을 보여주었고,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민 모두가 취약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향후 지역사회보장정책 대상을 전체 주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향 전환을 시도해야 함

## ○ (대표성과 1)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리는 서로돌봄 문화 조성

- 노인 고령화시대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심 돌봄 환경 조성, 통합형 맞춤형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지원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14개 읍면에 설치하고,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과 어울리며 좋은 돌봄을 받고 생을 잘 마무리(well-dying)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추진
- 경남형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회화면 16개 마을에서 실시
  - 주민으로 돌봄위원을 구성하여 대상자 발굴, 선정 및 서비스 연계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임파워먼트 방법에 의한 접근으로 주민 주체 커뮤니티케어 사업 토대를 마련
  - 2021년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회화면을 제외한 13개 읍·면 13개 마을로 확대 실시(고성군 자체예산)
- 변화된 상황에 행정조직의 적극적 대응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4회 실시하여 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함
  -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담체계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직을 개편함
  - 서로 돌봄의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및 정책결정과정에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과의 정책 접점을 향상함

## ○ (대표성과 2) 여(女) 자(子) 가(家)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고성

-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여성안전지킴이단 운영, 여성친화 일촌기업 맺기 등 노력을 통해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일상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및 젠더폭력 예방·근절 활동 추진함
-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구축
  -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하여 ‘마을로 찾아가는 책놀이터’, ‘책과 놀이로 성장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는 주민 동아리로 이어져 지속가능성을 발견함
- 행정조직에서 선도적으로 주민 전체가 생활하기 적합한 환경 조성 토대 마련
  - 2020년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선정으로 고령, 여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조성까지 확대를 시도하여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이 아니라 주민 전체를 위한 지역사회보장으로의 확대를 시도함
  - 구체적인 행정조직 개편은 고령·여성·아동 친화도시 통합팀을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시행 토대를 구축함
- 급식비 인상으로 아동보호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
  - 행정: 기존 급식비 7,000원을 8,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 반영함
  - 민간: 급식 가맹점 확대에 동참하여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확대됨

## ○ (대표성과 3) 지역사회에서 키우는 꿈과 미래

-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펼치는 복합 공간 조성하여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문화예술, 각종 체험, 진로, 청소년자치활동, 상담,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등 청소년을 위한 모든 기관이 한 공간에 집약되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인프라 부족이라는 약점을 극복함
  -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여 지역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청소년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됨
  - 청소년센터와 CGV 영화관을 결합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에도 적극 대응함
- 민관의 적극적 협업
  - 행정: 교육청소년과를 두어 아동청소년 및 교육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함
  - 민간: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지원단체가 청소년센터 사업에 동참하여 활동 지원
-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활동, 역량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청소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 권한을 부여한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운영하여 청소년의 정책 주도성을 보장함
  - 청소년의 자율적인 동아리활동 운영으로 청소년자치활동의 기회 보장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중·장기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첨부 3] 세부사업 목록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1-1	권역별 영유아보육(탁아)시설 운영	0	X	0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	박록미	055)670-4653			
사업(과업) 배경	· 영유아 인구감소에 따라 운영난으로 면 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폐원, 기존 어린이집 폐원 시 보육사각지대 발생						
사업(과업) 목적	·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보육취약지역에 권역별(거점형) 보육(탁아)시설(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성' 기반 확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근거(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지원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 보육취약지역(국공립 어린이집 없는 지역)					
	대상 규모	· 3개 면(영오면, 동해면, 하일면 권역)					
사업(과업)내용	사업(과업) 유형	· 시설 설치 및 운영					
	세부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등					
전달체계	지원 절차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 등					
	수행 기관	·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채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 ( % )	- ( % )	220 (100 %)	152 (100 %)	- ( % )	
	지방비	소계(①+②)	- ( % )	- ( % )	110 (50 %)	76 (50 %)	- ( % )
		①시·도비	- ( % )	- ( % )	55 (25 %)	12 (8 %)	- ( % )
		②시·군·구비	- ( % )	- ( % )	55 (25 %)	64 (42 %)	- ( % )
	③기타(국비)	- ( % )	- ( % )	110 (50 %)	76 (50 %)	- ( % )	
	비고	-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연간 국공립 이용률(%)				
	지표정의	· 국공립 이용률/매년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24(%)	25(%)	25(%)	25(%)
	목표수준 산출근거	· 국공립 이용률 23.3%→25로 상향 계획에 따른 목표 수준 설정				
자료출처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및 운영 관련 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운영계획 수립, 예산반영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 프로그램, 행사 참여 등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1-2	보훈가족 예우 지원 확대		O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민생활과	복지기획		최현진			055)670-2353				
사업(과업) 배경		· 내실 있는 보훈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호국안보의식 함양										
사업(과업) 목적		· 보훈가족 예우 확대로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과 자긍심 고취										
추진근거(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훈기본법」</li> <li>·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li> <li>·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li> <li>·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지원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에 주소를 둔 보훈대상자 및 단체										
	대상 규모	· 925명(보훈가족 명예수당 등 수혜자 수)										
사업(과업)내용	사업(과업) 유형	· 명예수당 지원										
	세부 내용	·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명예수당 및 예우 지원										
전달체계	지원 절차	· 해당 주소지를 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수행 기관	· 신청기관: 해당 주소지를 둔 읍·면사무소 ·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군청 주민생활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1,802	(100%)	1,930	(100%)	1,930	(100%)	1,930	(100%)	1,930	(100%)	
	지방비	소계(①+②)	1,802	(100%)	1,930	(100%)	1,930	(100%)	1,930	(100%)	1,930	(100%)
		①시·도비	443	(25%)	443	(23%)	443	(23%)	443	(23%)	443	(23%)
		②시·군·구비	1,359	(75%)	1,487	(77%)	1,487	(77%)	1,487	(77%)	1,487	(77%)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비고	· 2023년~26년 예산의 보훈가족 명예수당은 22년 기준(1,201,160천원) 반영 · 그 외 2023년~2026년 예산의 경우 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 예산 외 증액부분 반영 -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비 지급: 713,000천원 - 보훈가족 위안행사: 74,150천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확대: 1,000천원 - 보훈단체 고령자 이동권 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구입비 지원: 50백만원 (차량구입비 45백만원, 운영비 5백만원, 24년 이후 연간 500백만원 씩 소요)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보훈가족 명예수당 등 수혜자 수(명)				
	지표정의	· 보훈가족 명예수당 등 수혜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25(명)	925(명)	925(명)	925(명)	925(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보훈가족 명예수당 등 월별 지급인원 합계				
자료출처	· 보훈명예수당 관련 공문 및 결과 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국가유공자 관리·명예수당 등 지원			· 보훈행사 주관 및 참여 홍보 · 보훈회관 활성화 도모 ·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공공기관	· 국가유공자 등 지원제도 홍보 · 보훈행사 지원 및 참여				
	민간기관	· 보훈관련 행사 주관 · 보훈회관 이용 홍보 및 사무실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1-3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기능 활성화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문성숙		055)670-2533						
사업(과업) 배경	· 교육, 재활, 사회심리, 직업훈련 등 전인 재활을 통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 기여											
사업(과업) 목적	·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복지센터 활성화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추진근거(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79조(비용 부담) ·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 관내 장애인										
	대상 규모	· 고성군 관내 장애인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서비스										
	세부 내용	· 상담, 사례지원(사례발굴, 개입, 지원) · 기능향상지원(의사소통, 학습능력, 사회적응력) -가족지원(상담, 교육, 가족기능 강화 등), 지역사회참여 활동지원, 장애인식개선 및 권익옹호 지원, 직업재활훈련 및 취업상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운영, 평생교육 지원, 정보제공 · 장애아동재활지원(언어, 미술심리재활 등) · 스포츠 여가활용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조사-대상자결정-프로그램 참여										
	수행 기관	·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지방비	소계(①+②)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①시·도비	60	(19%)	60	(19%)	60	(19%)	60	(19%)	60	(19%)
		②시·군·구비	249	(81%)	249	(81%)	249	(81%)	249	(81%)	249	(81%)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비고	· 2023~2026년 예산은 22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프로그램 운영 수(개) · 상담 건수(건) · 종사자 수(명)					
	지표정의	· 프로그램 운영 수 · 상담 건수 · 종사자 수					
	연도별 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프로그램	18(개)	19(개)	19(개)	19(개)	20(개)
		상담	240(건)	280(건)	280(건)	300(건)	300(건)
		종사자	6(명)	7(명)	7(명)	7(명)	8(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공문 및 보고서 등						
자료출처	·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 예산 반영			· 프로그램 참여 및 만족도 조사 참여		
	공공기관	-					
	민간기관	· 복지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1-4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		최진호		0556)670-2653						
사업(과업) 배경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에게 보건·의료·주거·돌봄서비스 등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과업) 목적	· ICT(정보통신기술)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조기 구축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ICT연계 스마트복지 시범사업 추진(경남도 복지정책과-6799, 2020.4.9.)											
지원대상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 가구										
	대상 규모	· 620가구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AI(인공지능) 스피커에 IoT(생활감지센서기) 단말기 설치										
	세부 내용	·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음악감상, 대화, 생활정보, 긴급구조지원 · 건강증진 : 치매예방 두뇌톡톡, 기억검사, 마음체조, 좋은생각 · 케어매니저를 활용한 상담, 방문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연계 · IoT 센서 기능 추가 설치 : 호흡·동작감지 레이더 센서 → 동작감지를 통한 활동량 제공, 수면상태 감지 제공(갑자기 호흡이 끊어질 경우, 비상알림), 안정적인 움직임 및 호흡 감지 ·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119) 연계하여 효과적 대응										
전달체계	지원 절차	· 설치 신청 - 서비스 제공 - 운영 결과 보고										
	수행 기관	· 고성군 주민생활과										
사업비(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224	(100%)	224	(100%)	224	(100%)	224	(100%)	224	(100%)	
	지방비	소계(①+②)	65	(29%)	65	(29%)	65	(29%)	65	(29%)	65	(29%)
		①시·도비	53	(24%)	53	(24%)	53	(24%)	53	(24%)	53	(24%)
		②시·군·구비	12	(5%)	12	(5%)	12	(5%)	12	(5%)	12	(5%)
	③기타(국비)	159	(71%)	159	(71%)	159	(71%)	159	(71%)	159	(71%)	
비고	· 2023~2026년까지의 연도별 예산은 2022년 기준으로 적용 -IoT 센서 설치사업, 통합돌봄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ICT 기반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수혜자 수(가구)				
	지표정의	· ICT 기반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수혜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20(가구)	620(가구)	620(가구)	620(가구)	620(가구)
	목표수준 산출근거	· 목표 수준 유지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예산 및 행정 지원, 사업운영 및 홍보			· 유관기관 홍보 등을 통해 사업 참여 · 단말기 설치 및 사용	
	공공기관	· 사업홍보를 통한 설치 유도				
	민간기관	· 사업 홍보를 통한 설치 유도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1-5	청소년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		김민호			055)670-4663					
사업(과업) 배경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및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 도모											
사업(과업) 목적		·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고성군 지역 내에서만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8세의 청소년											
	대상 규모	· 2,601명(22년 기준)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바우처카드 형태로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금액 지급											
	세부 내용	· 13~15세: 매월 5만원, 16~18세 매월 7만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대상자 신청(읍·면) - 대상자 결정(고성군) - 급여 제공(고성군)											
	수행 기관	·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1,918	(100%)	1,918	(100%)	1,918	(100%)	1,918	(100%)	1,918	(100%)	
		지방비	소계(①+②)	1,918	(100%)	1,918	(100%)	1,918	(100%)	1,918	(100%)	1,918	(100%)
			①시·도비	-	( % )	-	( % )	-	( % )	-	( % )	-	( % )
			②시·군·구비	1,918	(100%)	1,918	(100%)	1,918	(100%)	1,918	(100%)	1,918	(100%)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 )	-	( % )	-	( % )
		비고		· 2023~26년 예산은 22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율(%)				
	지표정의	· (실 지원 대상자 수 / 지원 대상자 수) * 100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	90(%)	90(%)	90(%)	9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지원 대상자(목표) 수의 90% 수준 유지				
자료출처	· 공문(보고서 등) 및 행복e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 홍보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 · 가맹점 등록 안내	
	공공기관	-				
	민간기관	· 바우처 카드 사용자에게 물품 판매 및 계약사항 준수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1-6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하다정		055)670-2385					
사업(과업) 배경		·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과업) 목적		·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의 친밀감을 증가시켜 한국 생활 적응 및 건강한 가족 관계의 형성을 도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 가정										
	대상 규모	· 다문화가족어울림 한마당: 200명 ·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 15명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용	· 다문화가족어울림 한마당 실시: 연중 1회 ·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 - 결혼이민여성과 고성군여성단체와의 결연을 통해 문화체험, 상호교류 및 정서 지원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 - 조사 - 대상자결정 - 프로그램 참여										
	수행 기관	· 고성군 복지지원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14	(100%)	14	(100%)	14	(100%)	14	(100%)	14	(100%)	
	지방비	소계(①+②)	14	(100%)	14	(100%)	14	(100%)	14	(100%)	14	(100%)
		①시·도비	-	( % )	-	( % )	-	( % )	-	( % )	-	( % )
		②시·군·구비	14	(100%)	14	(100%)	14	(100%)	14	(100%)	14	(100%)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 )	-	( % )	-	( % )	
	비고	· 2023~26년 예산은 22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사업 참여자 수(명)					
	지표정의	· 연중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참여자 수 ·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 참여자 수					
	연도별 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	200(명)	200(명)	200(명)	200(명)
		여성결혼 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	-	15(명)	15(명)	15(명)	15(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22년 목표수준 유지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 홍보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 · 프로그램 적극 참여		
	공공기관	-					
	민간기관	·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2-1	저소득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 지원 강화		O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		김승희		055)670-2783					
사업(과업) 배경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기술능력 습득 및 취·창업 지원으로 자립능력 향상과 생산적 복지 구현										
사업(과업) 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능력 배양으로 생활 안정 도모 · 자립·자활을 위한 기능 습득 및 취·창업 지원으로 탈수급 추진										
추진근거(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에 살고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수급자 및 참여 희망자										
	대상 규모	· 103명(22년 6월 기준)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자활근로 프로그램										
	세부 내용	· 자활근로사업 확대: 연차별 5%, 26년까지 20%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 자활근로 참여자 사례관리: 고성군 일자리센터 연계 의뢰하여 취업 기회 제공 등 · 자활근로 참여자 역량강화 -취업 관련 기본교육, 직업 체험, 정서 및 소양 교육 등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기능습득 직무교육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 - 조사 - 대상자 결정 - 사업 참여										
	수행 기관	· 고성군 주민생활과, 고성지역자활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1,987	(100%)	1,987	(100%)	1,987	(100%)	1,987	(100%)	1,987	(100%)
	지방비	소계(①+②)	397	(20%)	397	(20%)	397	(20%)	397	(20%)	397	(20%)
		①시·도비	119	(6%)	119	(6%)	119	(6%)	119	(6%)	119	(6%)
		②시·군·구비	278	(14%)	278	(14%)	278	(14%)	278	(14%)	278	(14%)
	③기타(국비)		1,590	(80%)	1,590	(80%)	1,590	(80%)	1,590	(80%)	1,590	(80%)
	비고		· 2026년 예산은 25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명)</li> <li>· 일자리지원센터 연계 의뢰자 수(명)</li> </ul>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li> <li>· 자활참여자 중 일자리지원센터 연계 의뢰자 수</li> </ul>					
	연도별 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자활근로사 업 참여자 수	280(명)	310(명)	335(명)	365(명)	365(명)
		일자리지원센 터 연계의뢰자 수	5(명)	5(명)	5(명)	5(명)	5(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연차별 10%, 26년까지 20% 확대</li> <li>· 일자리지원센터 연계의뢰 탈수급자 발굴 목표치</li> </ul>					
자료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결과보고서 등</li> </ul>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li> <li>· 프로그램 적극 참여</li> </ul>		
	공공기관	-					
	민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근로 참여자 역량강화</li> <li>·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li> </ul>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2-2	초고령사회 어르신 일자리 창출	O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	홍섬기	055)670-2374			
사업(과업) 배경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과업) 목적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도모하고자 함						
추진근거(관련규정)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3, 4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 거주 만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					
	대상 규모	· 1,490명(22년 기준) -공익활동(1,222명), 사회서비스형(174명), 시장형(94명)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현금지원					
	세부 내용	· 어르신 적합 일자리 추진 -공익활동(11개월): 공공시설도우미, 학교도우미 등 -시장형(연중): 공동작업장, 식품제조·판매, 매장운영 등 -사회서비스형(10개월): 노인지원서비스, 아동지킴이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접수→자격심사 후 선발 확정→사업 참여					
	수행 기관	· 고성군 복지지원과, 고성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 경남돌봄지원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5,777 (100%)	6,355 (100%)	6,400 (100%)	6,475 (100%)	6,475 (100%)	
	지방비	소계(①+②)	2,889 (50%)	3,178 (50%)	3,200 (50%)	3,225 (50%)	3,225 (50%)
		①시·도비	867 (15%)	954 (15%)	965 (15%)	975 (15%)	975 (15%)
		②시·군·구비	2,022 (35%)	2,224 (35%)	2,235 (35%)	2,250 (35%)	2,250 (35%)
	③기타(국비)	2,888 (50%)	3,177 (50%)	3,200 (50%)	3,250 (50%)	3,250 (50%)	
비고	· 2026년 예산은 25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어르신 적합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명)				
	지표정의	· 어르신 적합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490(명)	1,500(명)	1,520(명)	1,540(명)	1,54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2025년까지 참여자 1,490명에서 1,540명으로 확대 · 2026년은 25년 수준 유지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 홍보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 · 프로그램 적극 참여	
	공공기관	-				
	민간기관	·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2-3	청소년 참여 체험 프로그램 확대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		문미경			055)670-5933					
사업(과업) 배경		· 유익한 환경 조성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											
사업(과업) 목적		·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 청소년의 여가활동·문화체험·자치활동의 중심적 역할 수행											
추진근거(관련규정)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8조(진로체험 지원),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생											
	대상 규모	· 고성군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생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체험 프로그램											
	세부 내용	·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및 신규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의회, 청소년활동가, 청소년기자단, 청소년봉사단 추가 운영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 - 조사 - 대상자 결정 - 사업 참여											
	수행 기관	·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247	(100%)	248	(100%)	249	(100%)	250	(100%)	251	(100%)	
		지방비	소계(①+②)	195	(79%)	195	(79%)	195	(78%)	195	(78%)	195	(78%)
			①시·도비	16	(6%)	16	(6%)	16	(6%)	16	(6%)	16	(6%)
			②시·군·구비	179	(72%)	180	(73%)	181	(73%)	182	(73%)	183	(73%)
		③기타(국비)	52	(21%)	52	(21%)	52	(21%)	52	(21%)	52	(21%)	
		비고		· 2026년 예산은 25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참여율(%)				
	지표정의	·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참여율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	90(%)	90(%)	90(%)	9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참여율 90% 수준 유지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 홍보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 · 프로그램 적극 참여	
	공공기관	-				
	민간기관	·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2-4	여성 재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남지영		055)670-2383						
사업(과업) 배경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 제공으로 고용유지 및 역량강화 도모											
사업(과업) 목적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를 위한 능력개발과 자질 함양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추진근거(관련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에 주소를 둔 경력단절 여성 우선										
	대상 규모	· 고성군에 주소를 둔 취업가능 여성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용	·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 여성친화 일촌기업맺기 사업 - 지역 여성 채용 노력 및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 - 조사 - 대상자 결정 - 사업 참여										
	수행 기관	· 고성군 복지지원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30	(100%)	30	(100%)	30	(100%)	30	(100%)	30	(100%)	
	지방비	소계(①+②)	30	(100%)	30	(100%)	30	(100%)	30	(100%)	30	(100%)
		①시·도비	9	(30%)	9	(30%)	9	(30%)	9	(30%)	9	(30%)
		②시·군·구비	21	(70%)	21	(70%)	21	(70%)	21	(70%)	21	(70%)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비고	· 2022~25년 예산은 담당부서 소요예산 추정액으로 산정 · 2026년 예산은 25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수(명)				
	지표정의	·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명)	10(명)	10(명)	10(명)	1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 수준 설정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 홍보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 · 프로그램 적극 참여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2-5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확대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		홍섭기			055)670-2374					
사업(과업) 배경	· 경로당-급식도우미 간 서로 협력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분위기 조성											
사업(과업) 목적	·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급식도우미를 지원 · 쾌적한 환경과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통한 공동체 형성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근거(관련규정)	· 「고성군 노인복지 조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 소재 서비스 희망 경로당										
	대상 규모	· 45개소(22년 기준)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서비스 지원										
	세부 내용	·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통한 조리 및 배식, 설거지 및 뒷정리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 - 조사 - 대상자 결정 - 사업 참여										
	수행 기관	· 고성군 복지지원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채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173	(100%)	189	(100%)	221	(100%)	225	(100%)	225	(100%)	
	지방비	소계(①+②)	87	(50%)	94	(50%)	110	(50%)	118	(50%)	118	(50%)
		①시·도비	26	(15%)	28	(15%)	33	(15%)	37	(15%)	37	(15%)
		②시·군·구비	61	(35%)	66	(35%)	77	(35%)	81	(35%)	81	(35%)
	③기타(국비)	86	(50%)	95	(50%)	111	(50%)	117	(50%)	117	(50%)	
	비고	· 2022~25년 예산은 담당부서 소요예산 추정액으로 산정 · 2026년 예산은 25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경로당 급식도우미 운영 개소 수(개소)				
	지표정의	· 경로당 급식도우미 운영 개소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45(개소)	47(개소)	50(개소)	53(개소)	55(개소)
	목표수준 산출근거	· 22년 45개소에서 26년까지 55개소로 확대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 홍보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 · 프로그램 적극 참여	
	공공기관	-				
	민간기관	·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2-6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확대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		박진수			055)670-2375				
사업(과업) 배경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사업(과업) 목적		· 요양보호사 치매교육비 지원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 요양보호사 예방접종 지원을 통한 건강지원 및 대상어르신 감염 예방										
추진근거(관련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에 주소를 둔 요양보호사										
	대상 규모	· 900명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세부 내용	·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비 지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교육비(1인 1회 6만원 한도) 지원 ·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워크숍 -고성군재가복지협의회 위탁 시행 · 노인복지기여 요양보호사 표창 -노인복지 기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표창을 통해 사기 증진 · 요양보호사 건강지원 사업 -감염성 질환 예방접종비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1인당 30천원 한도)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 - 조사 - 대상자 결정 - 사업 참여										
	수행 기관	· 고성군 복지지원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8.6	(100%)	37	(100%)	37	(100%)	37	(100%)	37	(100%)
	지방비	소계(①+②)	8.6	(100%)	37	(100%)	37	(100%)	37	(100%)	37	(100%)
		①시·도비	-	( % )	-	( % )	-	( % )	-	( % )	-	( % )
		②시·군·구비	8.6	(100%)	37	(100%)	37	(100%)	37	(100%)	37	(100%)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 )	-	( % )	-	( % )
	비고		· 2022~25년 예산은 담당부서 소요예산 추정액으로 산정 · 2026년 예산은 25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수(명)</li> <li>+요양보호사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자 수(명)</li> <li>+노인복지기여 요양보호사 표창인원 수(명)</li> <li>+요양보호사 건강지원 사업 수혜자 수(명)</li> </ul>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수: 연간 100(명)</li> <li>+요양보호사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자 수: 연간 80(명)</li> <li>+노인복지기여 요양보호사 표창인원 수: 연간 2(명)</li> <li>+요양보호사 건강지원 사업 수혜자 수: 연간 900(명)</li> </ul>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00(명)	900(명)	900(명)	900(명)	9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고성군에 주소를 둔 요양보호사 규모 고려 산정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li> <li>· 프로그램 적극 참여</li> </ul>	
	공공기관	-				
	민간기관	·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3-1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운영		O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		최진호		055)670-2653						
사업(과업) 배경		· 긴급한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 해소하고 군민의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는 지역복지 체계 구축											
사업(과업) 목적		· 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확대한 '긴급돌봄 SOS센터'를 설치·운영 · 고령화, 고독사 등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복지 체계 구축											
추진근거(관련규정)		·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긴급한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 규모	· 50명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서비스 지원											
	세부 내용	· 민·관 협력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 및 신속한 보건, 복지, 의료 등 통합서비스 연계 제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 - 현장확인 - 신속조사 및 결정 - 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 고성군 주민생활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	( % )	50	(100%)	50	(100%)	50	(100%)	50	(100%)	
		지방비	소계(①+②)	-	( % )	50	(100%)	50	(100%)	50	(100%)	50	(100%)
			①시·도비	-	( % )	-	( % )	-	( % )	-	( % )	-	( % )
			②시·군·구비	-	( % )	50	(100%)	50	(100%)	50	(100%)	50	(100%)
		③기타 ( 재원명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돌봄 대상자 수(명)				
	지표정의	· 돌봄 대상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50(명)	50(명)	50(명)	5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긴급한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읍면사무소(찾아가는복지담당) : 대상자 발굴 및 긴급돌봄 조사·결정, 서비스 의뢰 · 주민생활과(돌봄SOS센터): 제공기관 업무협약, 이용대금지급			· 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시설, 사회서비스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경남사회서비스원과 협력을 통한 틈새돌봄 긴급지원 서비스 활성화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3-2	치매안심 전문진료 확대 운영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O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보건소	치매관리담당		박영선			055)670-4853					
사업(과업) 배경	·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 및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치매안심 전문 진료(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하고자 함											
사업(과업) 목적	· 원거리 지역 주민의 치매관리사업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 · 치매환자·인지저하자 진료·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증화 감소 및 치매인식 개선											
추진근거(관련규정)	·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제2항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치매환자, 인지저하자, 예방군										
	대상 규모	· 치매안심센터 13개소(현재 4개소→13개소로 확대)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월 2회 운영,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공중보건의, 전문강사 등)										
	세부 내용	· 선별검사 상 인지저하 시 진단검사(CERAD-K) 및 협약병원 연계 · 전문 강사 채용 월 1회(3시간)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한 인지키트(워크북 및 교구) 제공 · 치매 인지선별검사(CIST),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진료, 처방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각 읍면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한 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 고성군 보건소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10	(100%)	26	(100%)	26	(100%)	26	(100%)	26	(100%)	
	지방비	소계(①+②)	2	(20%)	6	(20%)	6	(20%)	6	(20%)	6	(20%)
		①시·도비	1	(10%)	3	(10%)	3	(10%)	3	(10%)	3	(10%)
		②시·군·구비	1	(10%)	3	(10%)	3	(10%)	3	(10%)	3	(10%)
	③기타(국비)	8	(80%)	20	(80%)	20	(80%)	20	(80%)	20	(80%)	
비고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연간 시설 이용자 수(명)				
	지표정의	· 시설 이용자 수/매년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20(명)	120(명)	120(명)	120(명)	12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시설 이용자수(120명) 유지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 홍보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 · 프로그램 적극 참여	
	공공기관	-				
	민간기관	·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3-3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이지연		055)670-4052					
사업(과업) 배경		· 관내 보건의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사업(과업) 목적		· 저소득층 등 보건의료·복지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추진근거(관련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 「지역보건법」 · 「국민영양관리법」										
지원대상	선정 기준	· 관내 보건의료 복지 취약계층 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대상 규모	· 215명(22년 기준)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현금지원										
	세부 내용	· 저소득층 뇌 정밀 MRI 무료검진: 1인 12만원 연 1회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 1인 8만원 내외 연 1회 지원 ·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 자녀 1명당 최대 5만원 지원 ·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1인 최대 52.5만원 지원 · 특수질병 조기검진: 1인 최대 3.9만원 지원 · 인공관절 지원사업: 1인 최대 100만원 지원 · 재활의료비 지원사업: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전달체계	지원 절차	· 대상자 신청 접수 - 대상자 결정 - 의료비 청구 - 의료비 지원										
	수행 기관	· 고성군 보건소, 경상남도 지정 의료기관 등										
사업비(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45	(100%)	45	(100%)	45	(100%)	45	(100%)	45	(100%)
	지방비	소계(①+②)	45	(100%)	45	(100%)	45	(100%)	45	(100%)	45	(100%)
		①시·도비	25	(56%)	25	(56%)	25	(56%)	25	(56%)	25	(56%)
		②시·군·구비	20	(44%)	20	(44%)	20	(44%)	20	(44%)	20	(44%)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비고		· 2023~26년까지의 예산은 22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지원 대상자 수(명)				
	지표정의	· 목표 대비 지원 대상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15(명)	215(명)	215(명)	215(명)	215(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22년 기준(215명) 목표 수준 유지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반영 · 건강생활 실천교육 제공			· 민관 협의 연계 사업지원 등 · 사업 참여 신청 및 협의 · 서비스 지원 신청	
	공공기관	· 사업홍보 및 참여기관 홍보 · 대상자 선정 및 의뢰				
	민간기관	· 사업대상 환자, 진료, 복지서비스 제공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3-4	아동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이예빈			055)670-5833					
사업(과업) 배경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사업(과업) 목적	·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원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 저소득층 아동(0세~ 만 12세) 중 가정방문 면담 등 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대상 규모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세부 내용	·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특성프로그램 운영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필요서비스 조사 - 프로그램 계획 - 대상자 결정 - 프로그램 운영										
	수행 기관	· 고성군 드림스타트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238	(100%)	238	(100%)	238	(100%)	238	(100%)	238	(100%)	
	지방비	소계(①+②)	48	(20%)	48	(20%)	48	(20%)	48	(20%)	48	(20%)
		①시·도비	12	(5%)	12	(5%)	12	(5%)	12	(5%)	12	(5%)
		②시·군·구비	36	(15%)	36	(15%)	36	(15%)	36	(15%)	36	(15%)
	③기타(국비)	190	(80%)	190	(80%)	190	(80%)	190	(80%)	190	(80%)	
비고	· 2023~26년까지의 예산은 22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지원 아동 수(명)				
	지표정의	· 지원 아동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700(명)	700(명)	700(명)	700(명)	7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22년 목표 수준(700명) 유지				
자료출처	· 공문 및 사업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사업운영, 지역자원 관리				
	공공기관	-			-	
	민간기관	· 관내 협약지원 및 후원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3-5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이지연		055)670-4052							
사업(과업) 배경		· 전문인력의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 발달 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부터 양육까지 체계적인 관리 실시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과업) 목적		·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기 맞춤형 건강관리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추진근거(관련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 「모자보건법」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 다문화, 방문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산모, 영유아 등												
	대상 규모	· 150가구(22년 기준)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1:1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건강상담, 영아발달상담, 예방접종,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지원 절차	· 대상자 신청 접수 - 대상자 결정 -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수행 기관	· 고성군청(보건소)												
사업비 (단위: 백만원)		채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116	(100%)	116	(100%)	116	(100%)	116	(100%)	116	(100%)	
		지방비	소계(①+②)		58	(50%)	58	(50%)	58	(50%)	58	(50%)	58	(50%)
			①시·도비		29	(25%)	29	(25%)	29	(25%)	29	(25%)	29	(25%)
			②시·군·구비		29	(25%)	29	(25%)	29	(25%)	29	(25%)	29	(25%)
		③기타(기금)		58	(50%)	58	(50%)	58	(50%)	58	(50%)	58	(50%)	
		비고		· 2023~26년까지의 예산은 22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등록 방문 가구 수(가구)				
	지표정의	· 등록 방문 가구 수(기존 지속방문 중인 누적 가구를 제외한 해당 연도 신규 가구)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0(가구)	50(가구)	50(가구)	50(가구)	50(가구)
	목표수준 산출근거	· 해당 연도 신규 가구 수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사업 계획 수립, 예산 반영 · 건강생활 실천 교육 제공			· 민관협력: 대상자 및 자원 연계 · 주민참여: 사업 및 대상자 발굴	
	공공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홍보				
	민간기관	· 자생조직을 통한 사업 홍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3-6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운영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하다정			055)670-2385					
사업(과업) 배경		·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사업으로 취약 아동·여성 폭력 예방											
사업(과업) 목적		· 요보호 아동·여성 안전 구축망 형성											
추진근거(관련규정)		·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여성											
	대상 규모	· 20명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실태조사											
	세부 내용	· 정기방문이 필요한 아동·여성 실태조사 및 정기 모니터링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대상자 선정 - 방문 수락 여부 파악 - 수혜가구 추천 - 선정 및 모니터링											
	수행 기관	· 고성군(복지지원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19	(100%)	18	(100%)	18	(100%)	18	(100%)	18	(100%)	
		지방비	소계(①+②)	19	(100%)	18	(100%)	18	(100%)	18	(100%)	18	(100%)
			①시·도비	-	( % )	-	( % )	-	( % )	-	( % )	-	( % )
			②시·군·구비	19	(100%)	18	(100%)	18	(100%)	18	(100%)	18	(100%)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 )	-	( % )	-	( % )	
비고		· 2023~26년까지의 예산은 22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사업 대상자 수(명)				
	지표정의	·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사업 대상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22년 목표 수준 유지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계획 수립, 예산 반영			· 대상자 발굴 및 홍보	
	공공기관	-				
	민간기관	· 모니터링 적극 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4-1	노인 및 장애인 교통 불편 해소서비스 확대		O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곽찬		055)670-4685							
사업(과업) 배경		·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 불편 해소 및 이동편의 증진 도모												
사업(과업) 목적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추진근거(관련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지원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 관내 장애인, 고령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대상 규모	· 6,000명(22년 기준)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시설 운영 및 관리비 지원												
	세부 내용	· 특별교통수단 7대 운영												
전달체계	지원 절차	· 해당 시설에서 지자체 보조금 신청												
	수행 기관	·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434	(100%)	475	(100%)	525	(100%)	575	(100%)	575	(100%)	
		지방비	소계(①+②)		409	(94%)	450	(95%)	500	(95%)	550	(96%)	550	(96%)
			①시·도비		-	(%)	-	(%)	-	(%)	-	(%)	-	(%)
			②시·군·구비		409	(94%)	450	(95%)	500	(95%)	550	(96%)	550	(96%)
		③기타(국비)		25	(6%)	25	(5%)	25	(5%)	25	(4%)	25	(4%)	
비고		· 2022~25년 예산은 담당부서 소요예산 추정액으로 산정 · 2026년 예산은 25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수(명)				
	지표정의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000(명)	6,000(명)	6,000(명)	6,000(명)	6,0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22년 목표수준(6,000명) 유지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운영일지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시설 수탁 및 예산 교부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시설 수탁 운영 및 관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4-2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 추진		O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김성원		055)670-2204						
사업(과업) 배경	· 지역예술인 처우개선을 통한 지역문화 예술 발전											
사업(과업) 목적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											
추진근거(관련규정)	· 「고성군 예술인복지증진조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 지역예술단체 소속, 예술인증명 등										
	대상 규모	· 지역예술인 다수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보조금 지원										
	세부 내용	·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 -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 지원 - 예술인 예술작품 구입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 - 보조금 정산										
	수행 기관	· 한국예총 고성지회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62	(100%)	52	(100%)	72	(100%)	52	(100%)	52	(100%)	
	지방비	소계(①+②)	62	(100%)	52	(100%)	72	(100%)	52	(100%)	52	(100%)
		①시·도비	-	( % )	-	( % )	-	( % )	-	( % )	-	( % )
		②시·군·구비	62	(100%)	52	(100%)	72	(100%)	52	(100%)	52	(100%)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 )	-	( % )	-	( % )	
비고	· 2022~25년 예산은 담당부서 소요예산 추정액으로 산정 · 2026년 예산은 25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 횟수(회)				
	지표정의	·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 횟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회)	2(회)	2(회)	2(회)	2(회)
	목표수준 산출근거	·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의 유형 및 성격은 당해연도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유지를 위해 연간 사업 추진 횟수(2회)로 설정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지출서류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사업 계획 수립, 예산 지원			· 한국예총 고성지회 민간 보조금 지원으로 사업추진(회의 등)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사업 홍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4-3	파크골프장 조성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정학록		055)670-5843							
사업(과업) 배경		·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한 군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사업(과업) 목적		·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노령기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인프라 조성												
추진근거(관련규정)		·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시설 설치 후 고성군민 이용												
	대상 규모	· 파크골프장(18홀) 조성												
사업(과업)내용	사업(과업) 유형	· 체육시설 제공												
	세부 내용	·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토록 함												
전달체계	지원 절차	· 연차별 시설 조성 후 군민 이용												
	수행 기관	· 고성군청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200	(100%)	1,200	(100%)	2,200	(100%)	50	(100%)	50	(100%)	
		지방비	소계(①+②)		200	(100%)	1,200	(100%)	1,300	(59%)	50	(100%)	50	(100%)
			①시·도비		-	(%)	-	(%)	-	(%)	-	(%)	-	(%)
			②시·군·구비		200	(100%)	1,200	(100%)	1,300	(59%)	50	(100%)	50	(100%)
		③기타(국비)		-	(%)	-	(%)	900	(41%)	-	(%)	-	(%)	
비고		· 2022~24년 예산은 담당부서 소요예산 추정액으로 산정 · 2025~26년 예산은 운영비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파크골프장 설치율(%) · 이용자 수(명)					
	지표정의	· 파크골프장 설치율 · 이용자 수					
	연도별 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파크골프장 설치율	-	30(%)	60(%)	100(%)	-
		이용자 수	-	-	-	-	7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2025년까지는 파크골프장 설치, 공정률을 통해 시설 조성에 중점 · 2026년부터는 이용자 수를 통해 시설 운영에 중점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사업 시행, 예산 지원			· 시설 조성 후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업무협약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4-4	고성군장애인체육활성화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체육진흥과	체육행정담당		전지연		055)670-4715						
사업(과업)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장애인 체육행사 취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li> <li>· 생활체육 및 체력향상에 관심이 있는 관내 등록 장애인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li> </ul>											
사업(과업) 목적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고성군장애인 체육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과 권장),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생활체육 및 체력향상에 관심이 있는 관내 등록 장애인											
	대상 규모	· 고성군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고성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및 단체별 대회 참가 지원</li> <li>· 농아인체육대회 및 볼링대회 참가 지원</li> <li>· 장애인체육회 운영</li> <li>·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li> <li>·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li> <li>·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li> </ul>											
전달체계	지원 절차	· 보조사업자(고성군장애인체육회)를 통한 사업운영											
	수행 기관	· 고성군장애인체육회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89	(100%)	236	(100%)	236	(100%)	236	(100%)	236	(100%)	
	지방비	소계(①+②)		71	(80%)	202	(86%)	202	(86%)	202	(86%)	202	(86%)
		①시·도비		4	(4%)	3	(1%)	3	(1%)	3	(1%)	3	(1%)
		②시·군·구비		67	(76%)	199	(85%)	199	(85%)	199	(85%)	199	(85%)
	③기타(기금)		18	(20%)	34	(14%)	34	(14%)	34	(14%)	34	(14%)	
	비고		· 2024~26년까지의 예산은 23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사업추진율(%)				
	지표정의	· (추진 사업 수/목표사업 수)*100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80(%)	80(%)	80(%)	80(%)
	목표수준 산출근거	· 22년 목표(7개 사업)의 80% 수준 유지				
자료출처	· 공문 및 사업결과보고서(정산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예산 지원 및 평가			· 사업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사업기획 및 시행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4-5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		김경태		055)670-2503						
사업(과업) 배경		· 화재 사각지대 위험요소 사전대비로 화재로부터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도모											
사업(과업) 목적		· 취약계층으로 한정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군민으로 확대 ·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아파트 제외)											
	대상 규모	· 관내 약 14,770세대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현물(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											
	세부 내용	· 신청에 의거 1세대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3개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지원대상 신청, 접수(읍, 면) - 대상자 선정 및 물품 구입 - 배부 및 설치											
	수행 기관	· 고성군 안전관리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지방비	소계(①+②)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①시·도비	-	( % )	-	( % )	-	( % )	-	( % )	-	( % )
			②시·군·구비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 )	-	( % )	-	( % )	
비고		· 2023~26년까지의 예산은 22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지원세대 수(세대)				
	지표정의	· 지원세대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00(세대)	800(세대)	800(세대)	800(세대)	800(세대)
	목표수준 산출근거	· 22년 목표수준 유지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 사업 홍보 · 지원물품 구입·교체 및 폐소방시설 관리			· 고성군의용소방대: 소방시설 점검·교육 및 폐소방용품 수거 활동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Ⅱ-1-1-1	고성형 결식아동 급식안전망 구축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김석규			055)670-2624					
사업(과업) 배경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사업(과업) 목적		· 결식 아동에게 보다 양질의 급식(끼니)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											
추진근거(관련규정)		· 「아동복지법」 제35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											
	대상 규모	· 500(명)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이용권(바우처)											
	세부 내용	· 아동급식 지원비 추가지원: 1천원(6천원→7천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급식카드 제공, 매월 충전)											
	수행 기관	· 아동급식 가맹점(식당, 마트, 편의점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85	(100%)	85	(100%)	85	(100%)	85	(100%)	85	(100%)	
		지방비	소계(①+②)	85	(100%)	85	(100%)	85	(100%)	85	(100%)	85	(100%)
			①시·도비	-	(%)	-	(%)	-	(%)	-	(%)	-	(%)
			②시·군·구비	85	(100%)	85	(100%)	85	(100%)	85	(100%)	85	(100%)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비고		· 2022년 본예산은 감소했으나 신규 대상자 발굴로 2022년 추가경정 시 추가 재원 확보 예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지원 아동 수(명)				
	지표정의	· 연간 지원 아동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00(명)	500(명)	500(명)	500(명)	5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연간 평균 지원 인원				
자료출처	· 공문(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계획 수립, 예산 반영</li> <li>·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li> <li>· 대상자 선정 및 결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담회</li> <li>· 사업 홍보</li> </ul>		
	공공기관	-				
	민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군의식업지부 : 음식점 가맹점 모집 안내 및 홍보</li> <li>· 고성군새마을부녀회 : 취사가능 가구원 부재 시 식사 해결이 어려운 아동과 결연(반찬제공 등) 식당 가맹점이 없는 지역의 직접 식사 제공이 필요한 결식아동 식사지원</li> <li>· 대한적십자사봉사회고성군지구협의회 : 결식아동 발굴 제도권 밖의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li> <li>·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 사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시행 등을 담당하는 모든 관련 기관 제시하고, 각 참여 기관별 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하는 역할 제시</li> </ul>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I-1-1-2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		최진호		055)670-2653					
사업(과업) 배경		· 전 읍면 찾아가는 복지팀 설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										
사업(과업) 목적		·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근거(관련규정)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										
	대상 규모	· 공적급여 대상자,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필요대상 등 지역주민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자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										
	세부 내용	· 찾아가는 복지 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활성화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 구성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공공서비스 종합 상담 및 연계 강화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통한 주민 주도 마을복지 문제 해결 주민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민관협력 및 자원 발굴을 통한 복지자원 총량 극대화 : 현금, 현물, 노력봉사 등 자원 발굴 확대를 통한 공공복지의 한계 극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대상자 초기상담을 통한 욕구 및 위기도 조사→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사후관리										
	수행 기관	· 고성군희망복지지원단 및 14개 읍면 찾아가는복지담당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222	(100%)	222	(100%)	222	(100%)	222	(100%)	222	(100%)	
	지방비	소계(①+②)	122	(55%)	122	(55%)	122	(55%)	122	(55%)	122	(55%)
		①시·도비	80	(37%)	80	(37%)	80	(37%)	80	(37%)	80	(37%)
		②시·군·구비	40	(18%)	40	(18%)	40	(18%)	40	(18%)	40	(18%)
	③기타 (모금사업비)	100	(45%)	100	(45%)	100	(45%)	100	(45%)	100	(45%)	
	비고	· 군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사업비 · 모금사업비: 고성사랑아이사랑, 365열린뱅크, 지정기탁 등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율(%)				
	지표정의	· (전담팀 설치 수/읍면 수)*100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00(%)	100(%)	100(%)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 읍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				
	자료출처	· 공문, 조례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li> <li>· 주민생활과: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읍면 찾아가는 복지 업무 지원</li> <li>· 읍면사무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문제해결</li> <li>·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li> <li>· 자원발굴을 통한 서비스 제공</li> </ul>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형서비스기관: 방문형 서비스 수행 시 위기가구 발굴</li> <l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어린이재단: 모금액 관리 및 배분</li> </ul>				
	민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li> </ul>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I-1-2-1	수급자 자격 확인조사 실시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민생활과	통합조사담당	박거성	055)670-2393			
사업(과업) 배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의거, 군수는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사업(과업) 목적	· 정기확인조사 및 월별확인조사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관리 · 수급 변동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및 부정수급 방지						
추진근거(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1항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대상 규모	· 7,508명(2022년 9월 기준)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 수립(1월 경)에 따른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					
	세부 내용	· 정기 확인조사: 2회(4~6월, 10~12월) · 월별 확인조사: 6회(1~3월, 7~9월) · 수시 조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 · 수급 변동자에 대한 적극적 소명기회 제공으로 권리구제 기회 증대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 - 정기 2회, 월별 6회					
	수행 기관	· 고성군(주민생활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 ( %)	- ( %)	- ( %)	- ( %)	- ( %)	
	지방비	소계(①+②)	- ( %)	- ( %)	- ( %)	- ( %)	- ( %)
		①시·도비	- ( %)	- ( %)	- ( %)	- ( %)	- ( %)
		②시·군·구비	- ( %)	- ( %)	- ( %)	- ( %)	- ( %)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 %)	- ( %)	
	비고	· 비예산 사업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연간 수급자 자격 확인조사 실시 횟수(회)				
	지표정의	· 연간 수급자 자격 확인조사 실시 횟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회)	8(회)	8(회)	8(회)	8(회)
	목표수준 산출근거	·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자료출처	·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I-1-2-2	부정수급 포상금제도 홍보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	김영혜		055)670-2784		
사업(과업) 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사업(과업) 목적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종 민간자원 활용 및 부정수급관련 홍보를 통하여 각종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근거(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관내 기초수급대상자					
	대상 규모	· 3,474명(2022년 10월 기준)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본인신고의무, 부정수급처벌 적극 안내					
	세부 내용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안내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성실 신고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부정 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고발조치)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민관협력을 통한 부정수급 포상금제도 홍보					
	수행 기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 ( %)	- ( %)	- ( %)	- ( %)	- ( %)	
	지방비	소계(①+②)	- ( %)	- ( %)	- ( %)	- ( %)	- ( %)
		①시·도비	- ( %)	- ( %)	- ( %)	- ( %)	- ( %)
		②시·군·구비	- ( %)	- ( %)	- ( %)	- ( %)	- ( %)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 %)	- ( %)	
	비고	· 비예산 사업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연간 부정수급 포상금제도 홍보 횟수(회)				
	지표정의	· 연간 부정수급 포상금제도 홍보 횟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회)	2(회)	2(회)	2(회)	2(회)
	목표수준 산출근거	·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자료출처	·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I-2-1-1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		박혜화		055)670-4652							
사업(과업)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장난감 및 육아용품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li> <li>·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및 부모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기능 향상</li> </ul>												
사업(과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부모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li> <li>· 연령별 다양한 놀이감 제공으로 창의력 및 지능 발달</li> <li>· 부모교육 등을 통한 육아소통공간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기능 향상</li> </ul>												
추진근거(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li> </ul>												
지원 대상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전 아동</li> </ul>												
	대상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전 아동</li> </ul>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등</li> </ul>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난감 대여, 영유아발달지원 프로그램 지원, 부모교육 등 화~토(10:00~19:00)</li> </ul>												
전달 체계	지원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품앗이)가입→장난감대여, 놀이터 제공,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등 이용</li> </ul>												
	수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위탁</li> </ul>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60	(100%)	62	(100%)	62	(100%)	62	(100%)	62	(100%)	
		지방비	소계(①+②)		60	(100%)	62	(100%)	62	(100%)	62	(100%)	62	(100%)
			①시·도비		-	( % )	-	( % )	-	( % )	-	( % )	-	( % )
			②시·군·구비		60	(100%)	62	(100%)	62	(100%)	62	(100%)	62	(100%)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 )	-	( % )	-	( % )	
		비고		-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수(명)				
	지표정의	·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100(명)	2,100(명)	2,100(명)	2,100(명)	2,1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장난감대여 및 프로그램, 행사 참여인원 수				
	자료출처	· 장난감대여 및 프로그램, 행사 참여인원 명부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운영계획 수립, 예산반영			· 군 홈페이지, 리플릿 제작 · 서비스 이용	
	공공기관	-				
	민간기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고성군장난감도서관 위탁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I-2-1-2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		박록미			055)670-4653				
사업(과업) 배경		·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경감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증가										
사업(과업) 목적		· 저출산 고령화 및 영유아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추진근거(관련규정)		· 「아동돌봄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중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상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 균비로 100% 지원										
	대상 규모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둘째아 이상 아동 70(명)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현금(계좌입금)										
	세부 내용	· 본인부담금의 50%, 100%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읍면동 신청→시군구 접수 및 지급										
	수행 기관	· 위탁 기관(지역자활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96	(100%)	96	(100%)	96	(100%)	96	(100%)	96	(100%)	
	지방비	소계(①+②)	96	(100%)	96	(100%)	96	(100%)	96	(100%)	96	(100%)
		①시·도비	-	(%)	-	(%)	-	(%)	-	(%)	-	(%)
		②시·군·구비	96	(100%)	96	(100%)	96	(100%)	96	(100%)	96	(100%)
	③기타(재원명)	-	(%)	-	(%)	-	(%)	-	(%)	-	(%)	
	비고	-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지원 대상 수(명)				
	지표정의	· 지원 대상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0(명)	80(명)	80(명)	80(명)	8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주 지원 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둘째아 이상 아동				
자료출처	· 공문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운영 계획 수립, 예산 반영			· 사업홍보를 통한 참여 유도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고성군지역자활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I-2-2-1	읍면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지원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		려인기		055)670-2654					
사업(과업) 배경		· 다양한 자원봉사사업 추진으로 지역화합 도모 및 참여의식 강화										
사업(과업) 목적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추진										
추진근거(관련규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군내 전 읍면 지역										
	대상 규모	· 고성군민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자원봉사단체에 보조금 교부										
	세부 내용	· 읍면자원봉사활성화사업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보조금 교부										
	수행 기관	·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14	(100%)	14	(100%)	14	(100%)	14	(100%)	14	(100%)	
	지방비	소계(①+②)	14	(100%)	14	(100%)	14	(100%)	14	(100%)	14	(100%)
		①시·도비	-	( % )	-	( % )	-	( % )	-	( % )	-	( % )
		②시·군·구비	14	(100%)	14	(100%)	14	(100%)	14	(100%)	14	(100%)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 )	-	( % )	-	( % )	
	비고	· 2026년 예산은 25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읍면 자원봉사 정기 활동 개최 횟수(회)				
	지표정의	· 읍면 자원봉사 정기 활동 개최 횟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4(회)	14(회)	14(회)	14(회)	14(회)
	목표수준 산출근거	·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14개 읍면 순회 정기 활동 계획				
자료출처	· 활동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집행			· 군과 읍면 단위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 관계 조성 및 협력 · 언론보도, SNS(고성군 공식밴드)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유도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읍면별 특화된 자원봉사사업 발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I-2-2-2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추진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	려인기	055)670-2654			
사업(과업) 배경		· 여가문화의 확산으로 높아진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재능 분야에 부족한 인프라를 대신해 재능봉사 부분의 전문성을 확대						
사업(과업) 목적		·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필요한 소양 및 전문교육 실시						
추진근거(관련규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수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봉사단 활동 지원						
	대상 규모	· 양성과정 총 6(회) 20(명)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세부 내용	· 정리수납 전문가반, 캘리그래피 강의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에 따른 수강 및 수료						
	수행 기관	·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 ( %)	- ( %)	- ( %)	- ( %)	- ( %)	
		지방비	소계(①+②)	- ( %)	- ( %)	- ( %)	- ( %)	- ( %)
			①시·도비	- ( %)	- ( %)	- ( %)	- ( %)	- ( %)
			②시·군·구비	- ( %)	- ( %)	- ( %)	- ( %)	- ( %)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 %)	- ( %)	
		비고	-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참여자 수(명)				
	지표정의	·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참여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도 참여실적에 근거한 목표 수준 설정				
자료출처	·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I-3-1-1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최현진		055)670-2353					
사업(과업) 배경		· 공공, 민간, 주민 참여(participation)를 통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발굴 기능 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비 보조를 통한 복지사업 활성화										
사업(과업) 목적		· 복지기관·시설종사자, 사회단체 대표,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례적 회의를 통해 상호 소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문제해결 체계 마련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 및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과 사업 진행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9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의 사람 중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대상 규모	· 대표협의체 35명, 실무협의체 39명, 실무분과 97명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현금(보조금) 지원										
	세부 내용	· 연간 운영계획 수립, 예산집행 · 민관 의견 조율 및 협력방안 모색 ·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운영 · 실무분과사업 추진, 복지자원개발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지급→사업 수행										
	수행 기관	·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156	(100%)	156	(100%)	156	(100%)	156	(100%)	156	(100%)
	지방비	소계(①+②)	156	(100%)	156	(100%)	156	(100%)	156	(100%)	156	(100%)
		①시·도비	6	(4%)	6	(4%)	6	(4%)	6	(4%)	6	(4%)
		②시·군·구비	150	(96%)	150	(96%)	150	(96%)	150	(96%)	150	(96%)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	-	( %)	-	( %)
비고		-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 달성을 위한 회의개최 수(회)				
	지표정의	· 회의개최 수: 대표협의체 회의 횟수+실무협의체 회의 횟수+실무분과 회의 횟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7(회)	27(회)	27(회)	27(회)	27(회)
	목표수준 산출근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 달성을 위한 회의개최 수 : 대표협의체 3회+실무협의체 3회+실무분과 21회				
자료출처	· 공문(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사업 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집행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 대표협의체 회의 운영			· 38개 민간 사회단체, 32개 민간 기관, 7개 공공기관 등에서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해 노력	
	공공기관	· 지사협 회의 적극 참석 의견 제시 · 자원대상자 발굴				
	민간기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운영되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자원 등을 반영하여 지역사업을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I-3-1-2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최현진	055)670-2353			
사업(과업) 배경	·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향후 지역 사회보장정책의 과제임을 발견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확인함						
사업(과업)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지역의 실질적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의 사람 중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대상 규모	· 대표협의체 34명, 실무협의체 41명, 실무분과 105명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교육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세부 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위해 교육의 장 개설 · 대학과 협력체계 구축(MOU체결 등)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 교육 및 컨설팅,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정책모니터링 능력 함양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계획수립→참여자 또는 대상자 모집→교육 실시					
	수행 기관	·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 ( %)	- ( %)	- ( %)	- ( %)	- ( %)	
	지방비	소계(①+②)	- ( %)	- ( %)	- ( %)	- ( %)	- ( %)
		①시·도비	- ( %)	- ( %)	- ( %)	- ( %)	- ( %)
		②시·군·구비	- ( %)	- ( %)	- ( %)	- ( %)	- ( %)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 %)	- ( %)	
	비고	-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역량강화교육 참여율(%)				
	지표정의	· (참여위원 수/위촉위원 수)*100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90(%)	90(%)	90(%)	9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도 교육 참여실적에 따른 목표 수준 설정				
	자료출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운영 되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자원 등을 반영하여 지역사업을 추진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I-3-2-1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		최진호		055)670-2653						
사업(과업) 배경	· 지역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도의식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											
사업(과업) 목적	·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및 지역문제에 적극적 대응 가능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전 읍면										
	대상 규모	· 1개 읍, 13개 면 253명 지사협 위원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현금(보조금) 지원										
	세부 내용	· 읍면 지사협 회의 운영 · 읍면별 특화사업 추진 ·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지급→사업 수행										
	수행 기관	·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개소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26	(100%)	26	(100%)	26	(100%)	26	(100%)	26	(100%)	
	지방비	소계(①+②)	26	(100%)	26	(100%)	26	(100%)	26	(100%)	26	(100%)
		①시·도비	13	(50%)	13	(50%)	13	(50%)	13	(50%)	13	(50%)
		②시·군·구비	13	(50%)	13	(50%)	13	(50%)	13	(50%)	13	(50%)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비고	-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특화사업 추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개)				
	지표정의	· 특화사업 추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합계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4(개)	14(개)	14(개)	14(개)	14(개)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서				
	자료출처	·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읍면 지사협 위원 역량강화 지원			·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요건으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 기회 개방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지사협 역량강화 등 운영지원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I-3-2-2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		최진호		055)670-2653						
사업(과업) 배경	· 지역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도의식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											
사업(과업) 목적	·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 및 주민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전 읍면										
	대상 규모	· 1개 읍, 13개 면 253명 지사협 위원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교육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세부 내용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 워크숍 추진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계획수립→참여자 또는 대상자 모집→교육 실시										
	수행 기관	·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개소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지방비	소계(①+②)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①시·도비	0.5	(50%)	0.5	(50%)	0.5	(50%)	0.5	(50%)	0.5	(50%)
		②시·군·구비	0.5	(50%)	0.5	(50%)	0.5	(50%)	0.5	(50%)	0.5	(50%)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비고	-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연간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실시 횟수(회)				
	지표정의	· 연간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실시 횟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회)	1(회)	1(회)	1(회)	1(회)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도 연차별 시행결과보고서				
자료출처	· 연차별 시행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역량강화 교육 등 주관			·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요건으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 기회 개방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I-4-1-1	출산 후 산모 초음파검사비 지원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보건소	보건민원담당		정연옥		055)670-4093						
사업(과업) 배경	· 산모 대상 유방·자궁 초음파 검사비 지원으로 산모 산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장려											
사업(과업) 목적	· 고성군 출산장려정책 확대 추진으로 출산율 증대 ·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유방·자궁 초음파 검사비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관리											
추진근거(관련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										
	대상 규모	· 고성군민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출산 후 산모 초음파검사비 지원										
	세부 내용	· 유방·자궁 초음파 검사비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지정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수행 기관	· 고성군 보건소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	( % )	20	(100%)	20	(100%)	20	(100%)	20	(100%)	
	지방비	소계(①+②)	-	( % )	20	(100%)	20	(100%)	20	(100%)	20	(100%)
		①시·도비	-	( % )	-	( % )	-	( % )	-	( % )	-	( % )
		②시·군·구비	-	( % )	20	(100%)	20	(100%)	20	(100%)	20	(100%)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 )	-	( % )	-	( % )	
	비고	· 2026년 예산은 25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검사비 지원 산모 수(명)				
	지표정의	· 출산 후 1년 이내의 검사비 지원 산모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2021년 고성군 출생 통계				
	자료출처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 조례제정 및 사업계획 수립 · 강 병원 산부인과 업무 협약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강 병원 산부인과 업무 협약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I-4-1-2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보건소	보건민원담당		김영주		055)670-4094						
사업(과업) 배경		·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으로 일하는 부모와 자녀들의 진료편의 제공											
사업(과업) 목적		· 야간 소아청소년 환자 관외 진료에 따른 불편 해소 ·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병원 방문 편의 도모											
추진근거(관련규정)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30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관내 소아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규모	· 고성군민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별빛 소아청소년과 운영 및 진료											
	세부 내용	· 주 2회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근무 추진으로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 진료 편의 제공(매주 화, 목요일 진료시간 연장 18:00~20:00)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소아청소년과 진료 중인 더 조은 병원과 연계하여 진행											
	수행 기관	· 고성군 보건소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12	(100%)	52	(100%)	52	(100%)	52	(100%)	52	(100%)	
		지방비	소계(①+②)	12	(100%)	52	(100%)	52	(100%)	52	(100%)	52	(100%)
			①시·도비	-	(%)	-	(%)	-	(%)	-	(%)	-	(%)
			②시·군·구비	12	(100%)	52	(100%)	52	(100%)	52	(100%)	52	(100%)
		③기타(재원명)	-	(%)	-	(%)	-	(%)	-	(%)	-	(%)	
비고		· 2026년 예산은 25년 기준으로 추정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별빛 소아청소년과 이용자 수(명)				
	지표정의	· 주 2회 별빛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따른 월평균 이용자 수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고성군 영유아·아동 및 청소년 인구 현황(2022년 8월 기준 5,684명)				
자료출처	· 운영 일지 및 결과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I-4-2-1	청소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		최필림			055)670-5936					
사업(과업) 배경	·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과업) 목적	·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진로체험지원 전산망 '꿈길'을 활용한 체험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추진근거(관련규정)	·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부-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업무협약체결 알림(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2000, 2015.6.16.) · 「진로교육법」 제5조, 제18조 및 제20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										
	대상 규모	· 고성군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 및 상담 전반적인 진로 교육 제공										
	세부 내용	· 매년 지원되는 사업 ·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8개) 및 진로동아리 운영 · 진로·진학특강, 진로·진학상담, 진로박람회, 자체(특성화)프로그램 등 운영 · 학교 학사 일정에 맞추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신청 및 연계를 통한 수시 프로그램 진행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사업홍보→모집홍보→접수→프로그램 참가→평가										
	수행 기관	· 신청자(학교 및 학생, 학부모), 제공기관(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240	(100%)	240	(100%)	240	(100%)	240	(100%)	240	(100%)	
	지 방 비	소계(①+②)	120	(50%)	120	(50%)	120	(50%)	120	(50%)	120	(50%)
		①시·도비	-	(%)	-	(%)	-	(%)	-	(%)	-	(%)
		②시·군·구비	120	(50%)	120	(50%)	120	(50%)	120	(50%)	120	(50%)
	③기타 (교육청 특별회계)	120	(50%)	120	(50%)	120	(50%)	120	(50%)	120	(50%)	
	비고	-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li> <li>· 프로그램 참여율(%)</li> </ul>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운영 횟수(정량평가)</li> <li>· 프로그램 참여율: (실제 참여 인원수/목표 인원수)*100</li> </ul>					
	연도별 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프로그램 운영 횟수	9(회)	9(회)	9(회)	9(회)	9(회)
		프로그램 참여율	90(%)	90(%)	90(%)	90(%)	90(%)
	목표수준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li> </ul>					
자료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문(보고서 등)</li> </ul>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지원 및 사업수행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등을 통한 사업 홍보 및 피드백</li> </ul>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교육청: 예산지원</li> <li>· 교육지원청: 사업수행지원</li> </ul>					
	민간기관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중복여부		민관협력사업여부				
		II-4-2-2	청소년 센터 운영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		이종현			055)670-5935					
사업(과업) 배경		· 고성군청소년센터 '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예술 증진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지원함											
사업(과업) 목적		· 청소년 참여확대 및 청소년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운영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회화면 이전으로 인한 청소년 참여 및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추진근거(관련규정)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 설치·운영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고성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군민 등											
	대상 규모	· 고성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군민 등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고성군청소년센터 '온'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이용										
		세부 내용	· 청소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참여기구 등 40여개 프로그램 운영 화요일~금요일 09:00~ 21:00 토요일, 월요일 09:00~ 18:00 일요일 유동적 운영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프로그램 및 대관 신청→프로그램 및 대관 접수 확인→시설대관 및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수행 기관	· 신청기관: 고성군청소년센터 '온' 결정 및 제공기관: 고성군청소년센터 '온'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353	(100%)	353	(100%)	353	(100%)	353	(100%)	353	(100%)	
		지방비	소계(①+②)	353	(100%)	353	(100%)	353	(100%)	353	(100%)	353	(100%)
			①시·도비	-	( % )	-	( % )	-	( % )	-	( % )	-	( % )
			②시·군·구비	353	(100%)	353	(100%)	353	(100%)	353	(100%)	353	(100%)
		③기타 재원명	-	( % )	-	( % )	-	( % )	-	( % )	-	( % )	
		비고	-										

구 분		주요 내용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전년도 대비 청소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 프로그램 참여율(%)					
	지표정의	· 전년도 대비 청소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 · 프로그램 참여율: (실제 참여 인원수/목표 인원수)*100					
	연도별 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프로그램 운영 횟수	32(회)	32(회)	32(회)	32(회)	32(회)
		프로그램 참여율	90(%)	90(%)	90(%)	90(%)	9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연간 평균 프로그램 운영 횟수					
자료출처	· 내용분석 및 고성군청소년센터 '온' 2차 자료(계획 및 결과보고)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운영계획 수립, 예산반영 및 지원			·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 활성화 도모 · 프로그램 참여 및 사업연계 추진 등 · 만족도 조사 등		
	공공기관	· 시설 이용 지원(대관사업)					
	민간기관	· 청소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관내 학교: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첨부 4] 고성군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 고성군 사회보장관련 전체 사업 목록(사회복지, 보건 분야 전체 사업)

일련 번호	사업명	예산총액(백만원)						자체 /보조	지역사회 보장계획 사업번호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	시·군·구			
1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	121	91	30	9	21		보조	
2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42	32	11	3	7		보조	
3	공무원 단체 지원	5	0	5	0	5		자체	
4	복지 지원	453	0	453	0	453		자체	
5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455	0	1,455	0	1,455		자체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26	0	126	0	126		자체	II-3-1-1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	23	0	23	5	18		보조	
8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50	0	50	15	35		보조	
9	사회복지사업 계획 및 평가	33	0	33	0	33		자체	
10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30	0	30	0	30		자체	
11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80	190	190	127	63		보조	
12	지역사회 나눔실천사업	4	0	4	0	4		자체	
1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133	106	27	8	19		보조	
14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186	0	186	0	186		자체	
15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	250	0	250	0	250		자체	
16	분관 시설 보강 조성 사업	100	50	50	15	35		보조	
17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86	43	43	0	43		보조	
18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02	0	1,202	443	759		보조	
19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713	0	713	0	713		자체	
20	독립유공자(유족) 장제비 지원	2	0	2	0	2		자체	
21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5	0	5	4	2		보조	
22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지원(자체)	1	0	1	0	1		자체	
23	보훈시설 관리	23	0	23	0	23		자체	
24	호국보훈 행사	74	0	74	0	74		자체	
25	보훈단체 지원	107	0	107	0	107		자체	
26	자활근로사업	1,882	1,506	376	113	264		보조	
27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53	0	153	46	107		보조	
28	지역자활센터운영	352	246	105	32	74		보조	
2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지원	21	0	21	4	17		보조	
30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	3	0	3	0	3		자체	
31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23	0	23	5	18		보조	
32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지원	15	0	15	3	12		보조	
33	자산형성지원사업	130	104	26	8	18		보조	
3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00	80	20	6	14		보조	
35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	2	0	2	0	1		보조	
36	자활지원	200	0	200	0	200		자체	
37	사회복지시설 지원	26	0	26	0	26		자체	
38	사회복무요원보상	67	0	67	0	67		자체	
39	사회복무요원 보수	240	240	0	0	0		보조	
40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	180	0	180	0	180		자체	
41	부랑인 보호 및 지원	1	0	1	0	1		자체	

42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120	0	120	0	120		자체	
43	초중고학생 교육비 접수 지원	5	0	5	0	5		보조	
44	긴급복지	269	215	54	27	27		보조	
45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00	50	50	0	50		보조	
46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자체)	38	0	38	0	38		자체	
47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8	3	5	0	5		보조	
48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18	82	35	0	35		보조	
49	푸드뱅크 운영	38	0	38	0	38		자체	
50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11	0	11	5	5		보조	II-3-2-1
51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60	0	60	30	30		보조	
52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확대사업	130	0	130	0	130		자체	
53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45	0	45	32	14		보조	
54	에너지효율개선사업	90	0	90	0	90		자체	
55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IoT센서 설치사업)	48	0	48	48	0		보조	
56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176	159	17	5	12		보조	I-1-4
57	저소득층 위문	13	0	13	0	13		자체	
58	재해구호	75	0	75	45	30		보조	
59	생계급여	9,488	7,590	1,898	949	949		보조	
60	교육급여	24	0	24	0	24		자체	
61	재산장제급여	92	73	18	9	9		보조	
62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사업	9	0	9	3	7		보조	
63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14	0	14	7	7		보조	
64	정부양곡택배비	40	40	0	0	0		보조	
65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160	128	32	32	0		보조	
66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관리사업비)	72	57	14	14	0		보조	
67	의료급여 진료비등 부담금	770	0	770	0	770		자체	
68	여성단체,기관운영 지원	20	0	20	0	20		자체	
69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10	0	10	0	10		자체	
70	양성평등주간행사	2	0	2	1	1		보조	
71	양성평등주간행사(자체)	10	0	10	0	10		자체	
72	양성평등사업	5	0	5	0	5		자체	
73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185	0	185	55	130		보조	
74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135	68	68	34	34		보조	
75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기본급	40	0	40	8	32		보조	
76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자수당지원	10	0	10	3	7		보조	
77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자격수당 지급	1	0	1	0	1		보조	
78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7	5	2	1	1		보조	
79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지원	5	0	5	1	3		보조	
80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5	0	5	2	4		보조	
81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8	0	8	3	6		보조	
82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운영	19	0	19	0	19		자체	I-3-6
83	위기여성 긴급 피난처 운영	5	0	5	0	5		자체	
84	가족센터건립사업	600	300	300	90	210		보조	
85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	613	491	123	61	61		보조	
86	아동양육비 지원(청소년한부모)	5	4	1	0	1		보조	
87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45	0	45	14	32		보조	
88	미혼모가족자활지원	3	0	3	1	2		보조	
89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48	174	174	52	122		보조	
90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9	0	9	3	6		보조	

91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지원	4	0	4	1	3		보조
92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자체)	5	0	5	0	5		자체
9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	17	0	17	5	12		보조
9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사자 수당 지원	16	0	16	5	11		보조
95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9	0	9	0	9		자체
9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급	3	0	3	0	3		자체
97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10	0	10	5	5		보조
98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98	99	99	30	69		보조
99	고령친화도시 조성	10	0	10	0	10		자체
100	노인행사 지원	33	0	33	0	33		자체
101	노인회지회 운영비지원	201	0	201	0	201		자체
102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44	0	44	0	44		자체
103	노인여가활동 지원	10	0	10	1	9		보조
104	어르신 운전차량 스티커 제작 발급	2	0	2	0	2		자체
105	노인교실 운영 지원	61	0	61	0	61		자체
106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74	0	74	0	74		자체
107	어르신 여가가가 놀이터 사업	7	0	7	4	4		보조
108	기초연금 지급	45,731	41,158	4,573	915	3,659		보조
10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5,777	2,888	2,888	867	2,022		보조
110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인턴 지원	74	29	44	15	29		보조
1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공무직) 처우개선지원	12	0	12	0	12		자체
112	시니어클럽 지원	300	0	300	60	240		보조
113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34	0	34	0	34		자체
114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78	89	89	44	44		보조
115	재가노인지원	95	0	95	36	60		보조
116	재가노인지원(자체)	65	0	65	0	65		자체
117	행복빨래방 운영	30	0	30	0	30		자체
118	노인건강진단	2	0	2	0	2		자체
119	어르신센터 운영	175	0	175	53	123		보조
1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2,772	1,941	832	250	582		보조
1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지원	162	0	162	0	162		자체
122	경로당 운영비 지원	609	0	609	30	579		보조
123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58	329	329	99	230		보조
124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	3,059	0	3,059	0	3,059		자체
125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	30	0	30	0	30		보조
126	경로당 냉방기 지원	54	0	54	0	54		자체
127	경로당 위문품 구입	27	0	27	0	27		자체
128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2,360	0	2,360	401	1,959		보조
12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939	0	2,939	294	2,645		보조
130	노인복지시설 중사자수당 지원	367	0	367	110	257		보조
131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	1	0	1	0	0		보조
132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40	0	40	0	40		자체
13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지원	9	0	9	0	9		자체
134	고성군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448	0	448	0	448		자체
135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209	147	63	0	63		보조
136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156	109	47	0	47		보조
137	도비 장애수당	17	0	17	5	12		보조
138	장애인연금	2,539	1,778	762	229	533		보조
139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1	1	1	0	1		보조

140	장애인 의료비 지원	97	77	19	0	19		보조
14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	2	1	0	1		보조
142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3	2	1	0	1		보조
143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3	0	3	1	1		보조
14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급여 지원	3,233	2,263	970	291	679		보조
145	활동보조 가산급여	13	9	4	1	3		보조
146	장애인활동지원 위원회 운영	1	0	1	0	1		자체
147	도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118	0	118	35	82		보조
148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92	65	28	14	14		보조
14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521	365	156	78	78		보조
150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	113	79	34	17	17		보조
151	장애인생활편의제공	18	0	18	8	10		보조
152	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 운영	4	0	4	0	4		자체
153	장애인단체 지원	70	0	70	0	70		자체
154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60	0	60	18	42		보조
15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99	0	99	24	75		보조
156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 지원	136	0	136	0	136		자체
157	고성군수어통역센터 개보수	20	0	20	0	20		자체
158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148	74	74	22	52		보조
159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520	260	260	78	182		보조
160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110	55	55	17	39		보조
161	장애인일자리(도자체)지원사업	12	0	12	4	8		보조
16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503	1,052	451	135	316		보조
163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지원(도비)	487	0	487	17	470		보조
16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353	0	353	8	345		보조
165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486	0	486	24	462		보조
166	장애인복지관 운영	310	0	310	60	250		보조
167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117	0	117	21	96		보조
168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67	0	167	46	120		보조
169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25	17	7	2	5		보조
170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22	0	22	0	22		자체
171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57	128	128	128	0		보조
17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8	9	9	9	0		보조
17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45	0	45	0	45		자체
174	장사시설 운영지원	237	0	237	0	237		자체
175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	100	0	100	0	100		자체
176	공설장사시설 개보수	149	0	149	0	149		자체
177	행려사망자 장제보호비	2	0	2	0	2		자체
178	영아수당 지원	302	197	106	53	53		보조
179	가정양육수당 지원	310	202	109	54	54		보조
180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24	1,381	743	372	372		보조
181	누리과정 보육료	1,856	0	1,856	1,856	0		보조
182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96	48	48	24	24		보조
183	방과후 보육료 지원	3	0	3	2	1		보조
184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109	0	109	22	87		보조
185	보육교직원 교육	16	0	16	0	16		자체
186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2	1	1	0	0		보조
187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26	763	763	381	381		보조
188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자체)	146	0	146	0	146		자체
189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914	457	457	228	228		보조
19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도비)	106	0	106	21	85		보조

19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자체)	27	0	27	0	27		자체	
192	취사원 인건비 지원	46	0	46	9	37		보조	
193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96	0	96	0	96		자체	
194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1	1	1	0	0		보조	
195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24	0	24	0	24		자체	
196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192	0	192	0	192		자체	
197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59	0	159	119	40		보조	
198	공공형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사업	11	0	11	3	8		보조	
199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	25	0	25	8	18		보조	
200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	8	4	4	2	2		보조	
201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49	24	24	12	12		보조	
202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12	6	6	3	3		보조	
203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5	0	5	1	3		보조	
204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4	0	4	2	2		보조	
205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2	1	1	1	1		보조	
20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10	0	10	3	7		보조	
20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지급	1	0	1	0	1		자체	
208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08	54	54	27	27		보조	
209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7	4	4	2	2		보조	
210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자체)	11	0	11	0	11		자체	
211	장난감 도서관 운영(자체)	60	0	60	0	60		자체	II-2-1-1
21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10	55	55	16	38		보조	
213	아이돌봄 지원	743	520	223	67	156		보조	
214	아이돌봄 지원(자체)	96	0	96	0	96		자체	II-2-1-2
215	아이돌보미 건강증진 지원	1	0	1	0	1		보조	
216	아동복지시설 운영	2,519	0	2,519	0	2,519		자체	
217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	443	0	443	252	191		보조	
21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비)	146	0	146	44	102		보조	
21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23	0	23	0	23		자체	
22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국비)	434	217	217	87	130		보조	
22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비)	22	0	22	4	17		보조	
222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14	0	14	0	14		자체	
223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사업	3	1	1	1	1		보조	
22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도비)	31	0	31	9	22		보조	
225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8	0	8	2	6		보조	
226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10	5	5	2	3		보조	
227	아동복지교사 파견	84	42	42	17	25		보조	
228	아동복지교사	47	0	47	0	47		자체	
229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67	34	34	7	27		보조	
230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전문인력	2	1	1	0	1		보조	
23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도비)	4	0	4	1	3		보조	
232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21	0	21	6	14		보조	
233	전문가정위탁	24	0	24	5	19		보조	
234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87	0	87	0	87		자체	
235	신규가정위탁아동용품구입비	2	0	2	0	2		자체	
236	아동발달지원계좌	160	112	48	24	24		보조	
237	아동급식 지원(도비)	239	0	239	239	0		보조	
238	아동급식 지원(국비)	534	53	481	0	481		보조	
239	고성형 급식안전망 구축사업	85	0	85	0	85		자체	
240	입양아동 가족지원	31	22	9	0	9		보조	

241	입양아동지원(도비)	1	0	1	0	1		보조	
242	요보호아동 위문	1	0	1	1	0		보조	
243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45	0	45	5	41		보조	
24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50	40	10	3	7		보조	
245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4	3	1	1	1		보조	
246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	238	190	48	12	36		보조	I-3-4
247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지원)(자체)	49	0	49	0	49		자체	
248	아동보호전담요원	79	63	16	4	12		보조	
249	아동보호전담요원(자체)	16	0	16	0	16		자체	
250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지원	10	5	5	0	5		보조	
251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4	0	4	1	3		보조	
252	아동복지활동지원	45	0	45	0	45		자체	
253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	6	0	6	1	5		보조	
254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사업	10	0	10	0	10		자체	
255	아동수당 지원	1,809	1,266	543	163	380		보조	
256	아동 친화도시조성사업	8	0	8	0	8		자체	
257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	30	0	30	0	30		자체	
258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45	0	45	0	45		자체	
259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2	1	1	0	1		보조	
260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지원)	51	11	39	0	39		보조	
261	청소년 드림스토어 운영	30	0	30	12	18		보조	
26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80	90	90	27	63		보조	
26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자체)	97	0	97	0	97		자체	
26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4	0	24	9	15		보조	
26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자체)	250	0	250	0	250		자체	
266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104	52	52	0	52		보조	
267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45	23	23	11	11		보조	
26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지원)	96	68	27	0	27		보조	
269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	9	5	5	0	5		보조	
270	청소년수련시설 유지보수	40	0	40	0	40		자체	
271	건전한 청소년 육성	4	0	4	0	4		자체	
272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2	0	2	1	1		보조	
273	청소년특별지원사업	2	1	1	0	1		보조	
274	청소년건강지원	23	11	11	6	6		보조	
275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1,918	0	1,918	0	1,918		자체	
276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	7	0	7	1	5		보조	
277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	10	0	10	0	10		자체	
278	공공근로사업추진	1,746	0	1,746	0	1,746		자체	
279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31	0	331	215	116		보조	
280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	88	0	88	0	88		자체	
281	채용박람회 개최	10	0	10	3	7		보조	
282	주거급여	2,061	1,649	412	206	206		보조	
283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51	0	51	0	51		자체	
284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48	0	48	0	48		자체	
285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27	13	13	4	9		보조	
286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4	2	2	1	1		보조	
287	식품수거검사	2	0	2	0	2		자체	
288	위생업소 단속	22	0	22	0	22		자체	
289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7	4	4	4	0		보조	

290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19	59	59	18	42		보조
291	위생업소지원	18	0	18	0	18		자체
292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	6	0	6	0	6		자체
293	안심식당 운영사업	4	2	2	1	1		보조
294	농어촌보건소 등 이진진축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270	180	90	45	45		보조
295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13	10	3	0	3		보조
296	산부인과 운영	220	0	220	150	70		보조
297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150	0	150	75	75		보조
298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400	200	200	60	140		보조
299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자체)	32	0	32	0	32		자체
300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68	34	34	0	34		보조
301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20	0	20	6	14		보조
302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214	107	107	32	75		보조
30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34	17	17	5	12		보조
30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자체)	9	0	9	0	9		자체
305	방문건강관리서비스지원사업	163	82	81	24	57		보조
306	방문건강관리서비스지원사업(자체)	20	0	20	0	20		자체
307	방문보건의료비 등 지원사업	6	0	6	3	3		보조
308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48	74	74	22	52		보조
309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F	3	1	1	0	1		보조
310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2	1	1	0	1		보조
311	경남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사업	60	0	60	25	35		보조
312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92	46	46	46	0		보조
313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	96	96	0	0	0		보조
314	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	37	19	18	9	9		보조
315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36	18	18	0	18		보조
316	중학생결핵조기발견사업	2	0	2	1	1		보조
317	만성감염병 관리	20	0	20	0	20		자체
318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원)	9	5	4	1	3		보조
319	병리검사서비스	41	0	41	0	41		자체
320	감염병방제 관리	346	0	346	0	346		자체
321	신종감염병 관리	208	0	208	0	208		자체
322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4	1	3	0	3		보조
323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50	0	50	0	50		자체
324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0	0	0	0	0		자체
325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9	5	5	5	0		보조
326	신종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코로나19 방역소독 사업)	25	0	25	0	25		자체
327	국가예방접종 실시	720	360	360	108	252		보조
328	자체예방접종	220	0	220	0	220		자체
329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27	13	13	4	9		보조
330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878	439	439	132	307		보조
33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희석제)	2	2	0	0	0		보조
332	어르신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	72	0	72	22	50		보조
333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16	0	16	5	12		보조
334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70	0	70	0	70		자체
33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0	30	30	9	21		보조
336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4	0	4	2	2		보조

337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뇌질환)	3	0	3	2	2		보조	
338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특수질환)	2	0	2	1	1		보조	
339	인공관절 사업	3	0	3	2	2		보조	
340	인공관절사업(자체)	6	0	6	0	6		자체	
341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사업	7	0	7	3	3		보조	
342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사업	2	0	2	1	1		보조	
343	재활의료비 지원	10	0	10	0	10		자체	
344	국가암관리지원	131	65	66	20	46		보조	
345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124	0	124	81	43		보조	
346	암환자의료비 지원(건강보험 하위50%)	20	0	20	0	20		자체	
347	난임부부 지원	21	0	21	16	5		보조	
348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9	0	9	5	5		보조	
349	난임부부 기초(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1	0	1	0	1		자체	
350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2	0	2	1	1		보조	
35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83	0	83	71	12		보조	
352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2	1	1	0	0		보조	
35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	1	1	1	1		보조	
35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	3	3	2	2		보조	
35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1	5	5	3	3		보조	
356	난청조기진단	1	1	1	0	0		보조	
357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56	28	28	14	14		보조	
358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1	1	0	0	0		보조	
359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영유아)	1	1	0	0	0		보조	
360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	0	0	0	0		보조	
361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112	56	56	28	28		보조	I-3-5
362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자체)	33	0	33	0	33		자체	
363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자체)	130	0	130	0	130		자체	
364	신혼(예비) 부부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사업(자체)	2	0	2	0	2		자체	
365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465	1,726	740	493	247		보조	
366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	14	0	14	4	10		보조	
367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	631	0	631	0	631		자체	
368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	122	0	122	37	86		보조	
369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	16	0	16	0	16		자체	
370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	85	59	26	13	13		보조	
371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52	26	26	0	26		보조	
37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76	138	138	0	138		보조	
373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1	0	1	1	1		보조	
374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40	70	70	35	35		보조	
375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4	2	2	1	1		보조	
376	지역자살예방사업	30	15	15	0	15		보조	
377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36	18	18	0	18		보조	
378	치매관리체계 구축	878	702	176	88	88		보조	
379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90	0	190	95	95		보조	
380	배회감지기 지원	2	0	2	0	2		자체	
381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1	1	0	0	0		보조	
382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	1	1	0	0		보조	
383	365 안심병동사업	543	0	543	357	186		보조	
384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	1	0	1	0	1		자체	
385	응급처치활성화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3	1	1	0	1		보조	

[첨부 5]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분석 결과

□ 조사대상자의 표집 설계 및 표집 결과

○ 지역주민 욕구조사는 고성군 14개 읍·면 지역에 대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집계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 후 27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 조사대상 가구 및 사회보장 대상 가구 수

[표 1] 조사대상 가구 및 사회보장 대상 가구 수

구분	전체	아동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부부 맞벌이 가구	다문화 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의료수급	주거·교육수급
가구 수 (가구)	270	30	200	102	30	11	41	9

□ 사회보장 관련 욕구의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 사회보장 관련 욕구에 대한 문항 구성

- 5점 척도를 기준으로 1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느끼지 않거나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5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느끼거나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사회보장 욕구 13개 유형별 조사대상 가구
  -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교육(초·중·고 취학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일부 문항 응답), 고용(지난 1년간 구직활동(창업) 경험을 한 가구원이 있거나, 유급노동을 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응답)에 대해서는 해당 가구만 응답함
  - 정신건강, 신체건강, 기초생활유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보호·안전, 교육영역(일부 문항), 주거, 법률 및 권익보장, 문화·여가는 모든 가구가 응답함

○ 아동 돌봄

- 아동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는 양육비 부담>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양육관련 정보와 양육 기술 부족>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아동의 발달문제 지원 서비스 순으로 높음
- 아동돌봄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양육비 부담>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양육관련 정보와 양육 기술 부족>아동의 발달문제 지원 서비스>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고성군의 양육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표 2] 아동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아동양육 부담				아동의 발달문제 지원 서비스
	양육비 부담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양육관련 정보와 양육 기술 부족	
어려움 경험 정도 (5점 척도 평균, 점)	2.83	1.90	2.17	1.97	1.83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5점 척도 평균, 점)	2.86	2.03	2.38	2.17	2.14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노인 돌봄

- 노인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는 신체적·정신적 부담>가사활동의 어려움>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돌봄비용 부담>재난관련 대처의 어려움>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노인돌봄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신체적·정신적 부담>가사활동의 어려움>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돌봄비용 부담>재난관련 대처의 어려움>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노인 돌봄 중 일상생활의 어려움,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과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대한 고성군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일상생활의 어려움,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표 3] 노인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일상생활의 어려움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돌봄 부담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가사활동의 어려움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재난관련 대처의 어려움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신체적·정신적 부담	돌봄비용 부담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어려움 경험 정도 (5점 척도 평균, 점)	3.06	3.09	2.89	2.16	2.44	3.58	2.21	1.75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5점 척도 평균, 점)	3.23	3.27	3.08	2.31	2.62	3.68	2.42	1.99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장애인 돌봄

- 장애인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는 가사활동의 어려움,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신체적·정신적 부담>건강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돌봄비용 부담>재난관련 대처의 어려움>장애아동 돌봄부담>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돌봄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가사활동의 어려움>개인위생관리의 어려움>신체적·정신적 부담>건강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돌봄비용 부담>재난관련 대처의 어려움>장애아동 돌봄부담>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 돌봄에 대한 고성군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전반적으로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편임
- 장애인 돌봄 중 일생생활의 어려움과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표 4〕 장애인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일상생활의 어려움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돌봄 부담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가사 활동의 어려움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재난관련 대처의 어려움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신체적·정신적 부담	돌봄비용 부담	돌봄 시설 및 서비스 부족	장애아동돌봄 부담
어려움 경험 정도 (5점 척도 평균, 점)	3.63	3.74	3.74	2.72	3.11	3.61	3.00	2.35	2.57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5점 척도 평균, 점)	3.75	3.82	3.87	2.78	3.20	3.68	3.06	2.44	2.57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정신건강

- 정신건강에 대한 고성군의 정신건강 증진의 어려움 경험 정도(2.33점)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2.4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고성군의 정신건강 증진의 어려움,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정신건강 증진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가구별로 보면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대체로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편임

[표 5] 정신건강 어려움 경험 정도·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어려움 경험 정도 (5점 척도 평균, 점)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5점 척도 평균, 점)				
	정신건강 증진의 어려움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정신건강 증진의 어려움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전체	2.33	1.73	1.43	1.37	1.27	2.42	1.95	1.68	1.60	1.52
아동가구	2.17	1.37	1.37	1.33	1.27	2.33	1.57	1.60	1.53	1.47
노인가구	2.43	1.91	1.48	1.43	1.31	2.54	2.14	1.72	1.66	1.57
장애인 가구	3.01	2.42	1.76	1.67	1.46	3.16	2.56	1.91	1.79	1.60
다문화 가구	2.00	1.45	1.18	1.27	1.27	2.00	1.64	1.36	1.45	1.45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3.05	2.51	1.95	1.59	1.44	3.15	2.73	2.12	1.73	1.61
차상위 계층	2.11	1.11	1.00	1.22	1.11	2.78	1.56	1.56	1.44	1.44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신체건강

- 신체건강에 대해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보다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편임
- 다른 가구에 비해 신체건강에 대한 장애인 가구의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 정도(3.44점)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3.8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신체건강에 대한 고성군의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가구별로 보면 다문화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신체건강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대체로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편임

[표 6] 신체건강 어려움 경험 정도·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어려움 경험 정도 (5점 척도 평균, 점)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5점 척도 평균, 점)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
전체	2.63	2.62	3.12	3.11
아동가구	2.27	2.27	2.82	2.82
노인가구	2.86	2.85	3.38	3.37
장애인가구	3.44	3.38	3.89	3.86
다문화가구	2.27	2.27	2.55	2.55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3.22	3.22	3.66	3.66
차상위계층	2.44	2.22	2.88	2.88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기초생활유지

- 기초생활유지 중 생계비 부족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2.77점)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2.95점)이 가장 높음
- 다른 가구에 비해 기초생활유지에 대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생계비 부족 어려움 경험 정도(3.78점)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3.88점)이 가장 높으며, 이는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계비 부족, 의료비 부족, 냉난방비 부족, 가계 재정 관리에 대한 고성군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생계비 부족, 냉난방비 부족,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가구별로 보면 차상위 계층의 기초생활유지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편임

[표 7] 기초생활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전체	아동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생계의료 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어려움 경험 정도 (5점 척도 평균, 점)	기초 생활 해결의 어려움	생계비 부족	2.77	2.60	2.86	3.19	3.00	3.78	3.22
		주거비 부족 (주택 구입비 제외)	1.56	1.60	1.55	1.60	1.55	1.85	2.44
		의료비 부족	2.60	2.13	2.75	3.06	2.36	3.34	3.22
		교육비 부족	1.30	2.67	1.07	1.11	1.91	1.05	1.22
		냉난방비 부족	2.62	2.47	2.71	3.01	2.64	3.46	3.22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2.60	2.47	2.69	2.95	2.64	3.46	3.00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5점 척도 평균, 점)	기초 생활 해결의 어려움	생계비 부족	2.95	2.70	3.06	3.40	3.00	3.88	3.56
		주거비 부족 (주택 구입비 제외)	1.74	1.77	1.73	1.75	1.55	1.93	2.78
		의료비 부족	2.80	2.27	2.96	3.30	2.45	3.51	3.44
		교육비 부족	1.43	2.70	1.17	1.17	1.82	1.05	1.44
		냉난방비 부족	2.81	2.57	2.91	3.21	2.82	3.54	3.44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2.77	2.57	2.88	3.14	2.82	3.54	3.22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보다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더 높은 편임
- 다른 가구에 비해 다문화가구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경험 정도(2.18점)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3.64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성군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가구별로 보면 노인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 가구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편임
- 아동, 장애인, 다문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게 나타남

[표 8]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어려움 경험 정도·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어려움 경험 정도 (5점 척도 평균, 점)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5점 척도 평균, 점)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전체	1.71	1.65	1.96	1.91
아동가구	2.00	2.00	2.30	2.30
노인가구	1.70	1.62	1.96	1.87
장애인가구	1.86	1.82	2.16	2.06
다문화가구	2.09	2.18	2.55	2.64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1.71	1.78	2.24	2.32
차상위계층	1.89	1.89	2.00	2.00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보호·안전

-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 유지의 어려움보다 가족 내 안전 유지의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편임
- 가구별로 보면, 다문화 가구의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 유지의 어려움 경험 정도(2.09점)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2.2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고성군의 가족 내 안전유지와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경험 정도와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가구별로 보면 노인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 가구의 보호·안전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표 9] 보호·안전 어려움 경험 정도·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어려움 경험 정도 (5점 척도 평균, 점)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5점 척도 평균, 점)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전체	1.69	1.66	1.85	1.83
아동가구	1.73	1.87	2.03	2.20
노인가구	1.74	1.68	1.86	1.82
장애인가구	1.83	1.75	2.04	1.97
다문화가구	1.91	2.09	2.09	2.27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1.85	1.95	2.12	2.15
차상위계층	1.56	1.56	1.89	1.89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교육

- 평생교육의 어려움보다는 학업의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편임
- 학업의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기초학습능력의 부족>학업유지의 어려움>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고성군의 학업과 평생교육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다른 가구에 비해 학업의 어려움에 대한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의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가장 높으며, 이는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편임
- 평생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아동 가구의 어려움 경험 정도(2.20점)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2.33점)이 가장 높으며, 이는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 교육 어려움 경험 정도·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어려움 경험 정도 (5점 척도 평균, 점)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5점 척도 평균, 점)			
	학업의 어려움			평생 교육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평생 교육의 어려움
	기초학습 능력의 부족	학업유지의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기초학습 능력의 부족	학업유지의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전체	2.27	2.23	2.03	1.91	2.57	2.53	2.30	2.01
아동가구	2.27	2.23	2.03	2.20	2.57	2.53	2.30	2.33
노인가구	2.00	2.50	1.75	1.79	2.00	2.50	1.75	1.84
장애인가구	2.25	2.50	1.75	1.66	2.50	2.75	2.25	1.65
다문화가구	2.38	2.63	2.25	2.18	2.50	2.75	2.38	2.27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3.00	3.00	3.00	1.49	4.00	4.00	4.00	1.59
차상위계층	2.00	2.00	1.00	1.78	3.00	3.00	3.00	2.11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고용

- 취·창업의 어려움 경험 정도는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취업·창업 정보부족>(재)취업준비 비용부족>창업자금 부족 순으로 높음
- 취·창업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취업·창업 정보부족>(재)취업준비 비용부족>창업자금 부족 순으로 높음
- 고용유지의 어려움 경험 정도는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순으로 높음
-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순으로 높음
- 고성군의 고용에 대한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취업·창업 정보부족,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과 고용유지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게 나타남
-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고성군의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가구별로 보면 다른 가구에 비해 차상위계층의 고용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편임

[표 11] 고용 어려움 경험 정도·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전체	아동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생계 필요 계층 가구	차상위 계층	
어려움 경험 정도 (5점 척도 평균, 점)	취창업의 어려움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3.59	3.73	3.39	4.00	3.63	3.00	4.00
		취업·창업 정보부족	3.04	3.14	2.70	3.33	2.63	2.00	4.00
		(재)취업준비 비용부족	2.33	2.45	2.09	2.58	2.38	2.00	4.00
		창업자금 부족	1.84	1.73	1.78	2.50	1.50	1.00	4.00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3.27	3.23	3.26	3.92	3.38	3.00	3.00
	고용 유지의 어려움	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	2.55	2.55	2.54	2.52	2.73	2.33	2.50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2.64	2.72	2.66	2.77	2.91	2.33	2.75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2.46	2.66	2.38	2.43	2.73	2.33	2.50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2.71	3.17	2.85	3.43	3.27	2.67	3.00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5점 척도 평균, 점)	취창업의 어려움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3.59	3.73	3.39	4.00	3.63	3.00	4.00
		취업·창업 정보부족	3.02	3.05	2.78	3.50	2.75	2.00	4.00
		(재)취업준비 비용부족	2.35	2.50	2.13	2.67	2.50	2.00	4.00
		창업자금 부족	1.88	1.86	1.78	2.50	1.63	1.00	4.00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3.33	3.27	3.26	4.00	3.38	3.00	4.00
	고용 유지의 어려움	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	2.65	2.59	2.65	2.73	2.82	3.00	3.25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2.72	2.83	2.71	2.91	3.00	3.00	3.25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2.57	2.69	2.53	2.63	2.91	3.00	3.25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2.88	3.10	3.07	3.69	3.36	3.33	3.50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주거

- 주거에 대한 고성군의 위생 상태 열악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2.63점)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2.7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층간 방음 열악, 상하수도 열악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와 화장실 열악, 주방시설 열악, 위생 상태 열악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가구별로 보면 다른 가구에 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다문화가구의 주거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12] 주거 어려움 경험 정도·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전체	아동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어려움 경험 정도 (5점 척도 평균, 점)	화장실 열악	2.53	2.23	2.72	3.02	2.55	3.37	2.56
	주방시설 열악	2.47	2.30	2.63	2.93	2.64	3.24	2.44
	위생 상태 열악	2.63	2.43	2.77	3.14	2.64	3.66	2.78
	도배·장판 열악	2.33	2.07	2.45	2.65	2.27	3.02	2.44
	층간 방음 열악	1.80	2.20	1.81	1.88	2.00	2.17	1.89
	냉·난방 열악	2.35	2.40	2.47	2.70	2.82	3.02	2.67
	전기·가스시설 열악	1.98	2.37	2.06	2.28	2.64	2.66	1.78
	상하수도 열악	1.60	1.47	1.68	1.69	1.64	1.83	1.67
	지붕 노후(누수 등)	1.97	2.20	2.02	2.18	2.18	2.51	2.11
	벽·담 등 노후	2.10	2.30	2.15	2.37	2.27	2.83	2.44
주택 내 장애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2.03	2.30	2.06	2.32	2.18	2.68	2.33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5점 척도 평균, 점)	화장실 열악	2.64	2.33	2.79	3.08	2.80	3.41	2.78
	주방시설 열악	2.58	2.40	2.71	2.99	2.90	3.32	2.78
	위생 상태 열악	2.72	2.53	2.83	3.17	2.90	3.73	2.89
	도배·장판 열악	2.44	2.20	2.53	2.74	2.50	3.10	2.78
	층간 방음 열악	1.90	2.33	1.88	1.96	2.20	2.24	2.33
	냉·난방 열악	2.43	2.57	2.53	2.75	3.10	3.15	2.67
	전기·가스시설 열악	2.06	2.47	2.12	2.33	2.90	2.73	2.00
	상하수도 열악	1.69	1.57	1.75	1.74	1.80	1.88	1.78
	지붕 노후(누수 등)	2.06	2.33	2.09	2.25	2.40	2.61	2.33
	벽·담 등 노후	2.18	2.47	2.19	2.41	2.50	2.93	2.44
주택 내 장애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2.11	2.47	2.12	2.39	2.40	2.78	2.56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법률 및 권익보장

-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보다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더 높은 편임
- 다른 가구에 비해 아동가구의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 경험 정도(2.03점)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2.57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법률 및 권익보장에 대한 고성군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 고성군의 가구별 법률 및 권익 보장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가 대체로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편임
- 아동 가구의 법률 및 권익보장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표 13] 법률 및 권익보장 어려움 경험 정도·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어려움 경험 정도 (5점 척도 평균, 점)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5점 척도 평균, 점)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전체	1.69	1.53	2.01	1.83
아동가구	2.03	1.77	2.57	2.30
노인가구	1.58	1.48	1.81	1.68
장애인가구	1.54	1.44	1.83	1.72
다문화가구	2.00	1.82	2.09	1.91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1.49	1.39	1.66	1.59
차상위계층	2.00	1.67	2.33	1.89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문화·여가

- 문화·여가 중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보다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더 높은 편임
- 다른 가구에 비해 아동 가구의 문화·여가활동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2.13점)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2.70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고성군의 문화·여가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낮음
- 가구별로 보면, 아동 가구의 문화·여가와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표 14] 문화·여가 어려움 경험 정도·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어려움 경험 정도 (5점 척도 평균, 점)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5점 척도 평균, 점)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전체	2.01	2.03	2.36	2.39
아동가구	2.13	2.13	2.70	2.70
노인가구	1.98	2.00	2.22	2.27
장애인가구	1.84	1.85	2.03	2.11
다문화가구	2.09	2.09	2.27	2.27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1.56	1.59	1.93	1.93
차상위계층	2.11	2.11	2.22	2.33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사회보장 관련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 사회보장 관련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전체 평균값을 보면, 인지 여부가 56.7%, 이용 경험이 23.0%, 향후 이용 의향은 61.7%로 인지 여부에 비해 이용 경험이 낮은 편이지만, 향후 이용 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사회보장관련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	
아동 돌봄	양육비 지원	93.3	75.0	46.7	26.7	83.3	50.8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76.7		26.7		43.3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56.7		16.7		40.0	
	아동의 발달 문제	73.3		16.7		36.7	
노인 돌봄	개인 위생관리	76.3	82.3	33.3	33.2	92.4	94.5
	가사 지원 서비스	85.4		33.8		97.5	
	이동 및 외출 지원	78.3		33.8		90.4	
	응급상황 대처	84.3		31.8		97.5	
	돌봄 비용 지원	87.4		33.3		94.9	
장애인 돌봄	개인 위생관리	88.0	89.5	57.0	56.9	95.0	98.0
	가사 지원	92.1		57.4		99.0	
	이동 및 외출	84.2		57.4		96.0	
	응급상황 대처	87.1		54.5		99.0	
	돌봄 비용 지원	94.1		58.4		99.0	
	장애아동 돌봄	91.7		56.5		100.0	
정신 건강	정신건강 증진	46.7	37.6	11.9	6.2	74.8	53.3
	중증 정신질환 관련	43.0		10.0		75.6	
	중독 예방 및 치료	50.7		9.3		54.4	
	자살 예방 및 상담	27.0		0.0		30.7	
	트라우마 관련	20.4		0.0		31.1	
신체 건강	신체적 질환 관련	85.6	84.3	73.7	74.1	95.9	95.9
	일상적인 신체적 건강 증진	83.0		74.4		95.9	
기초생활유지	생계비 지원	73.0	55.9	16.0	9.0	88.2	58.2
	주거비 지원 (주택구입비 제외)	54.1		4.5		29.9	
	의료비 지원	82.2		22.8		92.0	
	교육비 지원	62.2		5.6		24.8	
	냉난방비 지원	34.1		2.6		66.0	
	가계 재정관리 지원	30.0		2.2		48.5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 증진	13.0	12.6	4.4	3.5	28.9	32.4
	사회적 관계 증진	12.2		2.6		35.9	
보호·안전	가족 내 학대·폭력 대응	19.3	19.5	0.4	0.4	15.2	22.3
	가족 외부의 학대·폭력 대응	19.6		0.4		29.4	
교육	기초학습능력 증진	83.3	70.8	36.7	28.2	63.3	43.6
	학교생활 적응 관련	86.7		30.0		43.3	
	평생교육	42.5		17.9		24.3	
고용	일자리 지원	90.4	34.3	28.8	7.4	92.3	49.6
	취업·창업 정보 제공	55.8		19.2		78.8	
	(재)취업비용 지원	28.8		3.8		44.2	
	창업자금 지원	44.2		0.0		46.2	
	사업체 유지를 위한 지원	18.1		3.9		27.8	
	근로조건·환경 개선	8.5		0.0		28.1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16.3		2.3		27.3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12.4		0.8		52.3	
주거	주택개조서비스	67.4	67.4	13.7	13.7	49.3	49.3
법률 및 권익보장	법률지원	27.0	17.6	4.9	2.5	53.4	43.1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8.1		0.0		32.8	
문화·여가	문화·여가 활동 지원	62.2	62.4	41.1	43.5	56.7	59.7
	체육 활동 지원	62.6		45.9		62.6	
전체 평균		56.7		23.0		61.7	

○ 사회보장 욕구 각 영역에 대한 정책시급성 및 노력체감도

- 사회보장 욕구 각 영역 중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정책 시급성이 가장 높았고,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에 대한 정책 시급성에 비해 노력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평균으로 보면 정책의 시급성이 2.83점, 노력체감도는 2.93점으로 대체로 정책 시급성에 비해 노력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성군의 아동 돌봄, 노인 돌봄에 대한 정책 시급성과 아동 돌봄, 고용에 대한 노력 체감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표 16] 사회보장 욕구 각 영역별 정책의 시급성 및 노력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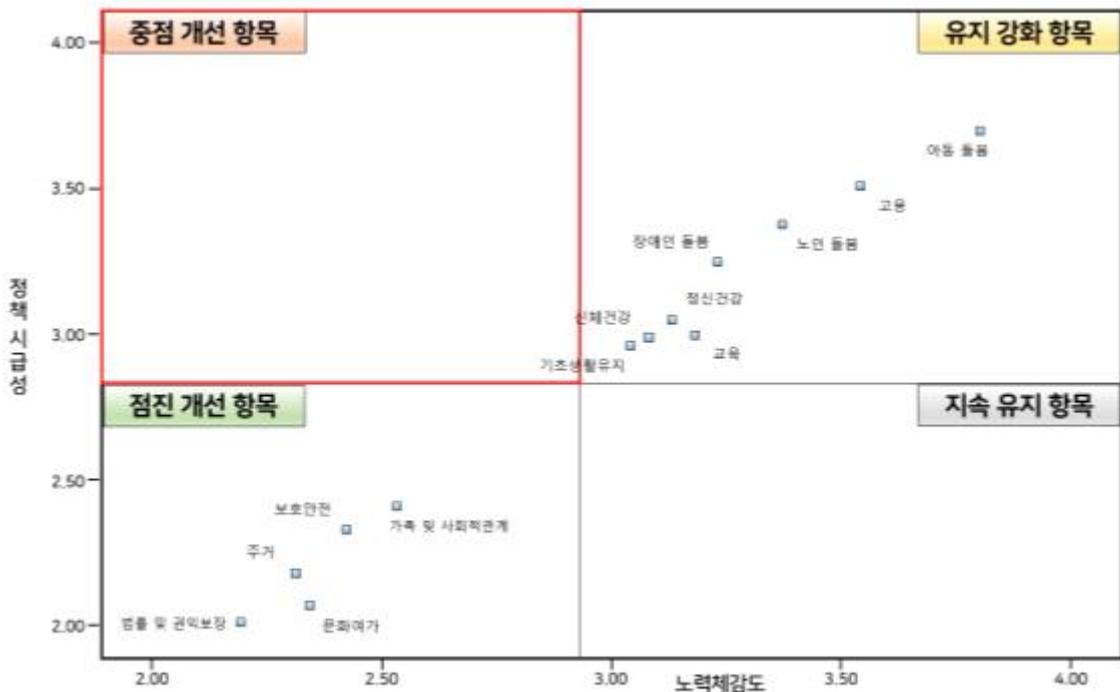
구분		정책시급성(A)	노력체감도(B)	B-A
사회보장 욕구 13개 영역 (5점 척도 평균, 점)	아동 돌봄	3.70	3.80	0.10
	노인 돌봄	3.38	3.37	▼0.01
	장애인 돌봄	3.25	3.23	▼0.02
	정신건강	3.05	3.13	0.08
	신체건강	2.99	3.08	0.09
	기초생활유지	2.96	3.04	0.08
	가족 및 사회적 관계	2.41	2.53	0.12
	보호 및 안전	2.33	2.42	0.09
	교육	3.00	3.18	0.18
	고용	3.51	3.54	0.03
	주거	2.18	2.31	0.13
	법률 및 권익보장	2.01	2.19	0.18
	문화 및 여가	2.07	2.34	0.27
전체 평균(점)		2.83	2.93	0.10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 정책 시급성을 중요도로 설정하고, 노력 체감도를 만족도로 설정하여 IPA 분석을 시행한 결과 고성군의 경우 기존까지 시행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 정도와 필요성이 충족되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점 개선 항목이 도출되지 않음
- 아동 돌봄, 고용,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정신건강, 교육, 신체 건강, 기초생활 유지 정책은 현재 노력 체감도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정책적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보호 안전, 주거, 문화 여가, 법률 및 권익보장 정책은 점진적으로 노력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그림 46] 사회보장 욕구 각 영역별 정책 IPA 분석



○ 주관적 경제적 상태

- 현재 경제 상태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 평균(2.63점)을 기준으로 노인가구만 전체 가구 평균보다 높으며 아동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생계의료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은 전체 가구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표 17〕 주관적 경제적 상태

구분	전체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생계의료수급가구	차상위계층
5점 척도 평균(점)	2.63	2.37	2.64	2.47	2.27	2.17	2.44

○ 월평균 가구 총소득과 총생활비

-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170.94만원이고 월평균 가구 총생활비는 132.86만원이며, 소득 대비 생활비는 77.72%으로 월평균 가구 총소득과 월평균 가구 총생활비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임
- 고성군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과 월평균 가구 총생활비가 경상남도 값보다 낮음

〔표 18〕 월평균 가구 총소득 및 총생활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월평균 가구 총소득(만원)	2	1,000	170.94
월평균 가구 총생활비(만원)	20	800	132.86
소득 대비 생활비(%)	77.72%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주거 및 점유 형태

-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순으로 많으며, 점유 형태는 자가>무상>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전세 순으로 많음

[표 19] 주거 및 점유 형태

주거 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사례 수(명)	234		33	1	1
비율(%)	87.0		12.3	0.4	0.4
점유 형태	자가	전세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사례 수(명)	231	3	7	7	21
비율(%)	85.9	1.1	2.6	2.6	7.8

○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사회의 질

- 주택, 생활환경, 삶의 질 만족도와 주관적 사회의 질에 대해 응답 가구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고성군의 생활환경,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표 20]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사회의 질

구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현재의 삶의 질	주관적 사회의 질
5점 척도 평균(점)	3.44	3.57	3.55	3.74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지역 불균형

- 고성군의 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불균형 심각성 인식 정도(3.74점)가 가장 높으며, 이는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 지역 불균형

구분	소득 및 자산	주거	일자리	교육 시설 및 서비스	사회 복지 서비스	의료 시설 및 서비스	생활 편의 시설	문화·여가 시설	전반적인 삶의 질 여건
5점 척도 평균(점)	2.71	2.74	3.17	2.58	2.87	3.74	2.82	2.72	2.80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코로나19와 생활 변화

- 전체 응답자 중 4.7%가 가구 구성원 중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유행 전과 후 영역별 변화에 대해 학업성적유지, 증진>아동추가돌봄>경제적 어려움>대인관계 사교활동>문화여가 활동>신체건강 관리>정신건강 관리>가족 내 안전유지>노인, 장애인 추가 돌봄 순으로 변화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성군의 코로나19에 따른 영역별 어려움 중 가족 내 안전유지, 경제적 어려움, 학업성적 유지, 증진, 아동 추가돌봄 어려움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표 22] 코로나19에 따른 영역별 어려움

구분	정신건강 관리	신체건강 관리	대인관계 사교활동	문화여가 활동	가족 내 안전유지	경제적 어려움	학업성적유지, 증진	아동추가돌봄	노인, 장애인 추가돌봄
5점 척도 평균 (점)	3.06	3.09	3.35	3.26	2.71	3.36	3.90	3.75	2.30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은 감염병 관련 정보제공>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대면 돌봄서비스 확충>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정신건강 서비스 지원>개인위생 물품지원>심리지원>사업체 고용유지 지원>유연근무 지원>소상공인 지원>근로자 상병수당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고성군의 대면 돌봄서비스 확충,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개인 위생물품 지원, 감염병 관련 정보제공 정책의 필요성이 경상남도 값보다 높음

[표 2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

구분	대면돌봄서비스 확충	비대면돌봄서비스 개발	위기가구생활안정 지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체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상병수당 지원	유연근무 지원	심리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개인생물품 지원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	기타
5점 척도 평균 (점)	3.67	3.66	3.72	3.22	3.27	3.13	3.23	3.56	3.60	3.57	4.18	-

\*주: 경상남도 값보다 높은 값을 음영으로 표시함(출처: 경남연구원)

□ 지자체 자체 문항(아동, 장애인 돌봄 서비스)

○ 아동 돌봄

- 아동 가구 3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용자의 양육부담 경감정도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4] 아동 돌봄 서비스

구분	이용유무(%)	양육부담 경감정도(%)	만족도(%)
보육·유아교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10.0	33.3	33.3
아이돌봄서비스	16.7	20.0	40.0
드림스타트센터	10.0	33.3	66.7
지역아동센터	13.3	0.0	25.0
초등돌봄교실	26.7	12.5	62.5
방과후학교	53.3	31.3	68.8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3.3	100.0	100.0
다함께 돌봄센터	0.0	0.0	0.0
공동육아나눔터	0.0	0.0	0.0
기타(지자체 자체 서비스 등)	0.0	0.0	0.0

○ 장애인 돌봄

- 장애인 가구 9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 이용 경험이 적고, 돌봄부담 경감정도와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 장애인 돌봄 서비스

구분	이용유무(%)	돌봄부담 경감정도(%)	만족도(%)
장애인활동지원	42.9	57.1	19.0
발달장애인주간활동	1.0	0.0	0.0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0.0	0.0	0.0
장애인복지관	10.2	100.0	0.0
장애인직업재활센터	0.0	0.0	0.0
기타	0.0	0.0	0.0



